



여성 · 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II) :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박선영 · 송효진 · 구미영 · 김정혜 · 유혜경

2014

연구보고서-16-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4 연구보고서-16-2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Ⅱ)
: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연구책임자 : 박 선 영 (본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송 효 진 (본원 연구위원)

구 미 영 (본원 부연구위원)

김 정 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객원연구위원)

유 혜 경 (본원 위촉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Ⅱ)
: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본 연구보고서는 우리 원 연구윤리규칙에 위배됨이 없이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합니다.

이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박선영 · 송효진 · 구미영 · 김정혜 · 유혜경(2014). 여성 · 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Ⅱ):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의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 연구를 통해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정책 Think-Tank이다.

발 간 사

우리 사회에서는 그간 성평등 실현을 위해 다양한 입법적 조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성들의 현실에는 커다란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법과 현실간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 중 하나가 여성·가족 관련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본 원은 이를 위해 2013년부터 10년간 여성·가족 관련 법률 중 현안이 되는 법제에 대한 심층 분석과 외국의 입법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여성·가족 관련 법률 내용에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성별간의 현실적인 차이를 고려하면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 규범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는 없는지 등을 계속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첫해인 2013년에는 낙태 규제에 대한 심층 분석과 여성의 정치적·경제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외국의 입법례 분석 그리고 여성가족관련 법제의 입법과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해인 2014년에는 간통죄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관련법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출생등록의무자와 스토킹 규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조사·분석하여 입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의 연구결과가 국회의 입법 활동을 성인지적으로 강화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연구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한 해동안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문
과 논평을 해 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 해 동안
‘젠더와 입법포럼’을 함께 주최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국회여성가족
위원회, 한국젠더법학회, 한국사회법학회 등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 장 이 명 선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입법과제를 도출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출생등록제도는 국가의 인구 동태를 파악하고 의료서비스 등 정책의 기본 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국가마다 각기 제도를 가지고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출생의 등록은 무엇보다도 그 자체로 아동의 인권과 복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더 나아가, 출생등록의 문제는 출생을 둘러싼 가족 및 혼인제도 내외에서 여성의 출산이라는 문제와 연결되어,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적 이슈와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다.

한편, 스토킹은 그 행위가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비교적 근래에 주목된 현상이다. 고교시절부터 짝사랑한 교사를 수년간 스토킹하고 살해한 사건, 이웃집 여성을 스토킹 하여 살해한 사건 등이 보도되면서 스토킹이라는 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현행 출생신고체계의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외국의 출생등록 관련 법제를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스토킹 피해에 대한 처벌 수준과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매우 미약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의 관련 입법례와 제기된 쟁점, 논의를 참조하여 스토킹 대응에 대한 쟁점을 검토하고 입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2. 연구 내용

제 I 장에서는 이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그리고 연구의 내용과 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제 II 장에서는 출생등록의무자 관련 외국의 입법례를 의료기관 등에서 출생사실의 통보가 이루어지는 유형, 부모와 의료기관 등에 모

두 출생신고의무가 있는 유형, 의료기관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유형,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출생신고의무가 있는 유형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입법 내용과 특징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 출생신고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을 모색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를 소개하고, 외국의 스토킹 규제 관련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특히 각국 입법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법률의 제정방식, 스토킹 행위의 예시 내용, 피해의 결과, 주관적 구성요건, 친고죄 여부, 형량의 범위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에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 중심의 논의뿐만 아니라, 근래 주목받고 있는 피해예방정책 등 각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한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스토킹 규제에 관한 입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3. 연구 방법

출생등록의무자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스토킹 관련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국내외 관련 연구물과 각종 법률자료를 조사·분석하였다. 법률자료의 조사는 Findlaw, Lexis 등과 같은 법률 정보 사이트, 해당 국가의 법무부, 법원 사이트, 출생등록을 안내하는 행정청 사이트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더불어 연구내용과 입법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자, 법조인, 여성단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II. 출생등록의무자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1. 출생등록의무자 관련 외국 입법의 특징 및 유형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출생신고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다만, 혼인 외의 출생자의 신고의무자는 모), 부 또는 모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1.동거하는 친족, 2.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생의 등록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를 조사한 결과, 규율 방식과 체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출생신고(내지 통보)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일차적으로 부과하거나, 신고의무를 부모와 의료기관에 함께 지우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이 일차적으로 관여하여 출생사실이 국가에 통보되도록 하는 유형이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생등록 절차 및 신고책임을 조사된 외국의 사례에 따라 유형 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생 당시 관계 의료기관 등에 일차적인 통보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부모의 신고 이전에 출생사실이 의료기관에 의해 국가에 통보되도록 하는 입법례이다. 둘째, 출생신고의무자는 부모로 하면서, 출생이 병원에서 이루어진 경우 의료기관 등의 시설책임자에게도 함께 출생신고의무를 지우는 유형이다. 셋째, 출생신고와 관련된 법률에서는 출생신고의무가 원칙적으로 부모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출생이 이루어지는 병원에서 즉시 출생을 신고하도록 하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이 출생신고에 개입하지 않고, 부모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담시키는 유형이 있다.

2. 출생등록의무자 관련 외국의 입법례

가. 의료기관 등에서 출생사실의 통보가 이루어지는 유형

출생 당시 관계 의료기관 등에 일차적인 통보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부모의 신고 이전에 출생사실이 의료기관에 의해 국가에 통보되도록 하는 유형으로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들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이 국가들은 출생신고에 대한 책임이 최종적으로 부모에게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출생에 관여한 병원, 이를 진행한 의료전문가 등이 우선적으로 출생사실을 국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국가별로 다소 상이한 입법의 특색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병원의 책임자, 분만에 관

여한 조산사 등)이 출생 사실을 우선 신분등록 담당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후에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아동의 이름 등 상세한 사항을 기재하여 출생 신고를 하도록 출생등록 관련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출생등록 관련법에서 출생사실의 통보(Notification of birth)와 출생신고(Registration of birth)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형이다. 이와 같은 유형의 국가에서는 출생사실의 통보를 받는 국가기관과 출생신고를 접수하는 국가기관이 동일한 신분등록 담당 관청으로 되어있다.

한편 영국은 병원에서 아동이 출생한 경우, 출생 사실이 병원시스템을 통하여 당국에 통지되어 출생아에게 의료보장 번호(NHS 번호)가 발급된다. 그리하여 출생 사실이 전산정보로서 자동적으로 관리된다. 이와는 별도로 출생등록(Birth registration)은 출생 및 사망 등록을 규율하는 법에 의하여 부모 등이 정해진 기간 내에(잉글랜드와 웨일즈는 출생후 42일, 스코틀랜드는 21일) 신분등록 담당 관청에 신고함으로써 등록이 이루어진다. 출생등록(Birth registration)과 출생아에 대한 의료보장 번호(NN4B)는 산부인과 병원 에피소드 통계(Maternity Hospital Episode Statistics, Maternity HES)로 연동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통계 담당 부처에서 관리한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에는 출생등록에 관한 사항을 인구 동태 통계(Vital statistics) 법제에서 규율한다. 일반적으로 출산에 관여한 의료기관 등이 출생증명서를 인구 동태 통계 담당 국가 기관의 등록관에게 통보·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출생사실의 통보·등록이 출생에 관여한 의료기관 등과 인구 통계 관련 국가기관 간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는 출생등록이 인구 동태 통계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 개인의 신분관계를 등록하기 위함은 아니다. 이들 국가들은 인구의 정확한 동태파악과 보건행정을 위해 출생사실과 의료정보가 의료기관에서 국가의 인구 통계 관련 기관으로 통보되도록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출생등록업무를 인구통계 관련 국가기관의 출생·사망 등록관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나. 부모와 의료기관 등에 모두 출생신고의무가 있는 유형

출생신고의무자는 부모로 하면서, 출생이 병원에서 이루어진 경우 의료기관 등의 시설책임자에게도 함께 출생신고의무를 지우는 유형으로 독일이 이러한 입법례를 가지고 있다. 독일은 신분등록법(Personenstandsgesetz)에서 친권자인 부 또는 모를 출생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19조). 동시에 병원이나 그 밖의 출산을 보조하는 시설에서 출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 책임자에게도 서면의 출생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법 제20조), 동 법 시행규칙에서는 소정의 친권자 등이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시설 역시 서면신고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시행규칙 제19조). 앞서 언급한 유형인 의료기관에 의한 출생통보제도는 아니지만, 일차적 출생신고의무를 부모에게만 맡겨놓지 않고 의료기관도 함께 출생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 의료기관에서 출생등록이 이루어지는 유형

출생신고와 관련된 법률에서는 출생신고의무가 원칙적으로 부모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출생이 이루어지는 병원에서 즉시 출생을 신고하도록 하는 유형이다. 프랑스는 몇몇의 공립병원에 출생신고를 위한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병원 내에 출생신고센터가 있어 출생과 동시에 전산망을 통하여 출생등록이 이루어진다. 이 국가들의 출생신고와 관련된 법제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를 바 없어보였으나 실무상, 행정서비스를 통해 출생병원에서 신고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고의 편의와 출생사실의 신속·정확한 등록을 꾀하고 있다.

라.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출생신고의무가 있는 유형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이 출생신고에 개입하지 않고, 부모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담시키는 유형이다. 즉, 일차적인 출생신고의무자는 출생자의 부모로 하고 시설 등 의료기관은 일차적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신고의무를 지우는 입법례이다.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법제를

가지고 있는데,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3. 시사점 및 입법과제

가. 시사점

조사국가 중 우리나라와 유사한 중국, 일본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출생 등록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의료기관이 관여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입법례가 취하고 있는 출생자동등록제도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관에 의한 출생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그 통보기간을 상대적으로 매우 짧게 규정함으로써 출생사실이 즉시 등록 되도록 신속성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출생사실의 통보가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출산 후 산모가 퇴원하기 전에 출생통보양식이 작성되어 의료기관을 통하여 제출·통보되기 때문에, 출생아의 부모는 출산 직후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다는 점에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의료기관에 의한 통보 후,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출생신고기간 부여하고 있다. 넷째, 출생사실을 의료기관이 통보하도록 하여 아동의 미등록, 신고 누락, 허위의 출생신고를 줄일 수 있다.

부모와 의료기관 등에 모두 출생신고의무가 있는 유형인 독일의 입법례에서는 부모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의료기관의 부담과 저항을 줄이면서도 출생등록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조할 만하다.

의료기관에서 출생등록이 이루어지는 프랑스와 싱가포르의 경우는 출생등록 신고의무자를 부모 등으로만 하고 있으나 프랑스는 병원에 신분등록담당관이 상주하고 있다는 점,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전산망을 통해 병원에서의 출생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수준의 전산정보망 인프라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같은 아시아권 국가인 싱가포르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조사된 입법례들 가운데 우리나라와 같이 출생신고를 의료기관이 아닌 출생아의 부모 등에게만 맡겨놓은 국가가 같은 동북아시아권의 중국과 일

본이라는 점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과 일본은 여전히 ‘호적’제도에 기반을 둔 법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신분등록에 있어서 전근대성을 탈피하고 가족관계등록법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었다. 그러나 출생신고제도는 호적시대의 신고제도에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출생신고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에 의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신속하게 아동의 출생에 관여한 의료기관 등이 출생의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출생사실에 관한 간단한 정보만을 전산망을 통하여 신속하게 통보하게 하고, 추후 기간의 여유를 두고 부모 등으로 하여금 출생아의 이름을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절차는 출생사실의 신속한 통보와 추후 부모의 신고 편의를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의사·조산사나 그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의료기관 등)으로 하여금 출생 후 3일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출생 후 3일이라는 기간은 아동이 출생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추구하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기간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산모가 퇴원하기 전의 기간이기도 하다. 이때 전제는 전산망에 의한 통보이다.

통보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출생신고의 정확성과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과태료의 액수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등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의사 또는 조산사가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출생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여, 허위의 출생신고 등으로 악용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III.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1.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 입법의 유형 및 특징

가. 스토킹 규제 관련 입법의 유형

우리나라에서는 스토킹을 별도로 구별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2012년 3월 21일 경범죄 처벌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제3조 제1항 제41호에서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표제 하에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스토킹이 법률의 규율 내용에 포함되어, 비록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스토킹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반해 외국의 경우, 1990년 미국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1993년에 이르러 미 전역에서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을 정도로 스토킹 범죄화를 신속하게 이루어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가 그 뒤를 이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일본, 네덜란드, 몰타,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체코공화국, 폴란드 등도 스토킹을 범죄화하였다.

나. 스토킹 규제 관련 입법의 특징

각국의 스토킹에 대한 법적 정의로부터 몇 가지 공통점을 추출할 수 있다. 첫째, 벨기에를 제외한 입법례는 대체로 스토킹의 법적 정의로 '일련의 행위'나 '반복적 행동'을 요구한다. 둘째, 모든 법적 정의는 괴롭힘(harassment)이나 쫓아다님(pursuit)과 같은 개방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입법례는 차이에 따라 이를 분류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는 기존 형법에 스토킹에 관한 조항을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스토킹을 범죄화하였다. 일반법인 형법에 스토킹 규정을 두지 않고 별도의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스토킹을 규율하는 국가는 영국과 아일랜드, 일본 등이 있다.

벨기에,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는 구체적인 스토킹

킹행위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즉, 법률 자체에서 무엇이 스토킹 행위인지 혹은 괴롭힘(harassment)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반면 미국과 호주 대부분의 주, 일본은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입법례는 행위자의 고의의 정도, 즉 의지적 요소를 요하는지, 지적 요소만으로 충분한지, 미필적 고의로 충분한지와 과실범에 의한 행위 처벌 여부 역시 상이하다. 각국의 입법례는 기소를 위해 피해자의 고소가 요하는지 여부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헝가리, 폴란드, 네덜란드는 해당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였다. 독일에서도 스토킹은 기본적으로 고소를 요하는 범죄이지만, 검사가 특별한 공익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할 수 있는 상대적 친고죄(relatives Antragsdelikt)이다. 반면, 오스트리아와 영국의 모든 스토킹 범죄는 비친고죄이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기소할 수 있다.

스토킹에 대한 최대형량은 3월에서 10년 이상까지 다양하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단일한 형량을 정하는 경우와 기본적 구성요건과 가중적 구성요건을 나누어 형을 달리 정하는 경우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2.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형법에서는 제15편 제2장 기타 범죄(other miscellaneous crimes)에서 스토킹 범죄를 다룬다. 제646.9조는 일반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규정하며, (e)항에서 (h)항에 걸쳐 “괴롭힘”, “일련의 행위”, “믿을 만한 위협”, “전자통신기기” 등 개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 민법 제1708.7조 (a)항은 원고가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의 모든 구성요건을 증명하는 경우 누구든지 스토킹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통상 손해(general damages), 특별 손해(special damages)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punitive damages) 또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미시간 주의 스토킹 방지법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내용을 지닌 스토킹 방지법으로 평가된다. 미시간 주 형법전은 제750. 411h조와 제750. 411i조에서 스토킹과 가중된 스토킹 등 오프라인 스토킹을, 제750. 411s조를 통하여 사이버스토킹을 규제하고 있다.

나. 호주

퀸스랜드 주는 고의적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2회 이상 혹은 1회라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보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의식, 두려움 혹은 폭력에 대한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에서 스토킹은 적어도 2회 이상 행해지는,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행위이며, 가해자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빅토리아 주는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을 요하지 않고,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을 따라다니는 행위,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의 인터넷이나 이메일, 기타 전자통신을 추적하는 행위,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의 소유 하의 부동산에 침입하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에 해당된다.

다. 영국

영국은 「괴롭힘 방지법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에서 스토킹을 규율하고 있다. 이 법률은 1997년 제정되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에서 적용되고 있다. 동 법률에서는 사람에게 대한 괴롭힘과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여기에서 괴롭힘이란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적어도 두 번 이상 반복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말로 하는 것도 포함된다.

라. 일본

일본에서는 2000년 5월 24일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ストーカー行爲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이 제정되어 같은 해 11월 24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스토키 행위의 처벌요건과 피해자의 원조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법률은 스토키 행위를 “따라다니기 등 행위”와 “스토키 행위”로 구분하고 이에 대해서 각각 다른 대응방식을 취하고 있다.

마. 독일

독일에서는 제40차 형법 개정을 통하여 「스토키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독일 형법은 제1항에서 스토키에 대한 기본구성요건을 규정해 놓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생명, 신체의 안전, 건강, 자유 등의 법익이 침해될 위험범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놓았고, 제3항에서는 사망에 이른 경우를 상정하여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놓았다. 다만, 스토키의 경우 형사소추기관이 특별한 공익에 의해서 직권에 의한 형사소추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한, 일반적인 스토키는 친고죄로 규정하여 피해자의 고소에 의해서만 소추가 가능하도록 구성해 놓고 있다. 본 규정 가운데 특히 제1항 제2호(전기통신수단 등을 통한 접촉)은 사이버스토키와 관련이 있다.

바. 기타 국가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체코공화국, 폴란드 등도 형법에 스토키에 관한 조항을 도입하여 스토키를 범죄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시사점 및 입법과제

가. 시사점

각국의 입법례의 경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토키 행위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대부분의 입법례는 스토키의 법적 개념요소로 ‘일련의 행위’나 ‘반복적 행동’을 요구한다. 둘째, 스토키의 범죄화는 대부분 형법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특별법을 통해 규정한 예도 적지 않다(영국, 일본 등). 유의할 점은 스토킹 범죄화 역시 각국이 기존에 지녀 온 법체계의 경향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각 입법례는 스토킹 처벌에 공포나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등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에서 상이하다. 넷째, 각 입법례는 기소를 위해 피해자의 고소를 요하는지 여부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다섯째, 각 입법례의 상이함과 별개로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입법례의 경향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입법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우선 스토킹 행위는 비교적 늦게 ‘발견’되었지만, 근래 국가를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당벌성과 형벌필요성을 갖춘 범죄행위로 인정되어 오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스토킹은 반드시 범죄화의 영역에 포섭되어야 할 행위라는 점이다. 스토킹을 범죄화한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존 형법 체계뿐만 아니라 새로 도입된 경범죄처벌법상의 조문으로도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처리하는 데 부족함을 인정하고, 일련의 행동들을 범죄로 취급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개념과 법 형식이 요구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의 규율 방식을 피해의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구제수단과의 균형 속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처벌 규정을 일반형법의 한 규정으로 도입할 것인지, 특별법에 마련할 것인지 여부와 별도로,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규정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스토킹을 범죄화하는 경우, 이 범죄의 보호법익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특히 특별법으로 정할 경우 이 특별법의 목적조향을 어떻게 규정할지 문제된다.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만을 보호법익으로 한정할 경우, 스토킹에 의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의 기본권을 행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대두된다. 때문에 보호법익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법적 평은 혹은 자유 일반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개입방안을 강구하

되, 이를 이유로 보호사건으로의 처리 방식을 만연히 채택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나. 「스토킹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현재의 경범죄 처벌법 규정은 단지 사후적 대처의 일환으로 형사처벌만을 상정하고 있어 피해예방,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과되는 형량도 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스토킹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가 가능하고 스토킹 행위자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같은 중요한 측면이 함께 규정되어 있는 법률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른 형사특별법 범죄들과 마찬가지로 스토킹 역시 형법전에 통일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형법 개정이 용이하지 않고 스토킹 범죄 피해에 대한 대책은 시급하다는 현실적 이유 외에도,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고 우리 법제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스토킹 규제에 대한 총체적인 상을 제안한다는 취지에서 단일한 특별법 시안을 마련하였다.

「스토킹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법의 목적과 ‘스토킹’의 정의 및 행위태양을 정하는 ‘제1장 총칙’과 형사처벌의 일원적 구조를 채택한 ‘제2장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제3장 스토킹범죄의 절차에 관한 특례’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조치 및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제4장 피해자보호명령’과 ‘제5장 벌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은 총칙사항으로 입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것이다. 제2장은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으로 스토킹의 금지, 스토킹살해에 관한 것이다. 제3장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긴급입시조치,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등에 관한 사항이다. 제4장은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입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 조사 등에 관한 것이다. 제5장은 이 법 위반의 벌칙에 관한 것이다.

목 차

연구개요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8

I. 서론

13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5
2. 연구 내용	17
3. 연구 방법	18
가. 문헌연구	18
나. 전문가 자문회의	18

II. 출생등록의무자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19

1. 출생등록의무자 관련 외국 입법의 특징 및 유형	21
2. 출생등록의무자 관련 외국의 입법례	24
가. 의료기관 등에서 출생사실의 통보가 이루어지는 유형	24
나. 부모와 의료기관 등에 모두 출생신고의무가 있는 유형	59
다. 의료기관에서 출생등록이 이루어지는 유형	62
라.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출생신고의무가 있는 유형	64
3. 시사점 및 입법과제	67
가. 시사점	67
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	72

III. 스톡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79

1. 스톡킹 규제 관련 외국 입법의 유형 및 특징	81
-----------------------------------	----

가. 스톡킹 규제 관련 입법의 유형	81
나. 스톡킹 규제 관련 입법의 특징	82
2. 스톡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101
가. 미국	101
나. 호주	109
다. 영국	113
라. 일본	115
마. 독일	117
바. 기타 국가	119
3. 시사점 및 입법과제	125
가. 시사점	125
나. 「스톡킹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130
■ 참고문헌	143
■ Abstract	147

표 목 차

<표Ⅱ-1> 국가별 출생통보 및 출생신고 기간	68
<표Ⅱ-2> 출생 장소 별 출생건수	74
<표Ⅲ-1> 스토킹에 대한 각국의 정의	83
<표Ⅲ-2> 형법상 규정례	86
<표Ⅲ-3> 특별법상 규정례	87
<표Ⅲ-4> 행위태양 예시	89
<표Ⅲ-5> 피해 결과 요구 유형례	91
<표Ⅲ-6> 2 유형 접근례	92
<표Ⅲ-7> 친고죄 여부	94
<표Ⅲ-8> 형량의 범위	95

연구 개요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5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여성·가족 관련 법제는 다른 영역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왔다.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이후, 1994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7년에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2000년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4년에는 「성매매알선 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2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잇따라 제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존 법제의 개정을 통한 획기적인 발전도 있었다. 2005년에는 호주제의 폐지를 주요 골자로 「민법」이 개정되었고, 2012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형법」이 개정되었다. 2014년 2월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어 성매매 방지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더욱 강화되었다. 이로써 성매매 예방교육 강화,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취학지원, 주거지원, 보호비용 지원 등이 이루어지게 되어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같은 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되어 현행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사전·사후 모두 가능하게 되었고, 이런 변화는 어느 나라 입법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성평등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되었다.

그리고 2014년 5월에는 여성정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었는데, 이는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처럼 성평등 정책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적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현실에는 커다란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 여성들의 고용불안과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2 ●●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톡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즉 여성의 비정규직화, 저임금근로자의 여성집중화,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별 격차, 변화되지 않는 M자 곡선, 여성의 높은 대학진학률 대비 경제 분야에서 의 낮은 대표성 등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는 개선되고 있지 않다.

또한 여성들은 성폭력과 성희롱이 일상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 어느 여소 방관은 지속적인 술자리 강요와 성희롱에 시달리다 자살했다. 같은 이유로 군 복무 중 자살한 여군 중위와 대위도 있다.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성희롱에 시달리다 계약이 해지되자 자살한 여성도 있으며,¹⁾ 그 밖에도 알려지지 않은 성폭력과 성희롱의 희생자들이 수없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법과 현실 간의 괴리는 역으로 법과 제도가 필요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문제는 법과 현실 간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원은 2013년부터 10년간 여성·가족 관련 법률 중 현안이 되는 법제에 대한 심층 분석과 외국의 입법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여성·가족 관련 법률 내용에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성별간의 현실적인 차이를 고려하면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 규범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는 없는지 등을 계속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이 연구에서는 여성·가족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라는 목적 속에서 독립적인 성격을 갖는 세 개 영역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첫 번째가 현행 여성·가족 관련 법률 중 현안이 되는 법제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한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연구이고, 두 번째가 특정 주제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를 조사·분석하는 것을 통한 관련 법제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연구이다. 세 번째가 이상의 연구결과와 본원이 수행한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언 중 입법화가 가능한 제언 등을 토대로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를 마련하는 연구이다.

1) 아주경제, 2013. 5. 31. “20대 여 소방관 자살..“상관이 술자리 강요에 괴로워해” 동료 증언”, <http://www.ajunews.com/view/20130531000332>; 한국일보, 2014. 08. 13. “4년전 여군 중위 자살, 대대장 성희롱 탓인 듯”, <http://www.hankookilbo.com/v/3eb2d083f6de488d8fa10aadd2c5fb2b>; 한겨레, 2014. 10. 26. “‘성추행 자살’ 여직원 ‘정규직 전환’ 약속도 거짓”,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1420.html, 검색일: 2014. 10. 27.

이 연구의 첫해인 2013년에는 낙태 규제에 대한 심층 분석과 여성의 정치적·경제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외국의 입법례 분석 그리고 여성가족관련 법제의 입법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두 번째 해인 2014년에는 주로 가족관련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간통죄에 대한 심층 분석과 출생등록의무자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를 조사·분석하였다. 여기에 가족관련 영역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규제의 필요성이 강하게 주장되는 스토킹 규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함께 조사·분석하여 입법안을 마련하였다.

심층 분석의 대상으로 간통죄를 선정한 것은 간통죄가 형법상의 범죄 중 그 존폐여부가 가장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고, 또한 간통죄의 존폐 여부는 가족생활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 간의 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간통죄는 그 동안 총 4차례의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는데, 2008년 제4차 간통죄 합헌결정 이후에도 간통죄에 대한 위헌시비는 계속 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합헌의견과는 달리 형사법학계의 입장은 폐지하자는 의견이 다수로 보인다. 특히 2010년 4월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다수 의견으로 간통죄의 폐지를 선택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또한 헌법재판소 역시, 결론에서는 간통죄 존치를 긍정했지만, 그 내용을 면밀히 보면 간통죄 존폐의 판단을 입법자의 의지의 영역 또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신중한 검토의 영역으로 남겨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²⁾

현재, 간통죄의 위헌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다섯 번째 결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간통 행위와 간통 행위 규제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 변화 등을 조사·분석하는 작업은 긴요하며 이는 입법부와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개선방안 및 위헌여부를 판단할 때 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국의 입법례 분석 대상을 출생등록의무자와 스토킹 규제 관련 입법례로 한 것은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출생신고체계의 문제점인 신고 누락과 허위 신고, 불법·탈법적인 입양과 영아 유기, 영아 매매 등의 아동 인권 침해

2) 박찬걸, “간통죄 폐지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45권 제2호, 2010, 41-43쪽.

4 ●●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문제 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출생신고제도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출생등록제도는 아동의 인권과 복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출생을 둘러싼 가족 및 혼인제도 내외에서 여성의 출산이라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학대로 인한 영유아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고, 미혼모의 경우 생활고로 인해 아이를 유기하거나 아니면 탈법적으로 입양을 보내는 문제 등은 출생신고를 부모 등의 신고의무자에게만 맡겨두는 현행 출생신고제도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취약한 출생신고제도에서 기인하는 신고 누락과 허위 신고의 문제, 불법·탈법적인 입양과 영아 유기, 영아 매매 등의 아동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신분등록제도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사회적·법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출생신고체계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출생등록제도에 대한 보편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조사·분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각국의 관련 입법례를 조사·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

그리고 스토킹을 외국의 입법례 분석 대상으로 한 것은 스토킹을 방치할 경우,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매우 위험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런 스토킹 행위를 「경범죄 처벌법」에서 경미한 범죄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가 발표한 2007~2012년 상담 건수 중 33.1%가 데이트폭력 상담이었고, 데이트폭력 유형 중 41.2%가 스토킹에 관련된 것이었다. 또한 스토킹 가해자의 다수는 전 데이트 상대나 전 배우자, 현 데이트 상대라고 한다.³⁾ 이처럼 스토킹은 데이트 폭력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처럼 장기간 지속되거나 은폐되기 쉬워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또한 피해 여성뿐 아니라 그 가족도 폭력에 장기간 노출되어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매

3) 신상희, “처벌되지 않는 범죄 스토킹”, 한국여성의전화, 「스토킹범죄처벌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토론회 자료집, 2013, 9~19쪽

우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경범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의 스토킹 규제 방법과 내용을 조사·분석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형태로 스토킹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와 스토킹 행위자 처벌강화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연구는 다음의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 간통죄에 대한 심층 분석

간통죄에 대한 심층 분석에서는 변화된 사회 환경 속에서 간통죄의 의미와 간통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간통 행위에 대한 범죄화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재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첫째, 간통죄에 대한 규범적 분석으로 간통죄의 연혁과 현행 법제의 구조를 살펴보고 간통죄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한 4차례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정리, 분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합헌 및 위헌 의견의 근거를 검토하였다. 둘째, 일반 국민에게 간통죄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간통죄는 성도덕의 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행위의 가별성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 간통과 간통죄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간통죄 관련 일반인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간통죄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검찰, 법원의 통계를 확인함으로써 일반인의 인식 및 태도와 실제 간통 사건 처리의 차이와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간통죄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형사적 개입의 정당성 문제, 일반 예방적 효과의 문제, 가정보호의 실효성 문제, ‘여

6 ●●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성보호 기능'의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한 후에 간통죄의 입법적 개선 방향을 살펴보았다.

2)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분석

출생등록제도는 국가의 인구 동태를 파악하는 기초자료이자, 의료서비스 등 의료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기본 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국가마다 각기 제도를 가지고 운영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출생신고의 무자를 부 또는 모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고 누락과 허위 신고, 불법·탈법적인 입양과 영아 유기, 영아 매매 등의 아동 인권 침해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어 출생신고체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왜곡된 사랑이 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고교시절부터 짝사랑한 교사를 수년간 스토킹하고 살해한 사건, 이웃집 여성을 스토킹 하여 살해한 사건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스토킹이라는 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입법화되는 분야 중 하나이다. 1990년 미국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미 전역에서 스토킹을 범죄화하였으며,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일본, 네덜란드, 몰타,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체코공화국, 폴란드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12년 3월 21일 「경범죄처벌법」을 전면 개정하여 제3조 제1항 제41호에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표제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벌을 부과한다. 이로써 비록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스토킹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상의 규율내용은 처벌이 극히 미약한데다 대응 방식 역시 처벌에 국한되어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연구는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를 분석하고,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검토하여 우리나라 관련 법제의 입법과제를 도출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첫째, 출생신고의무자 관련 외국의 입법례를 의료기관 등에서 출생사실의 통보가 이루어지는 유형, 부모와 의료기관 등에 모두 출생신고의무가 있는 유형, 의료기관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유형,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출생신고의무가 있는 유형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입법내용과 특징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 출생신고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방안을 모색하였다.

둘째,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여 외국의 스토킹 규제 관련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특히 각국 입법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법률의 제정방식, 스토킹 행위의 예시 내용, 피해의 결과, 주관적 구성요건, 친고죄 여부, 형량의 범위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 중심적인 논의뿐만 아니라, 근래 주목받고 있는 피해예방정책 등에 대한 각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스토킹 규제에 관한 입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3)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여성·가족 관련 법률에 대한 제·개정안은 이상의 연구결과와 본원이 수행한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언 중 입법화가 가능한 제언과 제19대 국회에 제안되어 계류 중인 입법안뿐만 아니라 이전 국회에서 제안되었다가 폐기된 법률안, 그리고 의안으로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시민사회나 법률전문가 단체에서 주장하였던 입법안을 분석·검토하여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마련된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를 유형화하면 i) 노동 ii) 사회보장 iii) 가족 iv) 여성폭력 v) 문화 vi) 정책결정과정의 6개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8 ●●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그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i) 노동 영역에서는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종사자 보호, 사업장 내 여성근로자 대표성 강화,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 활성화,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범위 확대, 공공조달 사업에서 고용평등기업 우대, 여군의 모성보호 강화를 입법과제를 검토하였다. ii) 사회보장 영역에서는 산재보험제도의 근로자 개념 확대, 모성보호급여의 사각지대 축소,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의 적용대상 확대, 산재 및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감정노동 관련 기준 마련, 국민연금 분할연금수급권을 개별수급권으로의 전환을 위한 입법과제를 살펴보았다. iii) 가족 영역에서는 여성의 재산권 확보를 위한 혼인 중 재산분할 청구권 인정방안과 출생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출생자동등록제도 도입과 비혼부의 출생신고 방안을 중심으로 입법과제를 도출하였다. iv) 여성폭력 영역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방안과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v) 문화 영역에서는 성인지적인 문화 인력양성 정책의 근거규정과 성별 문화예술인력 통계 작성의 의무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vi) 정책결정과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의 정비, 성인지적인 도시공간 조성사업의 근거규정 도입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나.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여성·가족 입법과제, 스토킹 규제와 출생등록 관련 외국의 입법례, 간통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국내외 관련 연구물과 각종 법률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외국의 법률자료 등의 자료는 주로 인터넷 자료를 추적하여 활용하였다. 이는 주로 Findlaw, Lexis 등과 같은 법률 정보 사이트, 해당 국가 법무부, 법원 사이트, 출생등록을 안내하는 행정청 사이트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2) 국민인지도 설문조사

일반인의 간통 경험과 간통에 대한 태도, 간통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국 2,00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간통 경험, 간통에 대한 태도, 간통의 규제에 대한 태도이다. 먼저 간통 경험을 질문하였다. 간통 및 간통의 규제에 대한 태도에 간통 경험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인의 간통 경험 문항을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간통에 대한 태도는 가상의 사례를 구성하여 제시하고 각 사례에서 간통을 용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각 문항에서 남편의 간통과 아내의 간통 문항을 분리하여, 간통 주체의 성별에 따른 태도 등의 차이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간통의 규제에 대한 태도를 질문하였다. 간통죄의 존폐에 대한 의견, 간통의 적절한 법적 규제 방법과 그 근거, 응답자 본인의 배우자 간통 시 예상되는 대응 방법, 간통죄의 효과에 대한 의견 문항을 제시하였다.

3) 젠더와 입법포럼 개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연구는 국회에서의 입법 활동을 성인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만큼 여성·가족관련 입법과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원, 국회의원, 학회 등이 공동으로 ‘젠더와 입법포럼’을 개최하였다. ‘젠더와 입법포럼’의 주제는 시의성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젠더와 입법포럼’ 개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0 ●●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2014년 제1차 젠더와 입법포럼
주제: 젠더와 사회보험 일시: 2014년 4월 26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사회법학회, 한국젠더법학회
2014년 제2차 젠더와 입법포럼
주제: 통일·사회통합과정에서의 젠더법 정책 일시: 2014년 6월 26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2014년 제3차 젠더와 입법포럼
주제: 여성발전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 일시: 2014년 7월 5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젠더법학회
2014년 제4차 젠더와 입법포럼
주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기념 국제컨퍼런스 일시: 2014년 7월 10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후원: 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14년 제5차 젠더와 입법포럼
주제: 성희롱의 법적 규제와 예방체계의 과제 일시: 2014년 12월 20일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젠더법학회

4) 「젠더와 입법」 Brief 작성·배포

연구 과정에서 만들어진 여성·가족관련 법률의 제·개정안과 최근 이루어진 입법동향 등을 정리한 「젠더와 입법」 Brief를 연구 진행 과정에서 1회, 연구 수행 결과를 토대로 1회 총 2회 제작·배포하였다.

5) 해외출장

OECD 주요 국가들의 여성·가족관련 정책에 대한 주요 현안 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독일과 오스트리아 국회와 여성정책 추진 부서 등을 직접 방문하였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출장에서는 각국의 여성·가족관련 정책의 주요 현안 뿐 아니라 입법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대한 면담이 주요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입법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

데 젠더분석을 명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관련 기관, 입법 기관 및 여성 정책 담당 기구 방문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젠더관점에서의 입법평가 발전을 위한 시사점 얻을 수 있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15년 연구 내용과 방법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⁴⁾

6) 전문가 워크숍 및 자문회의

강동죄에 대한 심층분석,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분석 및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입법과제와 여성·가족관련 입법과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각 영역별로 연구방법론과 구체적인 과제선정 등을 논의하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4) 방문처는 독일 연방의회(베를린),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베를린), 독일 베를린주 노동통합여성부(베를린), 오스트리아 연방 여성부(빈), 오스트리아 빈 시 여성부서(빈), 연방수상청 헌법지원국(빈), 주 정부 헌법지원국(Niederösterreich 주) 등이다. 면담에 응해주신 Paul Lehriede 연방 의원(독일 연방의회 가족노인여성청소년 위원회 위원장),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Dr.Katharina Penev-Ben Shafer, 베를린주 노동통합여성부 여성·성평등 정책 부서의 Ms. Ruel-Andresen, 오스트리아 연방 교육여성부 사회경제적 성평등, 국제·유럽연합 사무부서의 Ms. MMag.Eva-Maria Burger, 빈 시 여성부서의 Ms. Mag.a Karin Tertinegg, Ms. Mag.a Alina Zachar, 오스트리아 연방수상청 헌법지원국의 Dr. Brigitte Windisch, Niederösterreich 주 정부의 Dr. in Sabin Hilbert에게 감사한다.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5
2. 연구 내용	17
3. 연구 방법	18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는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톡킹 규제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입법과제를 도출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출생등록제도는 국가의 인구 동태를 파악하고 의료서비스 등 정책의 기본 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국가마다 각기 제도를 가지고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출생의 등록은 무엇보다도 그 자체로 아동의 인권과 복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더 나아가, 출생등록의 문제는 출생을 둘러싼 가족 및 혼인제도 내외에서 여성의 출산이라는 문제와 연결되어,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적 이슈와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다.

최근, 자기 여자 친구와의 사이에서 난 딸을 가족들에게 밝힐 용기가 없어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모텔을 전전하며 예방주사는 물론 생활고로 분유, 기저귀도 제대로 사주지 못하다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인터넷을 통해 돈을 받고 불법으로 입양을 보낸 대학생이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⁵⁾ 이와 같이 출생신고 누락, 지연, 불법·탈법적인 입양의 문제는 출생신고를 부모 등의 신고의무자에게만 맡겨두는 우리나라의 출생신고제도 하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다.

유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7조(Article 7)는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1년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출생신고제도는 위 협약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⁶⁾

이와 같이 취약한 출생신고제도에서 기인하는 신고 누락과 허위 신고의 문제, 불법·탈법적인 입양과 영아 유기, 영아 매매 등의 아동 인권을 침해하고 신분등록제도의 신뢰성을 저하하는 사회적·법적 문제의 발생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국제적 요구가 계속 됨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의 출생신고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⁷⁾

5) 충북일보 2014년 9월 14일자 기사,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359838>, 검색일: 2014. 10. 14.

6) 송효진·박복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5년: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106-107쪽.

7)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77.9%와

한편, 스토킹은 그 행위가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비교적 근래에 주목된 현상이다. 고교시절부터 짝사랑한 교사를 수년간 스토킹하고 살해한 사건, 이웃집 여성을 스토킹 하여 살해한 사건 등이 보도되면서 스토킹이라는 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1998년 미 연방차원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스토킹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여성의 8.1%, 남성의 2.2%가 평생 1회 이상의 스토킹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피해자의 78%는 여성이고, 가해자는 87%가 남성이었으며, 피해 여성의 81%가 남편이나 동거인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⁸⁾ 2011년 NIPSV의 조사에서는 여성의 15.2%, 남성의 5.2%가 스토킹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66.2%의 여성 피해자들은 전·현 파트너에 의해서 스토킹을 당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는 대부분의 스토킹이 친밀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의 스토킹 실태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스토킹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00년 수도권 거주 남녀 1200명(16세 이상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가 최초 격이다.¹⁰⁾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15.8%가 평생 1회 이상 스토킹 피해를 경험했다.¹¹⁾ 이러한 수치는 미국이나 호주 등의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스토킹 피해율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여성의 스토킹 피해 경험 비율은 20.9%로 남성 피해 경험 비율인 10.5%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²⁾

법률전문가의 82.4%가 의료기관 등에서 출생사실을 국가기관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효진 외, 2013, 60~61쪽.

8) Patricia Tjaden and Nancy Thoennes, 「*Stalking in America: Findings from the 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1998, 2쪽. <http://ncjrs.gov/App/AbstractDB/AbstractDBDetails.aspx?id=169592>.

9) Michele Black et al., 「*The National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Survey: 2010 Summary Report*」, Atlanta, GA: National Center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1.

10) 박철현 외,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00.

11)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스토킹을 “지속적으로 원치 않는 접촉을 시도”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상대가 싫다는 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집요한 접촉(뒤쫓기, 전화, 편지, 이메일, 선물 공세를 통한 집요한 구애, 위협, 협박 등)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12) 박철현 외, 2000, 52쪽.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에 따라 스토킹 대응 법제는 근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입법화되는 분야 중 하나이다. 1990년 미국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미 전역에서 스토킹을 범죄화하였으며,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아일랜드,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5대 국회 이후 몇 차례의 입법 시도에 불구하고 스토킹을 별도로 구별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스토킹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2012년 3월 21일 「경범죄처벌법」을 전면 개정하여 제3조 제1항 제41호에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표제로 처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¹³⁾ 그러나 처벌수준이 극히 미약한데다가 대응 방식 역시 처벌에 국한되어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현행 출생신고체계의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외국의 출생등록 관련 법제를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스토킹 피해에 대한 처벌 수준과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매우 미약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의 관련 입법례와 제기된 쟁점, 논의를 참조하여 스토킹 대응에 대한 쟁점을 검토하고 입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2. 연구 내용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 I 장에서는 이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리고 연구의 내용과 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제 II 장에서는 출생등록의 무자 관련 외국의 입법례를 의료기관 등에서 출생사실의 통보가 이루어지는 유형, 부모와 의료기관 등에 모두 출생신고의무가 있는 유형, 의료기관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유형,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출생신고의무가 있는 유형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입법 내용과 특징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 출생신고 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을 모색하였다.

13)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41호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은 8만원이다.

18 ●●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톡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제Ⅲ장에서는 스톡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를 소개하고, 외국의 스톡킹 규제 관련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특히 각국 입법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법률의 제정방식, 스톡킹 행위의 예시 내용, 피해의 결과, 주관적 구성요건, 친고죄 여부, 형량의 범위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에 스톡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 중심의 논의뿐만 아니라, 근래 주목 받고 있는 피해예방정책 등 각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한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스톡킹 규제에 관한 입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출생등록의무자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스톡킹 관련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국내외 관련 연구물과 각종 법률자료를 조사·분석하였다. 법률자료의 조사는 Findlaw, Lexis 등과 같은 법률 정보 사이트, 해당 국가의 법무부, 법원 사이트, 출생등록을 안내하는 행정청 사이트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나.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내용과 입법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자, 법조인, 여성단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Ⅱ

출생등록의무자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1. 출생등록의무자 관련 외국 입법의 특징 및 유형 21
2. 출생등록의무자 관련 외국의 입법례 24
3. 시사점 및 입법과제 67

1. 출생등록의무자 관련 외국 입법의 특징 및 유형

우리나라의 출생등록 절차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상 자녀의 출생신고의무자는 부 또는 모이다(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1항). 즉,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출생신고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다만, 혼인외의 출생자의 신고의무자는 모-동조 제2항), 부 또는 모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1.동거하는 친족, 2.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동조 제3항)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생의 등록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를 조사한 결과, 규율 방식과 체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출생신고(내지 통보)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일차적으로 부과하거나, 신고의무를 부모와 의료기관에 함께 지우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이 일차적으로 관여하여 출생사실이 국가에 통보되도록 하는 유형이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부모를 신고의무자로 하고 의료기관 등은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충하도록 하는 입법례는 호적제도에 기반을 둔 신분등록법제를 가지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중국과 일본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출생등록 절차 및 신고책임을 조사된 외국의 사례에 따라 유형 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생 당시 관계 의료기관 등에 일차적인 통보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부모의 신고 이전에 출생사실이 의료기관에 의해 국가에 통보되도록 하는 입법례이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들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이 국가들은 출생신고에 대한 책임이 최종적으로 부모에게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출생에 관여한 병원, 이를 진행한 의료전문가 등이 우선적으로 출생사실을 국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출생사실이 국가에 등록되기까지의 절차를 살펴보면 이를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 출생이 이루어지면 ①의료기관 등에 의한 출생사실의 (사전)통보/정보제공 → ②출생신고 → ③출생등록완료의 순으로 출생은 등록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국가별로 다소 상이한 입법의 특색을 발견할 수 있다.

22 ●●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우선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병원의 책임자, 분만에 참여한 조산사 등)이 출생 사실을 우선 신분등록 담당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후에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아동의 이름 등 상세한 사항을 기재하여 출생 신고를 하도록 출생등록 관련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출생등록 관련법에서 출생사실의 통보(Notification of birth)와 출생신고(Registration of birth)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형이다. 이와 같은 유형의 국가에서는 출생사실의 통보를 받는 국가기관과 출생신고를 접수하는 국가기관이 동일한 신분등록 담당 관청으로 되어있다.

한편 영국은 병원에서 아동이 출생한 경우, 출생 사실이 병원시스템을 통하여 당국에 통지되어 출생아에게 의료보장 번호(NHS¹⁴⁾ 번호)가 발급된다. 그리하여 출생 사실이 전산정보로서 자동적으로 관리된다. 이와는 별도로 출생등록(Birth registration)은 출생 및 사망 등록을 규율하는 법에 의하여 부모 등이 정해진 기간 내에(잉글랜드와 웨일즈는 출생후 42일, 스코틀랜드는 21일) 신분등록 담당 관청에 신고함으로써 등록이 이루어진다. 출생등록(Birth registration)과 출생아에 대한 의료보장 번호(NN4B)는 산부인과 병원에피소드 통계(Maternity Hospital Episode Statistics, Maternity HES)로 연동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통계 담당 부처에서 관리한다.¹⁵⁾

또한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에는 출생등록에 관한 사항을 인구 동태 통계(Vital statistics) 법제에서 규율한다. 일반적으로 출산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출생증명서를 인구 동태 통계 담당 국가 기관의 등록관에게 통보·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출생사실의 통보·등록이 출생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과 인구 통계 관련 국가기관 간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는 출생등록이 인구 동태 통계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 개인의 신분관계를 등록하기 위함은 아니다. 이들 국가들은 인구의 정확한 동태 파악과 보건행정을 위해 출생사실과 의료정보가 의료기관에서 국가의 인

14) National Health Service, 영국의 보건의료제도(국민보건서비스). 출생아에 대한 의료보장 번호(NHS Numbers for Babies)는 통상 'NN4B'로 약칭된다.

15) Nirupa Dattani, Preeti Datta-Nemdharry, Alison Mcfarlane, 「Linking maternity data for England 2007: methods and data quality, Health Statistics Quarterly 53 Spring 2012」, 2012, 1쪽, <http://www.ons.gov.uk/ons/rel/hsq/health-statistics-quarterly/no-53-spring-2012/linkage-of-maternity-hospital-episode-statistics-data.html>, 최종검색일: 2014. 12. 1.

구 통계 관련 기관으로 통보되도록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출생등록업무를 인구통계 관련 국가기관의 출생·사망 등록관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출생 사실이 보건/의료보장 체계 또는 인구통계 체계와 연계되어 등록·관리되고, 추후 신고의무자에 의해 상세한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의 보건/통계 시스템과 결부된 행정 전산망이 출생신고와 연계, 운용되고 있다는 특징을 알 수 있다.

둘째, 출생신고의무자는 부모로 하면서, 출생이 병원에서 이루어진 경우 의료기관 등의 시설책임자에게도 함께 출생신고의무를 지우는 유형이다. 독일이 이러한 입법례를 가지고 있다. 독일은 신분등록법(Personenstandsgesetz)에서 친권자인 부 또는 모를 출생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19조). 동시에 병원이나 그 밖의 출산을 보조하는 시설에서 출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 책임자에게도 서면의 출생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법 제20조), 동 법 시행규칙에서는 소정의 친권자 등이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시설 역시 서면신고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시행규칙 제19조). 앞서 언급한 유형인 의료기관에 의한 출생통보제도는 아니지만, 일차적 출생신고의무를 부모에게만 맡겨놓지 않고 의료기관도 함께 출생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셋째, 출생신고와 관련된 법률에서는 출생신고의무가 원칙적으로 부모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출생이 이루어지는 병원에서 즉시 출생을 신고하도록 하는 유형이다. 프랑스는 몇몇의 공립병원에 출생신고를 위한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병원 내에 출생신고센터가 있어 출생과 동시에 전산망을 통하여 출생등록이 이루어진다. 이 국가들의 출생신고와 관련된 법제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를 바 없어보였으나 실무상, 행정서비스를 통해 출생병원에서 신고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고의 편의와 출생사실의 신속·정확한 등록을 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이 출생신고에 개입하지 않고, 부모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담시키는 유형이다. 즉, 일차적인 출생신고의무자는 출생

24 ●●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자의 부모로 하고 시설 등 의료기관은 일차적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신고의무를 지우는 입법례이다.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법제를 가지고 있는데,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다음에서는 앞서 언급한 국가들의 입법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2. 출생등록의무자 관련 외국의 입법례

가. 의료기관 등에서 출생사실의 통보가 이루어지는 유형

1) 호주

가)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특별자치구역¹⁶⁾

(1) 출생의 통보

ACT 주에서 아동이 태어난 경우, 출생통보서를 서면으로 출생 이후 7일 안에 신분등록 담당 장관(registrar-general)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아동이 병원에서 태어났거나, 출생한 지 24시간 이내에 병원으로 데려온 경우에는 병원의 총책임자, 다른 경우에는 출산 당시에 산모를 전문적으로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는 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출생의 통보에 대한 책임이 있다.

(2) 출생의 신고

아동의 부모가 출생을 신고할 책임이 있다. ACT 주에서는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부모 혹은 부모 중 한 사람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때, 완성된 출생신고진술서가 필요한데, 이는 관계부서에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도 있으며 출생신고진술서는 해당 양식이 요구하는 대부분의 정보를 병원에서 기입하여 부모에게 제공하고 있다.

16) 이하 'ACT 주'라 한다. http://www.ors.act.gov.au/community/births_deaths_and_marriages/births, 최종검색일: 2014. 11. 25.

17) Births, Deaths and Marriages Registration Act 1997(1998. 6. 24. 시행), <http://www.leg>

출생·사망·혼인등록법¹⁷⁾

제2장 출생신고

제1절 출생의 통보

5 출생의 통보

- (1) ACT 주에서 아동이 태어난 경우, 책임 있는 자는 (2)항에 따라 출생의 통보에 대한 서면을 신분등록 담당 장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2) 통보는 반드시
 - (a) 규칙¹⁸⁾에 규정된 특정 사항을 포함해야 하고, 요구하고 있는 어떤 증명과 함께, (4)항에 따라 관련된 의사에 의해야 하고,
 - (b) 호적 본서 장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 (i) 아동이 살아서 태어난 경우라면-태어난 날짜로부터 7일 이내에; 혹은
 - (ii) 사산된 경우에는- 출산 후 48시간 이내에
 - (3) (1)항의 책임 있는 자라 함은-
 - (a) 아동이 병원에서 태어났거나, 태어난 지 24시간 이내에 병원으로 데려온 경우에는 - 병원의 총책임자; 혹은
 - (b) 다른 경우에는- 출산 당시에 산모를 전문적으로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는 의사 또는 조산사
 - (4) 사산된 경우에, 관련된 의사는 반드시 출산 후 48시간 이내에 태아의 사망 사유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 (a) 사산이 병원에서 이루어졌거나 사산되어 태어난 아동을 24시간 이내에 병원으로 데려온 경우에는- 병원의 총책임자
 - (b) 다른 경우에는- 출산 당시에 산모를 전문적으로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는 의사 또는 조산사
- (5) (4)항에서 관련된 의사라 함은-
- (a) 출산 당시 산모를 전문적으로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는 의사; 혹은
 - (b) 출산 후 사산된 아동의 신체를 검사한 의사
- (6) 본 장에 대한 범죄는 엄격한 책임 범죄이다.
- (7)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다른 의사가 요구되는 증명서를 제출하였다고 관련된 의사가 믿었을 경우에 (4)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2절 출생의 신고

6 출생신고진술서

본 절에서 출생신고서진술서는 진술을 의미한다.

7 출생신고가 요구되거나 승인되는 때

- (1) ACT 주에서 아동이 태어난 경우, 출생은 본 법에 따라 신고 되어야 한다.
- (2) 본 법에 따라 신고 될 수도 있는 아동의 출생에는-
 - (a) 호주 외에서 태어난 아동; 그리고
 - (b) ACT 주에서 거주하게 될 아동
- (3) ACT 주에서 비행 중인 비행기에서 태어난 아동의 경우, 본 법에 따라 출생을 등록할 수 있다.
- (4) 호주 외에서 태어난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법률에 따라 출생을 신고하였다면, 본 법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8 출생신고에 대한 책임

26 ●●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p>(1) 아동의 부모는 본 법에 따라 아동의 출생을 신고할 책임이 있다.</p> <p>(2) 아동이 기아인 경우, 양육권을 가진 자가 본 법에 따라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책임이 있다.</p> <p>10 출생신고의 의무</p> <p>(1) 아동의 출생을 신고할 책임이 있는 자는 출생신고진술서를 반드시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신분등록 담당 장관에게 접수하여야 한다.</p> <p>(2) 본 장에 대한 범주는 엄격한 책임 범죄이다.</p> <p>11 출생이 등록되는 방법</p> <p>(1) 신분등록 담당 장관은 아동의 이름과 section14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 들을 포함한 출생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이용하여 출생을 등록하여야 한다.</p> <p>(2) 그러나 신분등록 담당 장관이 항목에 대한 서술이 불가능할 경우, 신분등록 담당 장관은 그가 가능하게 서술할 수 있는 것으로 출생을 등록할 수도 있다.</p>
<p>Part 2 Registration of births</p> <p>Division 2.1 Notification of births</p> <p>5 Notification of births</p> <p>(1) If a child is born in the ACT, the responsible person must give the registrar—general written notice of the birth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2).</p> <p>Maximum penalty: 5 penalty units.</p> <p>(2) The notice must—</p> <p>(a) include the particulars prescribed by regulation and be accompanied by any certificate required to be given to or by the relevant doctor under subsection (4); and</p> <p>(b) be given to the registrar—general within—</p> <p>(i) for a child born alive—7 days after the day of the birth; or</p> <p>(ii) for a stillbirth—48 hours after the birth.</p> <p>(3) In subsection (1): responsible person means—</p> <p>(a) if the child was born in a hospital or brought to a hospital within 24 hours after the birth—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the hospital; or</p> <p>(b) in any other case—the doctor or midwife responsible for the professional care of the mother at the birth.</p> <p>(4) If the birth is a stillbirth, a relevant doctor must, within 48 hours after the birth, give a certificate of the cause of foetal death to—</p> <p>(a) if the stillbirth was in a hospital or the body of the stillborn child was brought to a hospital within 24 hours after the birth—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the hospital; or</p> <p>(b) in any other case—the doctor or midwife responsible for the professional care of the mother at the birth.</p> <p>Maximum penalty: 5 penalty units.</p> <p>Note If a form is approved under s 69 for a certificate, the form must be used.</p> <p>(5) In subsection (4): relevant doctor means—</p> <p>(a) the doctor responsible for the professional care of the mother at the birth; or</p> <p>(b) a doctor who examined the body of the stillborn child after the birth.</p>

- (6) An offence against this section is a strict liability offence.
- (7) Subsection (4) does not apply if the relevant doctor believed, on reasonable grounds, that another doctor had given the required certificate.
- Division 2.2 Registration of births
- 6 Meaning of birth registration statement for div 2.2
- In this division:
- birth registration statement means a statement for this division.
- Note If a form is approved under s 69 for a statement, the form must be used.
- 7 When registration of birth is required or authorised
- (1) If a child is born in the ACT, the birth is to be registered under this Act.
- (2) The birth of a child may be registered under this Act if the child—
- (a) is born outside Australia: and
- (b) is to become a resident of the ACT.
- (3) If a child is born in an aircraft during a flight to an airport in the ACT, the birth may be registered under this Act.
- (4) The birth of a child who is born outside Australia may not be registered under this Act if it is registered under a corresponding law.
- 8 Responsibility to have birth registered
- (1) The parents of a child are responsible for having the child's birth registered under this Act.
- (2) If a child is a foundling, the person who has custody of the child is responsible for having the child's birth registered under this Act.
- 10 Obligation to have birth registered
- (1) A person responsible for having the birth of a child registered must lodge a birth registration statement acceptable to the registrar-general with the registrar-general within 6 months after the day of the birth.
- Maximum penalty: 5 penalty units.
- (2) An offence against this section is a strict liability offence.
- 11 How births are registered
- (1) The registrar-general must register a birth by making in the register an entry relating to the birth that includes the name of the child and, subject to section 14, the prescribed particulars.
- (2) However, if not all the prescribed particulars are available to the registrar-general, the registrar-general may register a birth by including in the entry the prescribed particulars that are available to the registrar-general.

islation.act.go v.au/a/1997-112/default.asp, 최종검색일: 2014. 11. 25.

18) Births, Deaths and Marriages Registration Regulation 1998

출생·사망·혼인등록법 규칙19)
<p>4 출생의 통보</p> <p>(1) 본 법의 section 5 (3)을 위하여 다음이 규정되어 있다:</p> <p>(a) 아동이 병원에서 태어났거나, 태어난 지 24시간 이내에 병원으로 오는 경우 - 병원명 ;</p> <p>(b) 아동의 성별;</p> <p>(c) 아동이 태어난 날짜;</p> <p>(d) 아동이 태어났을 때의 생사여부;</p> <p>(e) 아동이 태어났을 때의 체중, 아동이 사산된 경우에는 임신 기간;</p> <p>(f) 아동이 여러 명 태어났는지의 여부;</p> <p>(g) 아동의 모의 성명과 거주하는 곳;</p> <p>(h) 출산 시 산모를 전문적으로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는 의사 혹은 조산사의 이름;</p> <p>(i) 아동이 입양될 경우에는 다음의 사실을 표시한다;</p> <p>(j) 통지한 사람의 이름과 직업</p> <p>(2) (1) (e)항의 세부사항으로-</p> <p>(a) 체중은 gram으로 표기</p> <p>(b) 기간은 주단위로 표기</p> <p>5 출생의 신고</p> <p>(1) 본 법의 section 11 (1)을 위하여 다음이 규정되어 있다:</p> <p>(a) 아동의 이름;</p> <p>(b) 아동의 성별;</p> <p>(c) 아동이 태어난 날짜와 장소;</p> <p>(d) 아동이 태어났을 때 생사여부;</p> <p>(e) 여러 명의 아동이 태어났는지의 여부, 만약에 여러 명이 태어난 경우에는 아동의 수와 아동 이 태어나기 전의 아동들의 수;</p> <p>(f) 아동의 모의 성과 이름, 거주하고 있는 장소와 직업;</p> <p>(g) 아동의 모의 출생지와 그녀의 출생일자, 출생일자가 없다면 나이;</p> <p>(h) 아동의 부의 성과 이름, 거주하고 있는 장소와 직업;</p> <p>(i) 아동의 부의 출생지와 그녀의 출생일자, 출생일자가 없다면 나이;</p> <p>(j) 아동의 부모가 동성 부부인지의 여부;</p> <p>(k) 아동의 부모가 합법적 동성 결혼이나 동성 간에 인정된 혼인관계라면, 결혼 날짜와 장소 ;</p> <p>(l) 출생한 아동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각 아동들의 이름과 나이(입양과 사산은 포함, 입 양을 보낸 경우는 불포함);</p> <p>(m) 아동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사망한 남아와 여아의 수;</p> <p>(n) 출생에 대한 목격자 중 적어도 1인의 이름, 목격자가 의사, 조산사 혹은 간호사라면 그 중 1인의 이름;</p> <p>(o)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있는 경우)의 이름, 직업, 거주지, 아동과의 관계</p>
<p>4 Notification of birth</p> <p>(1) For the Act, section 5 (3), the following particulars are prescribed:</p> <p>(a) if the child was born in a hospital or was brought to a hospital within 24 hours after birth—the name of the hospital;</p>

- (b) the sex of the child;
- (c) the date of birth of the child;
- (d) whether the child was born alive or stillborn;
- (e) the weight of the child at birth and, if the child was stillborn, the period of gestation of the child;
- (f) whether or not the birth was a multiple birth;
- (g) the name and place of residence of the mother of the child;
- (h) the name of the doctor or midwife responsible for the professional care of the mother at the birth;
- (i) if it is known that the child is to be adopted—an indication of that fact;
- (j) the name and occupation of the person giving the notice.

(2) For subsection (1) (e)–

- (a) a weight must be expressed in grams; and
- (b) a period must be expressed in completed weeks.

5 Registration of births

For the Act, section 11 (1), the following particulars are prescribed:

- (a) the name of the child;
- (b) the sex of the child;
- (c) the date and place of birth of the child;
- (d) whether the child was born alive or stillborn;
- (e) whether or not the birth was a multiple birth and, if it was, the number of children born as a result of the multiple birth and the number of those children born before the child;
- (f) the name, any former name and the occupation and place of residence of the mother of the child;
- (g) the place of birth of the mother of the child and her date of birth or, if the date of birth is not known, her age;
- (h) the name, any former name, and the occupation and place of residence of the father or other parent of the child;
- (i) the place of birth of the father or other parent of the child and his date of birth or, if the date of birth is not known, his age;
- (j) whether or not the parents of the child are in a domestic partnership;

Note For the meaning of domestic partnership, see the Legislation Act, s 169.

- (k) if the parents of the child are married, in a civil union or civil partnership—the date and place of the marriage, civil union or civil partnership;
- (l) the name and age of each other child of the relationship of the parents of the child in order of birth (including any adopted or stillborn child but not including any child given up for adoption);
- (m) the number of any deceased male and any deceased female children of the relationship of the parents of the child;
- (n) the name of not less than 1 person who witnessed the birth including, if the birth was witnessed by a doctor, midwife or nurse, the name of not less than 1 of them;

(o) the name, occupation, place of residence and relationship to the child, if any, of the person providing the information.

나) 뉴 사우스 웨일즈 주(州)²⁰⁾

(1) 출생의 통보

NSW 주에서 아동이 태어난 경우, 출생 이후 7일 안에 신분등록 담당관에게 출생을 통보해야 한다. 아동이 병원에서 태어났거나, 태어난 지 24시간 이내에 병원으로 데려온 경우에는 병원의 총책임자, 아동이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나 출생 후 24시간 내에 병원으로 데려오지 않은 경우에는 출산 시 산모를 전문적으로 보살필 책임이 있었던 의사 혹은 조산사에게 통보의 책임이 있다.

(2) 출생의 신고

아동의 부모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을 신고해야 할 책임이 있다. 출생신고진술서에 부모 둘 다의 서명을 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를 신분등록 담당관이 부모 중 한 사람의 서명으로도 출생신고진술서를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 따라 부모가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한다.

출생·사망·혼인등록법 ²¹⁾
제3장 출생신고
제1절 출생의 통보
12 출생의 통보
(1) NSW 주에서 아동이 태어난 경우, 책임 있는 자는 규칙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신분등록 담당관이 요구하는 양식과 방법에 의해 신분등록 담당관에게 출생을 통보해야만 한다.
(2) 통보는 반드시 전달되어야 한다:
(a) 아동이 살아서 태어난 경우라면-태어난 날짜로부터 7일 이내에; 혹은

19) Births, Deaths and Marriages Registration Regulation 1998 (1998. 6. 24. 시행), <http://www.legislation.act.gov.au/sl/1998-36/default.asp>, 최종검색일: 2014. 11. 25.

20) 이하 ‘NSW 주’ 라 한다. http://www.bdm.nsw.gov.au/bdm_bth/bdm_bct.html, 최종검색일: 2014. 11. 25.

- (b) 사산된 경우에는- 출산 후 48시간 이내에
- (3) 사산된 경우의 통보는 책임 있는 자가 신분등록 담당관이 요청하는 양식과 방법에 따라 반드시 신분등록 담당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 (a) 의사의 증명서는 태아의 사망에 대한 사유를 증명한다.
 - (b) (2)(b)에서 언급하고 있는 통보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간에 태아의 사망 원인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사의 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증명을 완료하기 위한 의사의 의도를 언급하는 것으로 통보는 표시된다.
 - (4) (3)에서 증명서 혹은 통보는 출생 시 산모를 전문적으로 보살필 책임이 있는 의사 혹은 사산된 경우에는 사산된 아동의 신체를 검사한 의사에 의해 완성되어야만 한다.
 - (5) 본 장에서 책임 있는 자라 함은:
 - (a) 아동이 병원에서 태어났거나, 태어난 지 24시간 이내에 병원으로 데려온 경우에는 - 병원의 총책임자, 혹은
 - (b) 아동이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나 출생 후 24시간 내에 병원으로 데려오지 않은 경우, 출산 시 산모를 전문적으로 보살필 책임이 있었던 - 의사 혹은 조산사
- 제2절 출생의 신고
- 13 출생신고가 요구되거나 승인되는 경우
 - (1) NSW 주에서 아동이 태어난 경우, 출생은 본 법에 따라 신고되어야 한다.
 - (2) 법정에서 출생의 신고를 명한 경우, 본 법에 따라 출생은 신고되어야 한다.
 - (3) 아동이 태어난 경우:
 - (a) NSW 주에서 비행 중인 비행기에서, 혹은
 - (b) NSW 주의 항구에 정박 중인 배에서
 본 법에 따라 출생을 등록할 수 있다.
 - (4) 연방 외에서 아동이 태어난 경우, NSW 주에서 거주하게 될 아동을 제외하고(혹은 사산한 경우) 본 법에 따라 출생을 등록할 수 있다.
 - (5) 그러나 NSW 주 외에서 아동이 태어난 경우에 해당 지역의 법률에 따라 출생을 신고하였다면, 본 법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 14 출생신고의 방법

규칙에서 요청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신분등록 담당관이 요청하는 양식과 방법에 따른 출생에 대한 통보(출생신고진술서)를 신분등록 담당관에게 전달함으로써 본 법에 따른 아동의 출생이 신고된다.
- 15 출생신고에 대한 책임
 - (1) 출생신고진술서에 부모 둘 다의 서명을 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를 신분등록 담당관이 부모 중 한 사람의 서명으로도 출생신고진술서를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법에 따라 (그리고 출생신고진술서에는 부모가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한다) 아동의 부모는 아동의 출생 신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 (2) 아동이 기아인 경우, 양육권을 가진 자는 본 법에 따라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책임이 있다.
 - (3) 신분등록 담당관은 다음이 총족될 때 아동의 출생신고에 대한 책임이 없는 자로부터의 출생신고진술서를 허가할 수 있다:
 - (a) 진술을 접수한 사람이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그리고
 - (b) 아동의 부모가 출생신고진술서를 접수할 수 없거나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없는 경우

32 ●●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톡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p>16 출생신고의 의무</p> <p>(1) 아동의 출생을 신고할 책임이 있는 자는 반드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p> <p>(2) 그러나 신분등록 담당관은 60일의 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았더라도 출생신고를 위한 목적의 출생신고진술서는 접수하여야 한다.</p> <p>17 등록</p> <p>(1) 신분등록 담당관은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포함하여 신분등록부에 출생에 관하여 입력함으로써 출생을 등록한다.</p> <p>(2) 그러나 등록에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불완전 경우, 불완전한 사항에 기초하여 신분등록 담당관은 출생을 등록할 수도 있다.</p>
<p>Part 3 Registration of births</p> <p>Division 1 Notification of births</p> <p>12 Notification of births</p> <p>(1) When a child is born in the State, the responsible person must give notice of the birth to the Registrar in a form and manner required by the Registrar, specifying the particulars required by the regulations²².</p> <p>Maximum penalty: 5 penalty units.</p> <p>(2) The notice must be given:</p> <p>(a) in the case of a child born alive—within 7 days after birth, or</p> <p>(b) in the case of a stillbirth—within 48 hours after stillbirth.</p> <p>(3) When notice of a stillbirth is given, the responsible person must also give the Registrar, in a form and manner required by the Registrar:</p> <p>(a) a doctor’s certificate certifying the cause of foetal death, or</p> <p>(b) if a doctor is of the opinion that it is impracticable or undesirable to certify the cause of foetal death at the time the notice referred to in subsection (2) (b) is given, a notice signed by a doctor stating the doctor’s intention to complete such a certificate.</p> <p>(4) The certificate or notice referred to in subsection (3) must be completed by the doctor responsible for the professional care of the birth mother at the birth or a doctor who examined the body of the stillborn child after the stillbirth.</p> <p>(5) In this section:</p> <p>responsible person means:</p> <p>(a) in the case of a child born in a hospital or brought to a hospital within 24 hours after birth—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the hospital, or</p> <p>(b) if the child was not born in a hospital or brought to a hospital within 24 hours after birth, and a doctor or midwife was responsible for the professional care of the birth mother at the birth—that doctor or midwife.</p> <p>Division 2 Registration of births</p> <p>13 Cases in which registration of birth is required or authorised</p> <p>(1) If a child is born in the State, the birth must be registered under this Act.</p>

<p>(2) If a court¹ orders the registration of a birth, the birth must be registered under this Act.</p> <p>(3) If a child is born:</p> <p>(a) in an aircraft during a flight to an airport in the State, or</p> <p>(b) on a ship during a voyage to a port in the State,</p> <p>the birth may be registered under this Act.</p> <p>(4) If a child is born outside the Commonwealth, but the child is to become (or in the case of a stillbirth, was to become) a resident of the State, the birth may be registered under this Act.</p> <p>(5) However, the birth of a child born outside the State is not to be registered under this Act if the birth is registered under a corresponding law.</p> <p>14 How to have the birth of a child registered</p> <p>A person has the birth of a child registered under this Act by giving notice of the birth to the Registrar (the birth registration statement) in a form and manner required by the Registrar, specifying the particulars required by the regulations.</p> <p>15 Responsibility to have birth registered</p> <p>(1) The parents of a child are jointly responsible for having the child's birth registered under this Act (and must both sign the birth registration statement) but the Registrar may accept a birth registration statement from one of the parents if satisfied that it is not practicable to obtain the signatures of both parents on the birth registration statement.</p> <p>(2) If a child is a foundling, the person who has custody of the child is responsible for having the child's birth registered.</p> <p>(3) The Registrar may accept a birth registration statement from a person who is not responsible for having the child's birth registered if satisfied that:</p> <p>(a) the person lodging the statement has knowledge of the relevant facts, and</p> <p>(b) the child's parents are unable or unlikely to lodge a birth registration statement.</p> <p>16 Obligation to have birth registered</p> <p>(1) A person responsible for having the birth of a child registered must have the birth registered (as provided by section 14) within 60 days after the date of the birth.</p> <p>Maximum penalty: 10 penalty units.</p> <p>(2) However, the Registrar must accept a birth registration statement given for the purposes of having a birth registered even though it is given after the end of the 60 day period.</p> <p>17 Registration</p> <p>(1) The Registrar registers a birth by making an entry about the birth in the Register including the particulars required by the regulations.</p> <p>(2) However, if the particulars available to the Registrar are incomplete the Registrar may register a birth on the basis of incomplete particulars.</p>

21) Births, Deaths and Marriages Registration Act 1995 No 62(1996. 1. 1. 시행),
[http://www.legislation.nsw.gov.au/viewtop/inforce/act+62+1995+cd+0+N/?autoquery=\(Content%3D\(\(%22birth%22\)\)\)%20AND%20\(\(Type%3D%22act%22\)%20AND%20Repealed%3D](http://www.legislation.nsw.gov.au/viewtop/inforce/act+62+1995+cd+0+N/?autoquery=(Content%3D((%22birth%22)))%20AND%20((Type%3D%22act%22)%20AND%20Repealed%3D)

다) 노던 테리토리 주(州)²³⁾

(1) 출생의 통보

NT 주에서 아동이 태어난 경우, 출생 이후 10일 안에 신분등록 담당관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병원에서 아동이 태어났거나 아동이 태어난 후 24시간 내에 병원으로 데려온 경우에는 병원의 총 책임자, 교도소나 정신병원에서 아동이 태어난 경우에는 교도소나 병원의 총 책임자, 또 다른 경우에는 의사, 조산사 혹은 출산 당시에 산모를 전문적으로 책임지는 헬스워커에게 통보에 대한 책임이 있다.

(2) 출생의 신고

부모는 아동의 출생을 등록해야 할 책임을 진다. 보통 병원이나 출산과 관련된 자가 작성하여 주는 출생증명서와 함께 주어진 양식의 출생신고진술서를 작성하여 아동의 출생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출생·사망·혼인등록법 ²⁴⁾
제3장 출생신고
제1절 출생의 통보
12 출생의 통보
(1) NT 주에서 아동이 태어난 경우, 책임 있는 자는 반드시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을

%22N%22)%20OR%20(Type%3D%22subordleg%22%20AND%20Repealed%3D%22N%22))%20AND%20(%22Historical%20Document%22%3D%220%22)&dq=Document%20Types%3D%22%3Cspan%20class%3D%22dq%22%3EActs%3C%2Fspan%3E,%20%3Cspan%20class%3D%22dq%22%3ERegs%3C%2Fspan%3E%22,%20Exact%20Phrase%3D%22%3Cspan%20class%3D%22dq%22%3Ebirth%3C%2Fspan%3E%22,%20Search%20In%3D%22%3Cspan%20class%3D%22dq%22%3EText%3C%2Fspan%3E%22&fullquery=(((%22birth%22))), 최종검색일: 2014. 11. 25.

22) Births, Deaths and Marriages Registration Regulation 2011(2011. 9. 1. 시행), [http://www.legislation.nsw.gov.au/viewtop/inforce/subordleg+464+2011+cd+0+N/?autoquery=\(Content%3D\(\(%22birth%22\)\)\)%20AND%20\(\(Type%3D%22act%22%20AND%20Repealed%3D%22N%22\)%20OR%20\(Type%3D%22subordleg%22%20AND%20Repealed%3D%22N%22\)\)%20AND%20\(%22Historical%20Document%22%3D%220%22\)&dq=Document%20Types%3D%22%3Cspan%20class%3D%22dq%22%3EActs%3C%2Fspan%3E,%20%3Cspan%20class%3D%22dq%22%3ERegs%3C%2Fspan%3E%22,%20Exact%20Phrase%3D%22%3Cspan%20class%3D%22dq%22%3Ebirth%3C%2Fspan%3E%22,%20Search%20In%3D%22%3Cspan%20class%3D%22dq%22%3EText%3C%2Fspan%3E%22&fullquery=\(\(\(%22birth%22\)\)\),](http://www.legislation.nsw.gov.au/viewtop/inforce/subordleg+464+2011+cd+0+N/?autoquery=(Content%3D((%22birth%22)))%20AND%20((Type%3D%22act%22%20AND%20Repealed%3D%22N%22)%20OR%20(Type%3D%22subordleg%22%20AND%20Repealed%3D%22N%22))%20AND%20(%22Historical%20Document%22%3D%220%22)&dq=Document%20Types%3D%22%3Cspan%20class%3D%22dq%22%3EActs%3C%2Fspan%3E,%20%3Cspan%20class%3D%22dq%22%3ERegs%3C%2Fspan%3E%22,%20Exact%20Phrase%3D%22%3Cspan%20class%3D%22dq%22%3Ebirth%3C%2Fspan%3E%22,%20Search%20In%3D%22%3Cspan%20class%3D%22dq%22%3EText%3C%2Fspan%3E%22&fullquery=(((%22birth%22))),) 최종검색일: 2014. 11. 25.

23) 이하 ‘NT 주’라 한다. <http://www.nt.gov.au/justice/bdm/>, 최종검색일: 2014. 11. 25.

포함하여 신분등록 담당관에게 출생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 (2) (1)의 사항은 반드시 출생 이후 10일 안에 통보해야 한다.
- (3) 사산한 경우, 책임 있는 자는 신분등록 담당관이 지정하는 서류에 사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의사의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4) 해당 증명서는 반드시 사산 당시 산모를 책임지고 있던 의사나 사산 후에 아동의 검진을 맡았던 의사에 의해서만 작성되어야 한다.
- (5) 아동의 출생이 교도소, 또는 유치장에서 이루어진 경우 Prisons (Correctional Services) Act 의 section 5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출생지를 교도소나, 유치장의 이름으로 해서는 아니되며, 교도소나 유치장이 위치한 도시나 마을 이름, 혹은 교도소에서 가까운 곳, 유치장에서 가까운 도시나 마을 이름으로 해야 한다.
- (6) 위에서 책임 있는 자란:
 - (a) 병원에서 아동이 태어났거나 아동이 태어난 후 24시간 내에 병원으로 데려온 경우에는 - 병원의 총 책임자; 혹은
 - (b) 교도소나 정신병원에서 아동이 태어난 경우에는 - 교도소나 병원의 총 책임자; 혹은
 - (c) 또 다른 경우에는 - 의사, 조산사 혹은 출산 당시에 산모를 전문적으로 책임지는 헬스워커를 말한다.

제2절 출생의 신고

13 출생신고가 요구되거나 승인되는 때

- (1) NT 주에서 아동이 태어났을 경우, 그 출생은 이 법에 따라 반드시 신고되어야 한다.
- (2) (3)에 의거하여, 연방관할 외에서 아동이 태어난 경우에 아동은 해당 지역의 거주자는 되나, 출생은 본 법에 의하여 등록되어질 수도 있다.
- (3) 연방관할 외에서 태어난 아동은 출생이 해당 지역의 법률에 의해 등록된 경우, 본 법에 의해 등록될 수 없다.

14 출생신고의 방법

본 법률에 의하여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는 사람은 신분등록 담당관이 규정에 의해 요구하는 자료를 포함하여 허용하는 양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15 출생신고에 대한 책임

- (1) 아동의 부모는 본 조항으로 인해 공동으로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책임을 지며(그리고 출생등록 진술서에 부모 둘 다 반드시 아동의 출생등록 진술서에 서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신분등록 담당관이 부모 중 일방의 사망, 실종, 건강상의 이유 등의 사유 때문에 부모 중 일방이 참석할 수 없거나 불가능 할 때에는 신분등록 담당관은 부모 중 한 사람으로부터 출생등록진술서를 받을 수 있다.
- (2) 만약 아동이 기아인 경우에, 해당 아동의 보호를 맡고 있는 사람이 아동의 출생신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 (3) 신분등록 담당관은 아동의 출생 등록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는 아래의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으로부터 출생신고를 받아들일 수 있다:
 - (a) 진술서를 위임받은 사람이 관련된 사실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경우; 그리고
 - (b) 해당 아동의 부모가 불가하거나, 불가피하게 출생등록진술서를 위임할 수밖에 없는 경우

16 출생신고의 의무

- (1) 출생한 아동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아동 출생 이후 60일 내에

<p>신분등록 담당관에게 출생등록진술서를 제출하는 의무를 이행한다.</p> <p>(2) 신분등록 담당관은 (1)에서 언급하는 60일이 지난 후에 제출되는 출생등록진술서라도 등록처리를 해야만 한다.</p> <p>17 등록</p> <p>(1) 신분등록 담당관은 법에서 명시하는 조항들을 포함한 출생에 관한 사항들을 신분등록부에 등록한다.</p> <p>(2) 만약 신분등록부에 해당 세부사항이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신분등록 담당관은 작성된 세부사항을 기준으로 출생을 등록할 수 있다.</p>
<p>Part 3 Registration of births</p> <p>Division 1 Notification of births</p> <p>12 Notification of births</p> <p>(1) When a child is born in the Territory, the responsible person must give notice of the birth to the Registrar including the particulars required by the Regulations.</p> <p>Maximum penalty: 8 penalty units.</p> <p>(2) Notice under subsection (1) must be given within 10 days after the birth.</p> <p>(3) When notice of a still-birth is given, the responsible person must also give the Registrar a doctor's certificate, in a form approved by the Registrar, certifying the cause of foetal death.</p> <p>(4) The certificate must be completed by the doctor responsible for the professional care of the mother at the birth or a doctor who examined the body of the still-born child after the birth.</p> <p>(5) Where a child is born in a prison or police prison, as defined in section 5 of the Prisons (Correctional Services) Act, a notice under subsection (1) must not refer to the place of birth as the prison or police prison, other than by referring to the name of the city or town in which the prison or police prison is located or the city or town nearest to the prison or police prison.</p> <p>(6) In this section:</p> <p>responsible person means:</p> <p>(a) for a child born in a hospital or brought to a hospital within 24 hours after birth -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the hospital; or</p> <p>(b) for a child born in a prison or mental institution -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the prison or mental institution; or</p> <p>(c) for any other child - the doctor, midwife or health worker responsible for the professional care of the mother at the birth.</p> <p>Division 2 Registration of births</p> <p>13 When registration of birth is required or authorised</p> <p>(1) If a child is born in the Territory, the birth must be registered under this Act.</p> <p>(2) Subject to subsection (3), if a child is born outside the Commonwealth, but the child is to become a resident of the Territory, the birth may be registered under this Act.</p> <p>(3) The birth of a child born outside the Commonwealth cannot be registered under this Act if the birth is registered under a corresponding law.</p> <p>14 How to have birth of child registered</p>

<p>A person has the birth of a child registered under this Act by lodging a statement (birth registration statement) in a form approved by the Registrar containing the information required by the Regulations.</p> <p>15 Responsibility to have birth registered</p> <p>(1) The parents of a child are jointly responsible for having the child's birth registered under this Act (and must both sign the birth registration statement) but the Registrar may accept a birth registration statement from one of the parents if satisfied that it is impossible, impractical or inappropriate for the other parent to join, or be required to join in, the application whether because of his or her death, disappearance, ill health or unavailability or the need to avoid unwarranted distress or for some other reason.</p> <p>(2) If a child is a foundling, the person who has custody of the child is responsible for having the child's birth registered.</p> <p>(3) The Registrar may accept a birth registration statement from a person who is not responsible for having the child's birth registered if satisfied that:</p> <p>(a) the person lodging the statement has knowledge of the relevant facts: and</p> <p>(b) the child's parents are unable or unlikely to lodge a birth registration statement.</p> <p>16 Obligation to have birth registered</p> <p>(1) A person responsible for having the birth of a child registered must ensure that a birth registration statement is lodged with the Registrar within 60 days after the date of the birth.</p> <p>Maximum penalty: 8 penalty units.</p> <p>(2) The Registrar must accept a birth registration statement even though it is lodged after the end of the 60 day period referred to in subsection (1).</p> <p>17 Registration</p> <p>(1) The Registrar registers a birth by making an entry about the birth in the Register including the particulars required by the Regulations.</p> <p>(2) If the particulars available to the Registrar are incomplete the Registrar may register a birth on the basis of incomplete particulars.</p>
--

2) 뉴질랜드

가) 출생의 통보

뉴질랜드에서는 아동의 출생 후 5일 이내에 신분등록 담당관에게 출생이 통보되어야 한다. 병원에 입원하는 중이거나 입원하기 직전에 출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병원의 직원,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입원하기 직전에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출산 당시에 함께 있었던 의사 또는 조산사, 의사

24) BIRTHS, DEATHS AND MARRIAGES REGISTRATION ACT, http://www.austlii.edu.au/au/legis/nt/consol_act/bdamra383/, 최종검색일: 2014. 11. 25.

나 조산사 없이 출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참석하고 있었거나 출산 후 즉시 모를 인정할 수 있는 참여자에게 통보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나) 출생의 신고

뉴질랜드에서 출생한 아동은 반드시 그 출생을 신고해야 한다. 부모는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출생이후 2개월²⁵⁾ 이내 신고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출생등록신청서에는 양 부모의 서명이 있어야 하지만 아동이 한부모 가정의 자녀이거나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의해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방의 서명만으로도 가능하다. 신청 양식은 출산 후에 보통 병원이나 조산사가 제공한다. 양식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교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내무부(The 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의 홈페이지²⁶⁾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출생·사망·혼인관계등록법 ²⁷⁾
제2장 출생
5 뉴질랜드에서의 출생에 대한 통보와 등록 뉴질랜드의 모든 출생은 통보되고 등록되어야 한다.
5A 출생의 사전 통보
(1) 뉴질랜드의 각각의 출생에 대한 사전 통보는 해당 조항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 모가 병원에 입원하는 중이거나 입원하기 직전에 출산이 이루어진 경우, 병원 직원은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
(3) 모가 병원에 입원하는 중이거나 입원하기 직전에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사전 통보는 다음의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다.
(a) 출산 당시에 함께 있었던 의사; 또는
(b) 의사가 참석하지 않고 출산이 이루어진 경우에 함께 있었던 조산사; 또는
(c) 의사나 조산사 없이 출산이 이루어진 경우, 참석하고 있었거나 출산 후 즉시 모를 인정할 수 있는 참여자
(4) 사전 통보는 아동의 출생 후 5일 이내에 신분등록 담당관에게 서명하여 통보 양식이 완성되어 전달되어야 한다.
(5) 신분등록 담당 장관은 건강 부서 장관에게 발생한 모든 사산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9 출생의 신고에 대한 주된 책임자인 부모

25) http://www.dia.govt.nz/diawebsite.nsf/wpg_URL/Services-Births-Deaths-and-Marriages-Birth-Registration?OpenDocument, 최종검색일: 2014. 11. 25.

26) <http://www.dia.govt.nz/Births-deaths-and-marriages>, 최종검색일: 2014. 11. 25.

<p>(1)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아동의 부모는 반드시, 출산 후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빨리 -</p> <p>(a) 본 법에 따라 출생을 신분등록 담당관에게 함께 신고한다;</p> <p>(2) 그러나 신분등록 담당관은 다음의 경우에 부모 중 일방의 서명만으로도 출생등록을 인정할 수 있다.</p> <p>(a) 법적으로 아동이 한부모의 자녀일 때; 혹은</p> <p>(b) 부모 중 한명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 혹은</p> <p>(ba) 부모 중 한명의 서명을 얻는 것이 합리적으로 불가능한 때의 사유로는-</p> <p>(i) 그 혹은 그녀가 외국에 있는 경우; 그리고</p> <p>(ii) 그 혹은 그녀가 합리적인 형편에 따라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혹은</p> <p>(c) 부모 중 한명의 서명을 요구하는 것이 부모 중 하나에게 부당한 고통을 주는 경우</p> <p>(3) 아동의 부모가 아닌 자는 신분등록 담당자에게 아동의 출생을 통보해서는 안 되고, section s 7, 8, 10을 제외하고 불가능하다.</p> <p>(4)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법적으로 하나의 부모를 가진 아동이라 함은</p> <p>(a) section 20(1) or 22(1) of the Status of Children Act 1969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자가 단독으로 행동한 상황에서 태어난 아동</p> <p>(b) 임신을 위한 난자, 배아, 정자의 기증자는(경우에 따라서) 임신기간 후에 여성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출생 전에 등록을 위해 고지되는 사항이다.</p> <p>10 보호자 혹은 권한이 부여된 자의 출생 신고</p> <p>부모 외에 아동의 보호자 혹은 신분등록 담당 장관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자는 다음의 경우에 아동의 출생을 신분등록 담당관에게 신고할 수도 있다-</p> <p>(a) 부모 모두 이를 실패했거나 거절한 경우; 혹은</p> <p>(b) (9(2) 적용되는 경우에) 아동의 부모가 이를 실패했거나 거절한 경우</p> <p>11 출생 신고의 방법</p> <p>(1) (3)을 조건으로 출생을 신분등록 담당관에게 통보한 자는 표준 양식에 서명하고 완성하여 이를 신분등록 담당관에게 주거나, 보내거나, 우편으로 전달하여야 한다.</p> <p>(2) (3)항을 조건으로, 표준 양식을 완성하고 서명하여 신분등록 담당관에게 보낸 자는 일반적으로 우편이 전달되는 시간 내에서 양식이 신분등록 담당관에게 도달한 그 때에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p> <p>(3) 장소-</p> <p>(a) 누구나 출생의 신고를 표준 양식에 서명하고 완성하여 신분등록 담당관에게 보내거나 발송함으로써 통보한다.</p> <p>(b) 양식이 도달하지 않거나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신분등록 담당관은 9(1) 따라 승인할 수 있으며, 10 항에 따라 승인할 수 있으며, 양식이 보내지지, 발송되지 않은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p>
<p>Part 2 Births</p> <p>5 Births in New Zealand to be notified and registered</p> <p>Every birth in New Zealand shall be notified and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this Part.</p> <p>5A Preliminary notice of birth</p> <p>(1) A preliminary notice must be given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for each birth in New Zealand.</p>

40 ●●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 (2) If a birth takes place during or immediately before the mother's admission to hospital, the occupier of the hospital must give the preliminary notice.
- (3) If a birth does not take place during or immediately before the mother's admission to hospital, the preliminary notice must be given by—
 - (a) a doctor, if he or she is present at the birth; or
 - (b) a midwife, if he or she is present at the birth but a doctor is not present; or
 - (c) the occupier of premises where the birth takes place or where the mother is admitted immediately after the birth, if neither a doctor nor a midwife is present.
- (4) A preliminary notice is given by completing, signing, and giving the standard form preliminary notice to a Registrar within 5 working days after the birth.
- (5) The Registrar-General must notify the Director-General of Health of all still-births for which a preliminary notice has been given.

9 Parents primarily responsible for notifying birth

- (1) Both parents of a child born in New Zealand must, as soon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after the birth,—
 - (a) jointly notify a Registrar of the birth in accordance with this Act; and
 - (b) in the case of a child born on or after 1 January 2006, inform the Registrar whether or not, to the best of their knowledge, either or both of the child's parents are New Zealand citizens or persons entitled, under the Immigration Act 2009, to be in New Zealand indefinitely.
- (2) However, a Registrar may accept the form signed by only 1 parent if he or she is satisfied that—
 - (a) the child has only 1 parent at law; or
 - (b) the other parent is unavailable; or
 - (ba) it is not reasonably practicable to obtain the other parent's signature because—
 - (i) he or she is overseas; and
 - (ii) he or she cannot be contacted within a period of time that is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or
 - (c) requiring the other parent to sign the form would cause unwarranted distress to either of the parents.
- (3) A person who is not a child's parent must not notify a Registrar of the child's birth and is not capable of doing so except as provided in sections 7, 8, and 10.
- (4)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 child has 1 parent at law if—
 - (a) the child is born as a result of a woman acting alone in a situation described in section 20(1) or 22(1) of the Status of Children Act 1969; and
 - (b) the donor of the ovum, embryo, or semen (as the case may be) for the pregnancy does not become the partner of the woman after the time of conception but before the birth is notified for registration.

10 Guardian or authorised person may notify birth

A guardian of a child other than a parent, or a person authorised by the Registrar-General to notify the birth, may notify a Registrar of the child's birth if—

(a) both parents have failed or refused to do so; or
 (b) the child's parent has failed or refused to do so (if section 9(2) applies).

11 Manner of notification of birth

(1) Subject to subsection (3), a person notifying a Registrar of a birth shall do so by completing and signing the standard form and giving, sending, or posting it to the Registrar.

(2) Subject to subsection (3), a person who completes and signs the standard form and posts it to the Registrar shall be deemed to do so at the time the form would be received by the Registrar in the normal course of post.

(3) Where—

(a) any person has notified a Registrar of a birth by completing and signing the standard form and sending or posting it to a Registrar; but

(b) it has not arrived or has been lost or destroyed,— a Registrar may authorise the person, or any other person required by section 9(1) or authorised by section 10 to notify a Registrar of the birth, to do so as if the form had never been sent or posted; and in that case the person concerned may do so.

3) 영국

가) 잉글랜드와 웨일즈

(1) 출생의 통보-출생아에 대한 의료보장 번호의 부여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병원에서 아동이 출생한 경우, 병원시스템을 통하여 출생아에게 의료보장 번호(NHS²⁸⁾ 번호)가 발급된다. 병원이 아닌 집에서 출생한 경우라면, 방문하게 되는 방문 간호사(Health Visitor: 영국의 공중보건 방문 간호사)가 출생아에게 발급 번호를 알려주고 있다.²⁹⁾

출생의 등록(Birth registration)과 출생아에 대한 의료보장 번호(NN4B)는 산부인과 병원 에피소드 통계(Maternity Hospital Episode Statistics, Maternity HES)로 연동되어 데이터가 국가적 차원에서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이 관리한다.³⁰⁾

27) Births, Deaths, Marriages, and Relationships Registration Act 1995(1995. 9. 1. 시행), <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1995/0016/latest/DLM359377.html>, 최종검색일: 2014. 11. 25.

28) National Health Service, 영국의 보건의료제도(국민보건서비스). 출생아에 대한 의료보장 번호(NHS Numbers for Babies)는 통상 'NN4B'로 약칭된다.

29) <http://www.nhs.uk/NHSEngland/thenhs/records/Pages/thenhsnumber.aspx>, 최종검색일: 2014. 11. 25.

42 ●●●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톡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2) 출생의 신고

출생아에게 출생 즉시 의료보장 번호(NN4B)가 부여되는 것과는 별도로 출생의 등록(Birth registration)은 출생 및 사망등록법에 규정된 자(부모 등)에 의해 출생일로부터 42일 이내에 출생에 관한 정보를 신분등록 담당관에게 제출하여 등록담당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출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는 출생 후 42일 안에 아동의 출생 신고를 마쳐야 하며, 출생지 관할 지역 신분등록 사무소에 가거나 또는 모가 병원에서 떠나기 전 병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출생 및 사망등록법 ³¹⁾
<p>1. 출생등록에 대한 사항</p> <p>(1) 본 법의 본 장의 규정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은 아동이 출생한 행정구의 출생 및 사망 등록 담당관이 출생에 관하여 제시된 특정한 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이 된다.</p> <p>(2) 다음의 사람에게 출생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 부여된다.</p> <p>(a) 출생아의 부 또는 모;</p> <p>(b) 출생아가 태어난 거주지의 점유자;</p> <p>(c) 출생 현장에 있던 자;</p> <p>(d) 출생아의 보호자.</p> <p>(e) 유기된 사산아일 경우, 그 사산아를 발견한 자.</p> <p>2. 42일 이내에 신분등록 담당관에게 출생과 관련된 정보 제공</p> <p>모든 출생에 있어서, 출생자의 관한 정보를 42일 이내에 신분등록 담당관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다음의 사람들에게 부여된다.</p> <p>(a) 출생아의 부 또는 모;</p> <p>(b) 부모가 출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생 장소거주지의 점유자, 출생 현장에 있던 자, 출생아의 보호자가 출생 후 42일 이내에 신분등록 담당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출석하여 서명하여야 한다.</p>
<p>Registration of Births</p> <p>1. Particulars of births to be registered.</p> <p>(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Part of this Act, the birth of every child born in England and Wales shall be registered by the registrar of births and deaths for the sub - district in which the child was born by entering in a register kept for that sub - district such particulars</p>

30) Nirupa Dattani 외, 2012, 1쪽. <http://www.ons.gov.uk/ons/rel/hsq/health-statistics-quarterly/no-53-spring-2012/linkage-of-maternity-hospital-episode-statistics-data.html#tab-abstract>, 최종검색일: 2014. 12. 1.

concerning the birth as may be prescribed; and different registers shall be kept and different particulars may be prescribed for live - births and still - births respectively:

(2)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qualified to give information concerning a birth, that is to say—

(a) the father and mother of the child;

(b) the occupier of the house in which the child was to the knowledge of that occupier born;

(c) any person present at the birth;

(d) any person having charge of the child.

(e) in the case of a still - born child found exposed, the person who found the child.

2. Information concerning birth to be given to registrar within forty - two days.

In the case of every birth it shall be the duty—

(a) of the father and mother of the child; and

(b) in the case of the death or inability of the father and mother, of each other qualified informant, to give to the registrar, before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forty - two days from the date of the birth, information of the particulars required to be registered concerning the birth, and in the presence of the registrar to sign the register:

나) 스코틀랜드

(1) 출생의 통보-출생아에 대한 의료보장 번호의 부여

스코틀랜드 역시 출생아에게 의료보장(NHS) 번호가 발급된다. 이는 그 출생과 관련한 등록번호이며, 스코틀랜드의 의사에 의해 등록된다.³²⁾ 국가의료보장 중앙 등록(National Health Service Central Register, NHSCR)은 스코틀랜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출생의 정보를 관리하는데, 출생 시 부여되는 의료보장(NHS) 번호에 의해 아동을 식별하고 그에 따른 의료보장 혜택이 제공된다. NHSCR은 지역 선거 관리 및 등록 서비스(스코틀랜드) 법(Local Electoral Administration and Registration Services (Scotland) Act 2006) 제 57조에 근거하여 운영된다.³³⁾

31) Births and Deaths Registration Act 1953(1953. 9. 30. 시행), <http://www.legislation.gov.uk/ukpga/Eliz2/1-2/20/contents>, 최종검색일: 2014. 11. 25.

32) <http://www.gro-scotland.gov.uk/national-health-service-central-register/about-the-register/what-information-is-held-on-the-register.html>, 최종검색일: 2014. 11. 25.

33) <http://www.gro-scotland.gov.uk/national-health-service-central-register/about-the-register/index.html>, 최종검색일: 2014. 11. 25.

44 ●●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톡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2) 출생의 신고

출생아에게 의료보장번호가 부여되는 것과 별도로, 출생 신고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부모가 출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생아의 부모 중 일방의 친족으로 출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출생 장소의 거주자로 출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출생 당시 함께 있던 사람, 출생아의 보호자는 지역의 신분등록 담당관에게 출생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자격이 부여되고 정보 제공과 함께 출생을 신고할 책임이 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출생 후 21일 이내에 출생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앞서 언급한 출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신고할 의무를 진다.³⁴⁾

출생, 사망 및 혼인등록법 ³⁵⁾
<p>제2장 출생의 등록</p> <p>13. 출생등록에 대한 사항</p> <p>(1) 모든 등록은 해당 지역에서 지역의 신분등록 담당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p> <p>(a) 출생의 신고, 그리고</p> <p>(b) 사산의 신고,</p> <p>각 항에서 출생과 사산의 신고는 각각 규정되어 있다;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는 아동의 모든 출생은 본 법의 본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의 신분등록 담당관에 의해 등록되어야 하고, 당해 지역이 두 곳인 경우, 두 지역의 신분등록 담당관 중 하나가 관할이 있는 것으로 한다.</p> <p>(2) 다음의 항에서, 본 법의 본 장에서 “등록기관”이라 규정하는 바는 어떤 출생이든지 적당한 구역의 지역 등록기관을 말하고, 두 곳의 적당한 구역이 있는 경우, 둘 중 어느 하나이면 된다; 본 법,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어떤 형태의 출생이든지 출생과 관련한 사항은 등록기관에 조회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p> <p>(3) 다음의 항의 목적을 위해 아동의 출생과 관련한 적당한 구역은 다음을 말한다.</p> <p>(a) 출생이 일어난 곳</p> <p>(b) 출생의 시점에 아동의 모가 거주하고 있는 장소</p> <p>(c) 살아있는 아동이 발견되었거나, 죽어있는 상태의 아동을 발견한 경우에는 아동의 출생 장소를 알 수 없으므로 등록지는 아동 혹은 아동의 사체가 발견된 곳으로 한다.</p> <p>(4) 아동이 (스코틀랜드 내에서 혹은 외에서) 여행 중의 선박, 항공, 지상 교통수단에서 태어난 경우, 신분등록 담당 장관의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아동은 그러한 선박, 항공, 지상 교통수단이 도착하는 스코틀랜드의 어느 곳이라도 등록해야 하고, 이 때 그 곳에서 출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p>

34) <http://www.gro-scotland.gov.uk/regscot/registering-a-birth.html>, 최종검색일: 2014. 11. 25.

14. 출생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 (1) 이 법의 본 장의 규정에 따라 모든 출생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가 발생한다-
 - (a) 아동의 부 혹은 모, 또는
 - (b) 사망, 혹은 부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항의 각 사람이 출생과 관련한 정보는 제공할 자격이 있고, 출생한 일로부터 21일 내에, 개별적으로 등록/신고 사무소를 방문하여 해당 신분등록 담당관에게 등록/신고에 요구되는 출생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부 혹은 모 둘 중 누구라도 서명하여 본 조항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2) 아동의 부와 모를 포함하여 다음의 사람들은 출생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는-
 - (a) 아동의 부모 중 하나의 친척으로 출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 (b) 아동이 태어난 곳의 거주자로 출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 (c) 출생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 (d) 아동의 양육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 / 아동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 (3) 모든 출생에 대해 두 번 혹은 그 이상을 등록하는 것 혹은 하나의 등록에 한 번 이상을 허가할 수는 없다.
- (4) 아동의 출생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두 번 혹은 그 이상을 등록하거나 하나의 등록에 대하여 한 번 이상을 허가한 부분에 대하여 신분등록 담당 장관은 그 중 특정된 것을 제외하고 모든 등록의 취소를 지시할 수도 있다.

15. 영유아 발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 (1) 살아있는 영유아가 발견된 곳에서는 아동이 발견된 해당 지역 당국에 보고되어야 하며, 이는 지역 당국 영유아과 직원이나 지역 당국에 의해 정해진 사람에게는 의무이다. 아동이 발견된 날로부터 2달 이내에 아동이 발견된 증거와 같은 정보는 신분등록 담당관에게 제출되어야 하고, 이는 출생에 대한 등록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지역 당국의 소유이며, 신분등록 담당관이 참석하여 등록에 서명하여야 한다.
- (2) 등록된 의사가 언급한 아동의 대략적인 출생일에 따라 신분등록담당관이 증명서에 서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를 아동의 출생일로 입력할 수 있다.
- (3) 위 규정은 살아있는 영유아를 발견했을 때 적용한 것과 같이 사망한 영유아의 신체를 발견하였을 때에도 적용되어야 하고, 지역 당국의 아동과 직원(공무원)이나 지역 당국이 임명한 사람은 지방검찰관에게 발견된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4) 본 규정에서 “지역 당국”은 아동과 청소년 법에서 의미하는 것과 같고 “지방”은 그러한 당국에 따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한다.

16. 출생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신분등록 담당관의 권한

- (1)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21일이 경과된 후 그 아동의 출생과 관련하여 등록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정보가 본 법의 14항에 따라 신분등록 담당관에게 전달되지 않은 때, 아동이 태어난 곳의 신분등록 담당관은 출생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누구에게라도 소정의 양식을 통해 통지할 수 있다.
 - (a) 그러한 날짜 전에(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적어도 8일에서 15일을 넘지 않고) 등록사무소에 개별적으로 출석하여 통지를 확정지을 수 있다;
 - (b) 출생과 관하여 등록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의 지식과 믿음을 다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p>(c) 신분등록 담당관 입회하에 등록에 서명한다.</p> <p>(2) 상기 항의 이행을 요구하라는 통지를 받은 사람이 지정된 날짜에 통지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신분등록 담당관은 지정된 양식을 통해 두 번째 통지를 안내할 수 있으며 이를 요구받은 사람은 두 번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p>
<p>PART II</p> <p>REGISTRATION OF BIRTHS</p> <p>13. Particulars of births to be registered</p> <p>(l) For every registration district there shall be kept by the district registrar</p> <p>(a) a register of births, and</p> <p>(b) a register of still-births,</p> <p>containing such particulars as may be prescribed for them respectively ; and the prescribed particulars of the birth of every child born in Scotland shall,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Part of this Act, be registered by the registrar in the relevant register kept for the appropriate district, or, if there are two appropriate districts, in the relevant register kept for either of them.</p> <p>(2) In the foregoing subsection, and in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Part of this Act, " the registrar " in relation to the birth of any child means the district registrar for the appropriate district, or, if there are two appropriate districts, the district registrar for either of them ; and any reference in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Part of this Act to the register of births or stillbirths in relation to the birth of any child shall be construed as a reference to the register in which the particulars of the birth are, or may be, registered in pursuance of the said subsection.</p> <p>(3) For the purposes of the foregoing subsections the appropriate districts in relation to the birth of any child shall be-</p> <p>(a) the registration district in which the birth took place, and</p> <p>(b) any other registration district in which the mother of the child was ordinarily resident at the time of the birth, and</p> <p>(c) in a case where a living infant child is found exposed, or the body of a dead infant child is found, and the place in which the birth took place is not known, the registration district in which the child, or, as the case may be, the body of the dead child, was found.</p> <p>(4) Where a child is born (whether within or out of Scotland) in a ship, aircraft or land vehicle in the course of a journey, and that child is brought by such ship, aircraft or land vehicle to any place in Scotland, the birth shall, unless the Registrar General otherwise directs, be deemed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to have occurred at that place.</p> <p>14. Duty to give information of particulars of birth</p> <p>(1) Subject to the subsequent provisions of this Part of this Act, in the case of every birth it shall be the duty of-</p> <p>(a) the father or mother of the child, or</p> <p>(b) in the case of the death or inability of the father and mother, each other person who under the next following subsection is qualified to give information concerning the birth, within twenty-one days from the date of the birth, to attend personally at the registration office and give</p>

to the registrar information of the particulars required to be registered concerning the birth and sign the register in the presence of the registrar : Provided that the giving of that information and the signing of the register by the father or the mother or by any one of those persons shall constitute a discharge of any duty imposed by this subsection on any other person.

- (2) The following persons, in addition to the father and mother, shall be qualified to give information concerning the birth of a child, that is to say-
- (a) any relative of either parent of the child, being a relative who has knowledge of the birth ;
 - (b) the occupier of the premises in which the child was, to the knowledge of that occupier, born ;
 - (c) any person present at the birth ;
 - (d) any person having charge of the child.
- (3) Nothing in this or the last foregoing section shall authorise the registration of the particulars of any birth in two or more registers, or more than once in any one register.
- (4) If it appears to the Registrar General that the particulars of the birth of any child have been registered in two or more registers, or more than once in any one register, he may give directions for the cancellation of all those registrations except such one of them as may be specified in the directions.

15. Duty to give information concerning finding of infant children

- (1) Where any living infant child is found exposed and the finding has been reported to the local authority in whose area the child was found, it shall be the duty of the children's officer of the local authority, or such other person as may be appointed for the purpose by the local authority, to give to the registrar, within two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the child was found, information as to the finding of the child and such evidence as may be in the local authority's possession as to the particulars required to be registered concerning the birth, and to sign the register in the presence of the said registrar.
- (2) If there is produced to the said registrar a certificate signed by a registered medical practitioner stating that in the opinion of the medical practitioner a specified date is likely to have been the approximate date of the birth of the child, that date may be entered in the register as the date of birth of the child.
- (3) The foregoing provisions of this section shall apply to the finding of the body of a dead infant child as they apply to the finding of a living infant child, with the substitution for any reference to the children's officer of or other person appointed by the local authority of a reference to any procurator-fiscal to whom the finding has been reported.
- (4) In this section " local authority " has the same meaning as in the Children and Young Persons (Scotland) Act 1937, and " area " , in relation to such an authority shall be construed accordingly.

16. Registrar's power to require information concerning birth to be given

- (1) Where after the expiration of twenty-one days from the date of birth of any child information of the particulars required to be registered concerning the birth of that child has not been given to the registrar in accordance with section 14 of this Act, the registrar for the registration district in which the child was born may serve a notice in the prescribed form on any perso

n who is a qualified informant in relation to the birth requiring him-

(a) to attend personally at the registration office for the registration district before such date (being not less than eight days nor more than fifteen days after the date of service of the notice) as may be specified in the notice;

(b) to give information to the best of that person's knowledge and belief of the particulars required to be registered concerning the birth; and

(c) to sign the register in the presence of the registrar.

(2) If any person on whom a notice has been served in pursuance of the foregoing subsection fails to comply with the notice before the date specified therein the registrar may serve on that person a second notice in the prescribed form requiring him to attend personally as aforesaid within eight days from the date of service of the second notice.

4) 미국

가) 캘리포니아 주(州)

캘리포니아 주에서 아동이 출생한 경우, 10일 내에 의료기관 등이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지역 출생·사망 등록담당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병원이나 주에서 허가받은 출산센터에서 출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의사, 허가받은 조산사, 아동의 출생 당시 함께 있었던 자가 출생증명서에 서명하여 등록 담당관에게 등록할 책임이 있다. 이들이 서명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병원의 혹은 출산센터의 대표자가 출생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지역 신분등록 담당관이 진다. 병원 밖에서 혹은 주에서 허가받은 출산센터 외에서 이루어진 출생의 경우에는 아동의 출생 시 분만에 참석한 의사, 부재 시에는 전문적인 자격증을 지니고 있는 조산사, 또는 부모 중 하나가 출생증명서를 기재할 책임이 있으며, 지역 내 신분등록 담당관에게 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5) Registration of Births, Deaths and Marriages Act 1965(1966. 1. 1. 시행),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65/49>, 최종검색일: 2014. 11. 25.

II. 출생등록의무자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 49

<p>보건·안전법³⁶⁾</p> <p>Division 102 인구 보건 통계</p> <p>제3장 출생의 등록</p> <p>CAL. HSC. CODE §102400</p> <p>모든 출생 아들은 해당 지역(주)의 출생·사망 등록담당관에게 출생 후 10일 안에 등록되어야 한다.</p> <p>CAL. HSC. CODE §102405</p> <p>출생의 과정에 참석한 내·외과 의사, 법적으로 허가된 조산사, 출산과정에 참여한 자가 §1204의 세부조항 중 네 번째 단락에 의거하며, 만약 내·외과 의사, 허가받은 조산사, 출산에 참여한 자가 출생기록부에 서명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병원의 혹은 출산센터의 대표하는 자가 정한 양식에 출산에 참여했던 외과의사 혹은 내과의사, 허가받은 조산사, 실질적인 출산 참여자의 입회 없이도 출생기록부가 작성되어 질 수 있다. 만약 이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역 내 신분등록 담당관이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102400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 내에 등록을 해야 한다.</p> <p>CAL. HSC. CODE §102415</p> <p>병원 밖에서 혹은 주에서 허가받은 출산센터 외에서 생긴 출생은 §1204 세부조항 (b)에서 정의되어진 것과 같이, 아동의 출생 시 분만에 참석한 내과의 혹은 내과의의 부재 시, 전문적인 자격증을 지니고 있는 조산사, 혹은 부모 중 하나가 출생기록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책임을 가지며, 확실한 서명과 지역 내 신분등록 담당관에게 그 증명서를 등록하는 책임을 진다.</p> <p>CAL. HSC. CODE §102450</p> <p>(a) 모든 출생에 관한 등록은 §102400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 내 출생등록 담당관에게 제출되며, 병원의 행정관리자 혹은 개인을 대표하는 이가 §1024445에 부합되는 의료, 건강에 대한 작성 완료된 보고서를 제출한다. 병원 외부에서 출생하게 된 아동의 경우에는 지역 내 기록관이 해당하는 출생에 대한 등록이 된 증명서를 §102415에 의해 부합하는 사람이 제출하는 것을 받았을 때에 완성된다.</p>
<p>Division 102: VITAL RECORDS AND HEALTH STATISTICS</p> <p>Chapter 3: LIVE BIRTH REGISTRATION</p> <p>Article 1: Duty of Registering Live Birth</p> <p>CAL. HSC. CODE § 102400</p> <p>Each live birth shall be registered with the local registrar of births and deaths for the district in which the birth occurred within 10 days following the date of the event.</p> <p>CAL. HSC. CODE § 102405</p> <p>For live births that occur in a hospital, or a state-licensed alternative birth center, as defined in paragraph (4) of subdivision (b) of Section 1204, the administrator of the hospital or center or a representative designated by the administrator in writing may sign the birth certificate certifying the fact of birth instead of the attending physician and surgeon, certified nurse midwife, or principal attendant if the physician and surgeon, certified nurse midwife, or principal attendant is not available to sign the certificate; and shall be responsible for registering the certificate with the local registrar within the time specified in Section 102400.</p> <p>CAL. HSC. CODE § 102415</p>

For live births that occur outside of a hospital or outside of a state-licensed alternative birth center, as defined in paragraph (4) of subdivision (b) of Section 1204, the physician in attendance at the birth or, in the absence of a physician, the professionally licensed midwife in attendance at the birth or, in the absence of a physician or midwife, either one of the parents shall be responsible for entering the information on the certificate, securing the required signatures, and for registering the certificate with the local registrar.

CAL. HSC. CODE § 102450

(a) For each registration of live birth submitted to the local registrar pursuant to Section 102400, the hospital administrator, or the person's representative, shall submit a completed medical and health report that meets the requirements of Section 102445. For live births that occur outside of a hospital, the medical and health report shall be completed and submitted by the local registrar when the local registrar receives the certificate of live birth for registration from the person designated in Section 102415.

나) 뉴욕 주(州)

뉴욕 주에서 아동이 출생한 경우, 5일 내에 해당 출생은 지역 신분등록 담당관에 의해 등록되어야 한다. 의사 혹은 조산사가 출생에 관여한 경우에는 의사 또는 조산사가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생 시 의사 혹은 조산사가 없는 경우에, 출생아의 부, 모 또는 출생이 이루어진 장소의 가구주, 출산을 하는 공공의 혹은 개인의 센터의 책임자 혹은 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출생에 관한 사항을 신분등록 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중보건법³⁷⁾

Article 41. 인구 동태 통계
 제3장 출생의 등록
 N.Y. PBH. LAW §4130: 출생; 등록

2. 이 지역(주)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들은 출생 후 5일 안에 해당 지역의 신분등록 담당관에 의해 등록이 되어야 하며, 각각의 출생을 증명하는 출생증명서는 위원에 의해 규정된 것이어야 한다.
3. 의사 혹은 조산사가 출생에 관여한 경우에는 의사 또는 조산사가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출생 시 의사 혹은 조산사가 없는 경우에, 출생한 아동의 부, 모 또는 출생이 된 장소의 가구주, 출산을 하는 공공의 혹은 민간시설 기관의 책임자 혹은 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36) Health and Safety Code, <http://codes.lp.findlaw.com/cacode/HSC/1/d102/1/3>, 최종검색일: 2014. 11. 27.

<p>있는 사람들이 출생에 대한 날로 5일 안에 등록 담당관에게 출생에 관련된 사실과 출생 통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p> <p>5. 병원에서 출생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 병원의 책임자 혹은 책임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출생에 관한 데이터를 가지고 증명서를 준비하며, 증명서에 요구된 서명을 준수하며 그것을 정리해야 한다. 출산에 참여한 외과의 혹은 외과의 대리로 출산에 참여하게 된 사람은 출생의 과정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며, 출생 후 5일 내에 출산에 관련된 의료정보를 제공해야 한다.</p>
<p>Article 41 VITAL STATISTICS Title 3 REGISTRATION OF BIRTHS N.Y. PBH. LAW § 4130: Births: registration</p> <p>2. The birth of each child born alive in this state shall be registered within five days after the date of birth by filing with the registrar of the district in which the birth occurred a certificate of such birth, which certificate shall be upon the form prescribed therefore by the commissioner.</p> <p>3. In each case where a physician or nurse-midwife was in attendance upon the birth, it shall be the duty of such physician or nurse-midwife to file said certificate.</p> <p>4. In each case where there was no physician or nurse-midwife in attendance upon the birth, it shall be the duty of the father or mother of the child, the householder or owner of the premises where the birth occurred, or the director or person in charge of the public or private institution where the birth occurred, each in the order named, within five days after the date of such birth, to report to the local registrar the fact of such birth and to file said certificate.</p> <p>5. When a birth occurs in a hospital, the person in charge of such hospital or his designated representative shall obtain the personal data, prepare the certificate, secure the signatures required by the certificate and file it with the registrar. The physician in attendance or physician acting in his behalf shall certify to the facts of birth and provide the medical information required by the certificate within five days after the birth.</p>

다) 텍사스 주(州)

텍사스 주에서 아동이 출생한 경우, 5일 내에 해당 출생은 지역 신분등록 담당관에 의해 등록되어야 한다. 의사, 조산사 혹은 출생 시 출생과정에 참여를 한 조산사의 역할을 한 사람은 해당 지역의 신분등록 담당관에게 출생을 증명하여야 한다. 출생이 발생하는 곳이 병원 혹은 출산센터일 경우에, 병원의 관리자, 출산센터의 관리자 혹은 적합한 관리자의 대리인이 출생에 관한 보고를, 만약 의사, 조산사, 혹은 출생 당시에 출생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던

37) Public Health Law(1954. 6. 1. 시행), <http://codes.lp.findlaw.com/nycode/PBH>, 최종검색일: 2014. 11. 27.

52 ●●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조산사 역할을 하는 사람 없을 경우 혹은 출생이 병원이나 출산센터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아동의 부 혹은 모 또는 출생이 이루어진 장소의 가구주가 출생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보건·안전법 ³⁸⁾
<p>Title 3 인구 동태 통계 제192장 출생의 기록 TEX HS. CODE ANN. §192.001 : 요구되어지는 등록 이 지역(주)에서 태어나는 아동의 출생은 등록이 되어야 한다. TEX HS. CODE ANN. § 192.003 : 출생증명 혹은 출생보고 (a) 의사, 조산사 또는 출생 시 출생과정에 참여한 조산사의 역할을 한 사람은 해당 지역의 등록 담당관에게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출생이 이루어진 곳이 병원 혹은 출산센터일 경우에, 병원의 관리자, 출산센터의 관리자 혹은 적합한 관리자의 대리인이 (a)에서 명시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c) 만약 의사, 조산사, 또는 출생 당시에 출생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던 조산사 역할을 하는 사람 없을 경우 혹은 출생이 병원이나 출산센터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역 내 등록 담당관에게 출생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부 혹은 모; 또는 (2) 출생이 이루어진 장소의 가구주, 집주인</p>
<p>Title 3 VITAL STATISTICS Chapter 192 BIRTH RECORDS Subchapter A GENERAL REGISTRATION PROVISIONS TEX HS. CODE ANN. § 192.001 : REGISTRATION REQUIRED The birth of each child born in this state shall be registered. TEX HS. CODE ANN. § 192.003 : BIRTH CERTIFICATE FILED OR BIRTH REPORTED (a) The physician, midwife, or person acting as a midwife in attendance at a birth shall file the birth certificate with the local registrar of the registration district in which the birth occurs. (b) If a birth occurs in a hospital or birthing center, the hospital administrator, the birthing center administrator, or a designee of the appropriate administrator may file the birth certificate in lieu of a person listed by Subsection (a). (c) If there is no physician, midwife, or person acting as a midwife in attendance at a birth and if the birth does not occur in a hospital or birthing center, the following in the order listed shall report the birth to the local registrar: (1) the father or mother of the child; or (2) the owner or householder of the premises where the birth occurs.</p>

38) HEALTH AND SAFETY CODE, <http://codes.lp.findlaw.com/txstatutes/HS/3/192>, 최종검색일: 2014. 11. 27.

라) 몬타나 주(州)

몬타나 주에서는 의료 기관에서 출산이 이루어진 경우, 출생증명서는 반드시 출산에 참여했던 의사, 혹은 의사가 지정한 대리인에 의해 작성, 제출되어야 한다.

보건·안전법 ³⁹⁾
제2장 출생 MONT CODE ANN § 50-15-221 : 출생등록 (2) 의료 기관에서 출산이 이루어진 경우, 출생증명서는 반드시 출산에 참여했던 의사, 혹은 의사가 지정한 대리인에 의해 작성, 제출되어야 한다. (3) 만약 의료 기관 안에서 혹은 가던 중에 출산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기관의 책임자 혹은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산된 아동에 관련된 기본 개인 정보를 득할 수 있으며, 증명서를 작성 하고, 해당 아동의 태어난 장소, 시간, 날짜에 관해서 증명을 하게 된다. 출생증명은 직접 서명 혹은 허가된 기계전산처리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세부사항에 언급된 출생에 관련된 사람은 출생증명서를 (1)에서 명시하는 대로 제출한다. 외과의 혹은 아동의 출생과정에 참여하게 된 사람은 출생이 이루어지고 나서 72시간 내에 필요한 의료정보를 제공한다.
Part 2: Birth MONT CODE ANN § 50-15-221 : Birth registration (2) If a birth occurs in a health care facility, the birth certificate must be completed and filed by the attending physician or the physician’s designee. (3) If a birth occurs in or en route to a health care facility, the person in charge of the facility or the person’s authorized designee shall obtain the personal data concerning the newborn child, prepare the certificate, and certify that the child was born alive at the place, at the time, and on the date stated. Certification may be by signature or by an approved electronic process. The person referenced in this subsection shall file the certificate as directed in subsection (1). The physician or other person in attendance at the birth shall provide the medical information required by the certificate within 72 hours after the birth.

마) 조지아 주(州)

조지아 주에서 아동이 출생한 경우, 5일 내에 해당 출생은 의료기관 등이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통계처(the State Office of Vital Records)에 제출하여야 한다.

39) HEALTH AND SAFETY, <http://codes.lp.findlaw.com/mcode/50/15/2/50-15-221/>, 최종검색일: 2014. 11. 27.
 40) HEALTH, <http://www.lexisnexis.com/hottopics/gacode/Default.asp>, 최종검색일: 2014. 11. 27.

보건법 ⁴⁰⁾
<p>제10장 인구동태 통계 기록 31-10-9. 출생의 등록 (a) 본 지역(주)에서 발생하는 각각의 출생은 아동의 탄생 후 5일 이내에 주 법률과 지역의 규율에 따라 작성되어 통계처에 제출되어야 한다. (b) 출산을 위한 기관에서 또는 그곳에 가는 도중에 출산이 이루어지면, 기관이나 그 사람의 지정 대리인의 담당자가 개인정보를 얻어 출생증명서를 작성해야 하며, 서명에 의하거나 통계처에서 구축 또는 승인한 전자적 프로세스에 의하여 아동이 기재된 출생지와 시간에 살아서 출생하였음을 증명하고 출생증명서를 통계처에 제출한다. 의사 혹은 출산에 참여한 누군가는 증명서에서 요구하는 의료정보를 출산이 이루어진 후 72시간 내에 제공해야 한다.</p>
<p>CHAPTER 10. VITAL RECORDS 31-10-9. Registration of births (a) A certificate of birth for each live birth which occurs in this state shall be filed with the State Office of Vital Records within five days after such birth and filed in accordance with this Code section and regulations of the department. (b) When a birth occurs in an institution or en route thereto, the person in charge of such institution or that person's designated representative shall obtain the personal data, prepare the birth certificate, certify, either by signature or by an electronic process established or approved by the State Office of Vital Records, that the child was born alive at the place and time and on the date stated and file the certificate with the State Office of Vital Records. The physician or other person in attendance shall provide the medical information required by the certificate within 72 hours after the birth occurs.</p>

바) 코네티컷 주(州)

코네티컷 주에서 아동이 출생한 경우, 늦어도 출생으로부터 10일까지 출생이 이루어진 도시의 인구 통계처의 등록 담당관에게 출생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해당 출생증명서는 수동 또는 전자 시스템에 의해 적절하게 제출되는 경우에 등록된다. 출생에 대한 정보는 출산 당시 참여한 의사 혹은 관계자 혹은 산전 관리를 제공한 의사, 병원 혹은 관계자가 출산 후 72시간까지 제출해야 하며, 출산이 병원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의사나 조산사에 의해,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출산이 이루어진 직후에 출생 증명서가 작성·제출되어야 한다.

인구 동태 통계법 ⁴¹⁾
<p>Sec. 7-48. 출생 증명:</p> <p>(a) 이 주(州)에서 이루어진 출생은 늦어도 출생으로부터 10일까지 출생이 이루어진 지역의 인구 통계처의 등록 담당관에게 출생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이는 수동 또는 전자 시스템에 의해 적절하게 제출되는 경우 등록된다.</p> <p>(b) 출산 당시 참여한 의사 혹은 관계자 혹은 산전 관리를 제공한 의사, 병원 혹은 관계자는 필요한 의료정보를 늦어도 출산 후 72시간 내에 제공해야 한다.</p> <p>(c) 출산이 병원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 참석한 의사나 조산사에 의해,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출산이 이루어진 직후에 출생증명서가 작성 제출되어야 한다.</p>
<p>Sec. 7-48. Birth certificates:</p> <p>(a) Not later than ten days after each live birth which occurs in this state, a birth certificate shall be filed with the registrar of vital statistics in the town in which the birth occurred and the certificate shall be registered if properly filed, by manual or electronic systems as prescribed by the commissioner.</p> <p>(b) The physician or other person in attendance, and the physician, institution or other person providing prenatal care, shall provide the medical information required by the certificate not later than seventy-two hours after the birth.</p> <p>(c) When a birth occurs outside an institution, the certificate shall be prepared and filed by the physician or midwife in attendance at or immediately after the birth or, in the absence of such a person, by the father or mother.</p>

5) 캐나다

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州)

의사 혹은 조산사 등 출산에 관여한 사람(불가한 경우 병원의 관리자나 운영 책임자)은 반드시 출생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출생을 인구 동태 통계처에 통보(Notice of births)하여야 한다. 그리고 출생일 이후 30일 이내에 출생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부모 등이 보고(Reporting of births)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구 동태 통계법 ⁴²⁾
<p>2 출생통보에 관한 법적 의무</p> <p>(1) 의사, 전문 간호사, 혹은 조산사와 같은 출생에 관여한 사람은 반드시 출생통보를 하여야 한다.</p>

41) REGISTRARS OF VITAL STATISTICS, <http://www.cga.ct.gov/2011/pub/chap093.htm#Sec7-48.htm>, 최종검색일: 2014. 11. 27.

<p>(2) 의사, 전문 간호사, 조산사 등이 출생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간호사 혹은 그 현장에 함께 있는 사람이 출생통보를 하여야 한다.</p> <p>(3) 출생이 병원법(Hospital Act) 제1조 또는 제5조에서 규정하는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그 병원의 관리자나 운영책임자가 출생의 통보가 위 제(1)항과 제(2)항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출생의 통보는 그 병원의 관리자나 운영책임자가 하여야 한다.</p> <p>(4) 출생의 통보가 위 제(3)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p> <p>(5) 본 조에 의한 출생의 통보는 인구 동태 통계처장(registrar general)⁴³에 의해 요구되는 서식에 작성되어 출생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인구 동태 통계처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p> <p>3 출생의 보고</p> <p>(1)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출생이 이루어진 후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람은 인구동태 통계처장이 요구하는 정보를 기재한 출생진술서를 인구 동태 통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a) 아동의 모와 부에 의해</p> <p>(b) 아동의 부가 불가능하거나, 사망하였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에 의해서</p> <p>(c) 아동의 모가 불가능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부에 의해서</p> <p>(d) 부모 둘 다 불가능하고 사망하였다면, 또는 모가 불가능하고, 사망한 경우와 모에 의해 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의 부모를 대신 할 수 있는 자에 의해서</p> <p>(1.1) 아동이 인공수정(보조생식, assisted reproduction)에 의하여 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람이 제(1)항 소정의 출생진술서를 작성하여 아동의 출생 후 30일 이내에 인구동태 통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a) 아동의 부모 중 일방에 의해서</p> <p>(b) 아동의 부모 중 일방이 불가능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p> <p>(i) 아동의 부모 중 다른 일방</p> <p>(ii) 아동이 다른 일방 외에 부모가 있다면 아동의 다른 부모</p> <p>(c) 아동이 부모 중 다른 일방이 없고 (b)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의 부모 중 일방에 의해서;</p> <p>(d) 가능하거나 생존한 부모가 없다면 아동의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자에 의해서</p>
<p>2 Duty to give notices of births</p> <p>(1) Each medical practitioner, nurse practitioner or midwife who attends at a birth must give notice of the birth.</p> <p>(2) If no medical practitioner, nurse practitioner or midwife attends at a birth, the nurse or other person who attends must give notice of the birth.</p> <p>(3) If a birth takes place at a hospital as defined in section 1 or 5 of the Hospital Act and the persons having control or management of the hospital are satisfied that notice of the birth will not be given in a timely manner as required under subsections (1) and (2), notice of the birth must be given by or on behalf of the persons having control or management of the hospital.</p> <p>(4) If notice of a birth is given under subsection (3), subsections (1) and (2) do not apply to the</p>

birth.

(5) A notice under this section, in the form required by the registrar general, must be delivered to the registrar general within 48 hours after the date of the birth.

Reporting of birth

3(1) Within 30 days after the birth of a child in British Columbia, a statement in the form and containing the information the registrar general requires respecting the birth must be completed and delivered to the registrar general as follows:

(a) by the mother and the father of the child;

(b) by the child's mother, if the father is incapable, deceased or unacknowledged by or unknown to the mother;

(c) by the child's father, if the mother is incapable or deceased;

(d) if neither parent is capable or living, or if the mother is incapable or deceased and the father is unacknowledged by or unknown to her, by the person standing in the place of the parents of the child.

(1.1) Despite subsection (1), if a child is born as a result of assisted reproduction, the statement referred to in that subsection must be completed and delivered to the registrar general within 30 days after the birth of the child in British Columbia as follows:

(a) by the parents of the child;

(b) if a parent is incapable or deceased, by

(i) the other parent of the child, or

(ii) if the child has more than one other parent, the child's other parents;

(c) if the child has one parent only and paragraph (b) does not apply, by the parent of the child;

(d) if no parent is capable or living, by the person standing in the place of the parents of the child.

나) 앨버타 주(州)

출생에 참여한 의사는 출생의 통보를 완료하고 등록 담당관에게 이를 전달하여야 한다. 만약 의사가 출산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참석 간호사 또는 참석한 다른 사람은 출생 통보를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등록 기관에 이를 제

42) VITAL STATISTICS ACT, http://www.bclaws.ca/Recon/document/ID/freeside/00_96479_01, 최종 검색일: 2014. 11. 27.

43) 동법 제1조 정의에는 등록업무담당 부처의 장관을 인구 동태 통계처의 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registrar general" means the registrar general of the Vital Statistics Agency,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31 (2)(http://www.bclaws.ca/Recon/document/ID/freeside/00_96479_01)

58 ●●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공하여야한다.

인구 동태 통계법 ⁴⁴⁾
<p>출생</p> <p>2 앨버타(Alberta) 주에서 이루어진 모든 아동의 출생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등록되어야 한다.</p> <p>출생 등록 서류</p> <p>3(1) 출생한 날로부터 10일 내, 혹은 출생이 병원에서 이루어졌다면 모가 병원을 떠나기 전에 출생 등록 서류를 작성하여 하고 출생을 증명할 증거를 첨부하여 규정에 따라 등록 담당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p> <p>(2) 출생아가 한 명 이상인 경우, 각 아동에 대한 각각의 출생 등록 서류를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각각의 출생 등록 서류에는 출생 아동의 수와 순서가 기재되어야 한다.</p> <p>(3) 출생 등록 서류에는 아동의 부모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p> <p>출생의 통보</p> <p>4(1) 출생에 참여한 의사는 출생통보를 작성하여 등록 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2) 의사가 출생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출생에 관여한 간호사나 출생에 관여한 그 밖의 사람이 출생통보서를 작성하여 등록 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p> <p>(3) 출생이 병원법(Hospitals Act) 제1조에서 규정하는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그 병원의 관리자가 출생의 통보가 위 제(1)항과 제(2)항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경우에는, 그 병원의 관리자가 출생통보서를 작성하여 등록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4) 출생의 통보가 위 제(3)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p> <p>(5) 본 조항에 의한 통보는 출생 후 10일 이내에 등록 담당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p> <p>(6) 본 조에 의하여 출생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한 사람 이상에게 있고, 이들 중 어느 한명에 의하여 의무가 이행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그 이외의 자는 이 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p> <p>등록</p> <p>5 만약 출생 후 1년이 경과하여 신분등록 담당관이 출생등록서류를 받았지만 출생의 통보와 출생에 관한 증거가 진실하고 요건을 충족했다면 신분등록 담당관은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p>
<p>Birth in Alberta</p> <p>2 The birth of every child born in Alberta must be registered as provided in this Act.</p> <p>Birth registration document</p> <p>3(1) Within 10 days after the date of birth of a child, or before the birth mother leaves the hospital if the birth occurred in a hospital, whichever is earlier, a birth registration document must be completed and delivered to the Registrar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and accompanied with any evidence that may be prescribed respecting the birth.</p> <p>(2) If the pregnancy results in the birth of more than one child, a separate birth registration document for each child must be completed and delivered as provided in subsection (1), and each</p>

h birth registration document must state the number of children born of the pregnancy and their order of birth.

(3) The birth registration document must contain the information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concerning the parents of the child.

Notice of birth

4(1) Each physician who attends at a birth shall complete a notice of birth and deliver it to the Registrar.

(2) If no physician attends at a birth, a nurse or other person who attends shall complete a notice of birth and deliver it to the Registrar.

(3) If a birth takes place in a hospital as defined in section 1 of the Hospitals Act and the hospital administrator is satisfied that a notice of birth will not be completed and delivered under subsection (1) or (2) in a timely manner, the notice must be completed and delivered to the Registrar by or on behalf of the hospital administrator.

(4) If the notice of birth is completed and delivered under subsection (3), subsections (1) and (2) do not apply.

(5) A notice under this section must be delivered to the Registrar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the birth.

(6) When more than one person is required to complete and deliver a notice of birth under this section and the duty is carried out by any one of those persons, the other or others who have not carried out the duty are not in contravention of this section.

Registration

5 If, within one year after the date of a birth, the Registrar receives a birth registration document, a notice of birth and any other prescribed evidence respecting the birth, the Registrar, if satisfied as to the truth and sufficiency of the documents or evidence, shall register the birth.

나. 부모와 의료기관 등에 모두 출생신고의무가 있는 유형

1) 독일

친권자인 부 또는 모, 이들이 없는 경우에는 출산현장에 있었거나 스스로 출산에 대해 알게 된 자에게 출생신고의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병원이나 그 밖의 출산을 보조하는 시설에서 출산이 이루어진 경우, 시설 책임자는 출생신고 의무가 있다. 정신질환자가 입원하는 시설, 청소년 지원 시설 및 자유형, 소년구금처분 또는 자유를 박탈하는 감화 및 보호처분이 이루어지는 공공시설에서 이루어진 출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시설의 서면 신고의무는 앞서

44) VITAL STATISTICS ACT, www.servicealberta.gov.ab.ca, 최종검색일: 2014. 11. 27.

60 ●●●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언급한 출생신고 권한이 있는 자가 그 권한을 행사한 때에도 성립하며, 이 때 시간적으로 앞선 신고에 근거하여 출생은 등록된다. 아동이 태어난 후 1주일 이내에 출생지를 관할하는 신분등록사무소에서 등록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분등록법 ⁴⁵⁾
<p>제5장 출생</p> <p>제1절 신고 및 기재</p> <p>제18조 신고</p> <p>(1) 출생 신고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신분등록사무소(Standesamt)에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9조 제1문에 규정된 자가 구두로 또는 2. 제20조 제1문과 제2문에 규정된 시설이 서면으로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자녀가 사산된 경우, 늦어도 출생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p>제19조 사람이 하는 출생신고⁴⁶⁾</p> <p>신고의무자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친권자인 부 또는 모 2. 출산현장에 있었거나 스스로 출산에 대해 알게 된 자이다. <p>2호의 신고의무는, 친권자인 부모가 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만 발생한다.</p> <p>제20조 시설이 하는 출생신고⁴⁷⁾</p> <p>병원이나 그 밖의 출산을 보조하는 시설에서 출산이 이루어진 경우, 시설 책임자는 출생신고의무가 있다. 정신질환자가 입원하는 시설, 청소년 지원 시설 및 자유형, 소년구금처분 또는 자유를 박탈하는 감화 및 보호처분이 이루어지는 공공시설에서 이루어진 출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제19조에서 규정된 자의 신고권한 및 그가 갖는, 제1문 또는 제2문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할 수 없는 정보제공의무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p>
<p>Kapitel 5 Geburt</p> <p>Abschnitt 1 Anzeige und Beurkundung</p> <p>§ 18 Anzeige</p> <p>(1) Die Geburt eines Kindes muss dem Standesamt, in dessen Zuständigkeitsbereich es geboren is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von den in § 19 Satz 1 genannten Personen mündlich oder 2. von den in § 20 Satz 1 und 2 genannten Einrichtungen schriftlich <p>binnen einer Woche angezeigt werden. Ist ein Kind tot geboren, so muss die Anzeige spätestens am dritten auf die Geburt folgenden Werktag erstattet werden.</p> <p>§ 19 Anzeige durch Personen</p> <p>Zur Anzeige sind verpflichte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jeder Elternteil des Kindes, wenn er sorgeberechtigt ist, 2. jede andere Person, die bei der Geburt zugegen war oder von der Geburt aus eigenem Wissen unterrichtet ist. <p>Eine Anzeigepflicht nach Nummer 2 besteht nur, wenn die sorgeberechtigten Eltern an der Anzeige gehindert sind.</p>

II. 출생등록의무자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 61

<p>§ 20 Anzeige durch Einrichtungen</p> <p>Bei Geburten in Krankenhäusern und sonstigen Einrichtungen, in denen Geburtshilfe geleistet wird, ist der Träger der Einrichtung zur Anzeige verpflichtet. Das Gleiche gilt für Geburten in Einrichtungen, die der Unterbringung psychisch Kranker dienen, in Einrichtungen der Träger der Jugendhilfe sowie in Anstalten, in denen eine Freiheitsstrafe, ein Jugendarrest oder eine freiheitsentziehende Maßregel der Besserung und Sicherung vollzogen wird. Die Anzeigeberechtigung der in § 19 genannten Personen und ihre Auskunftspflicht zu Angaben, die der nach Satz 1 oder 2 zur Anzeige Verpflichtete nicht machen kann, bleiben hiervon unberührt.</p>
<p>신분등록법 시행규칙⁴⁸⁾</p> <p>19. 개인신분법 제19조 사람이 하는 출생신고</p> <p>19.1 신고의무</p> <p>19.1.1 친권자인 부(父)가 정상상 자녀의 생물학적 부가 될 수 없거나 출산 현장에 없었더라도, 신고의무자이다.</p> <p>19.1.2 신고의무의 순서는 신고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p> <p>19.1.3 어떤 여성이 자녀를 출산하였다는 것을 자기 자신의 지각(知覺)에 근거하여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 출산에 대해 알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신고자 스스로 출산에 대해 알게 되었는지 신고자에게 질문해야 한다.</p> <p>19.1.4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하는 출생신고는, 다른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만, 수리한다.</p> <p>20 개인신분법 제20조 시설이 하는 출생신고</p> <p>20.1 시설의 신고의무</p> <p>시설의 서면 신고의무는, 출생신고 권한이 있는 자가 법 제19조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한 때에도 성립한다; 이 경우 시간적으로 앞선 신고에 근거하여 기재한다.</p> <p>20.2 출산을 보조하는 시설</p> <p>주로 사단법인에 의해 운영되는 조산사가 그 외의 출산을 보조하는 시설에 속한다. 누가 병원이나 출산을 보조하는 시설의 책임자인지는 그 조직형태에 따라 정한다. 출산을 보조하는 시설이 법인이라면, 그 법인 소속원 중 누구에게 신고할 의무가 이전되는지는 조직고권(Organisationshoheit)에 속한다.</p>
<p>19 Zu § 19 PStG Anzeige durch Personen</p> <p>19.1 Anzeigepflicht</p> <p>19.1.1 Die Anzeigepflicht des sorgeberechtigten Vaters besteht auch dann, wenn er den Umständen nach nicht der leibliche Vater sein kann oder wenn er bei der Geburt nicht zugegen war.</p> <p>19.1.2 Die Reihenfolge der Anzeigepflichtigen berührt die Berechtigung zur Anzeige nicht.</p> <p>19.1.3 Aus eigenem Wissen unterrichtet ist eine Person, die auf Grund eigener Wahrnehmungen</p>

45) Personenstandsgesetz(2007. 2. 19. 시행), <http://www.gesetze-im-internet.de/pstg/BJNR012210007.html>, 최종검색일: 2014. 11. 27.

4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대응.

4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대응.

erkennen kann, dass eine bestimmte Frau ein Kind geboren hat. Die anzeigende Person soll befragt werden, ob sie aus eigenem Wissen Kenntnis von der Geburt erlangt hat.

19.1.4 Von Minderjährigen unter 14 Jahren soll eine Geburtsanzeige nur entgegengenommen werden, wenn eine Anzeige von einem anderen Anzeigepflichtigen nicht erreicht werden kann.

20 Zu § 20 PStG Anzeige durch Einrichtungen

20.1 Anzeigepflicht der Einrichtung

Die schriftliche Anzeigepflicht der Einrichtung besteht auch dann, wenn ein Anzeigeberechtigter von seinem Recht zur Anzeige der Geburt nach § 19 des Gesetzes Gebrauch gemacht hat: in diesem Fall erfolgt die Beurkundung auf Grund der zeitlich früheren Anzeige.

20.2 Einrichtungen, in denen Geburtshilfe geleistet wird

Zu den sonstigen Einrichtungen, in denen Geburtshilfe geleistet wird, gehören insbesondere Geburtshäuser, die überwiegend als eingetragene Vereine geführt werden. Wer Träger einer Einrichtung, in der Geburtshilfe geleistet wird, oder eines Krankenhauses ist, richtet sich nach dessen Organisationsform. Handelt es sich bei der Einrichtung, in der Geburtshilfe geleistet worden ist, um eine juristische Person, liegt es in ihrer Organisationshoheit, welcher der ihr angehörenden Personen die Erfüllung der Anzeigepflicht übertragen wird.

다. 의료기관에서 출생등록이 이루어지는 유형

1) 프랑스

프랑스 민법은 아동이 출생한 후 3일 내에 관할 신분등록 담당관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자녀의 출생신고는 부(父), 부의 부존재 시 의사, 외과의, 조산사, 의료기관 관계자 또는 출산을 보조한 자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실무에서는 출생등록을 위해 몇몇 공립병원에는 신분사무 공무원이 산부인과에 상주하고 있다.⁴⁸⁾ 그리하여 비록 모든 출생신고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출생신고가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다.

48)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Personenstandsgesetz(2010. 3. 29. 시행), http://www.personenstandsrecht.de/SharedDocs/Downloads/PERS/Themen/Rechtsquellen/allgVV.pdf?__blob=publicationFile, 최종검색일: 2014. 11. 27.

49) <http://vosdroits.service-public.fr/particuliers/F961.xhtml>, 최종검색일: 2014. 11. 27.

50) Code civil, http://www.legifrance.gouv.fr/telecharger_pdf.do?cidTexte=LEGITEXT000006070721, 최종검색일: 2014. 11. 27.

II. 출생등록의무자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 63

민법 ⁵⁰⁾
<p>제2장 : 출생증명서</p> <p>제1절 : 출생신고</p> <p>제55조</p> <p>출생 후 3일의 기간 내에 관할 신분등록 담당관에게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p> <p>법정 기간(민법 제55조의 제1항이 정한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등록 담당관은 출생자의 출생지의 관할법원에 의한 판결에 근거해서만 출생사실을 기재할 수 있다. 만약 출생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이에 해당한다. 자녀의 성(姓)은 민법 제311조의21 및 제311조의23의 규정의 적용에 의해 결정된다.</p> <p>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출산 후 15일의 기간 내에 외교관 또는 영사에게 이를 신고한다. 그러나 당해 기간은 특정 영사관할 내에서는 데크레(령)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p> <p>제56조</p> <p>자녀의 출생신고는 부(父), 부의 부존재시 의사, 외과의, 조산사, 의료기관 관계자 또는 출산을 보조한 자에 의한다 ; 그리고 모가 자신의 주소지 외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당해 출산장소의 거주인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p> <p>출생증명서는 그 즉시 작성된다.</p>
<p>Chapitre II : Des actes de naissance.</p> <p>Section 1 : Des déclarations de naissance.</p> <p>Article 55</p> <p>Les déclarations de naissance sont faites dans les trois jours de l'accouchement, à l'officier de l'état civil du lieu.</p> <p>Lorsqu'une naissance n'a pas été déclarée dans le délai légal, l'officier de l'état civil ne peut la relater sur ses registres qu'en vertu d'un jugement rendu par le tribunal de 'arrondissement dans lequel est né l'enfant, et mention sommaire en est faite en marge à la date de la naissance. Si le lieu de la naissance est inconnu, le tribunal compétent est celui du domicile du requérant. Le nom de l'enfant est déterminé en application des règles énoncées aux articles 311-21 et 311-23.</p> <p>En pays étranger, les déclarations aux agents diplomatiques ou consulaires sont faites dans les quinze jours de l'accouchement. Toutefois, ce délai peut être prolongé par décret dans certaines circonscriptions consulaires.</p> <p>Article 56</p> <p>La naissance de l'enfant sera déclarée par le père, ou, à défaut du père, par les docteurs en médecine ou en chirurgie, sages-femmes, officiers de santé ou autres personnes qui auront assisté à l'accouchement ; et lorsque la mère sera accouchée hors de son domicile, par la personne chez qui elle sera accouchée.</p> <p>L'acte de naissance sera rédigé immédiatement.</p>

2)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출생·사망등록법에 의하면, 부와 모, 그리고 아동의 출생에 사

64 ●●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실을 알고 있는 거주지의 사용자에게 출생등록에 대한 책임이 있다. 출생등록은 출생 후 14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출생신고센터가 있는 병원⁵¹⁾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서, 그 외에서의 출생은 출생·사망 등록 센터에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⁵²⁾

출생·사망등록법 ⁵³⁾
9. 모든 출생의 경우, 아동의 부와 모, 그리고 아동의 출생에 현재 책임지고 있는 각각의 사람, 만약 출생이 선박 혹은 그에 해당하는 곳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선박의 책임자, 혹은 선박에 책임을 가진 이가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이 발생한 해당 지역의 등록기관에, 규정된 양식에서 요구하는 출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명함으로써 정확한 정보전달을 증명해야 한다.
9. In the case of every child born alive, the father and mother of the child, and the occupier of the house in which to his knowledge the child is born, and each person present at the birth and the person having charge of the child and, if the birth occurs in a ship or vessel, the master or other person having charge of the ship or vessel shall, within 14 days after the birth has taken place, furnish to any deputy registrar of the local registration area within which the birth has occurred, the particulars of the same in the prescribed form, and shall certify to the correctness of such information by signing his name in the prescribed place on the form.

라.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출생신고의무가 있는 유형

1) 중국

아동이 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호적등기기관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신고에 대한 의무는 호주, 친척, 부양인, 이웃의 순으로 있다.

51) <http://www.ica.gov.sg/page.aspx?pageid=144>; Gleneagles Hospital, KK Women's & Children's Hospital, Mount Alvernia Hospital, Mount Elizabeth Hospita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Raffles Hospital, Parkway East Hospital, Singapore General Hospital, Thomson Medical Centre, 최종검색일: 2014. 11. 27.

52) 싱가포르에서 출생등록을 담당하는 부처는 출입국관리 및 검문소(ICA, Immigration and Checkpoint Authority)이며, 모든 병원이 ICA에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있다(<http://www.ica.gov.sg/page.aspx?pageid=144>).

53) REGISTRATION OF BIRTHS AND DEATHS ACT(1987. 3. 30. 시행), <http://statutes.agc.gov.sg/aol/search/display/view.w3p?page=0;query=DocId%3A%22d148dedc-a872-45e4-87af-1aa9ed362c76%22%20Status%3Ainforce%20Depth%3A0;rec=0>, 최종검색일: 2014. 11. 27.

중화인민공화국 호적등기 조례 ⁵⁴⁾
제7조 아동이 태어난 후 1개월 이내, 호주, 친척, 부양인 혹은 이웃이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호적등기기관에 출생신고를 한다. 기아의 경우, 양육인 혹은 보호기관에서 호적등록기관에 출생신고를 한다.
第七條 嬰兒出生後一個月以內，由戶主、親屬、撫養人或者鄰居向嬰兒常住地戶口登記機關申報出生登記。 棄嬰，由收養人或者育嬰機關向戶口登記機關申報出生登記。

2) 일본

아동이 출생한 경우, 14일 이내(국외에서 출생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고, 자(子)의 출생 전에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모만이 신고의무자가 된다. 부모가 모두 신고를 할 수 없을 경우, 동거자가 신고를 해야 한다. 동거자도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에 입회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者)가 신고를 해야 한다.

호적법 ⁵⁵⁾
제2절 출생 제49조 출생의 신고는 14일 이내(국외에서 출생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一 자의 성별 및 혼인 내의 자 및 혼인 외의 자의 구별 二 출생 연월일시 및 장소 三 부모의 성명 및 본적,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四 기타 법무성령(法務省令)으로 정한 사항 ③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者)가 출산에 입회한 경우에는 의사, 조산사, 기타의 자(者)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한 사람이 법무성령(法務省令)·후생노동성령(厚生労働省令)으로 정한 바에 의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적출자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고, 자(子)의 출생 전에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 혼인 외의 자(子)의 출생의 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해야 할 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54) 中華人民共和國戶口登記條例(1958. 1. 9. 시행), http://www.law-lib.com/law/law_view.asp?id=1338, 최종검색일: 2014. 11. 27.

신고하여야 한다.

제1 동거자

제2 출산에 입회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者)

제54조 민법 제773조⁵⁶⁾의 규정에 의해 재판소가 부(父)를 정해야 할 때에는,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신고서는父가 미정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55조 항해 중에 출생한 때에는 선장은 24시간 이내에 제49조 제2항에 기재된 사항을 선박일지에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을 한 후에, 선박이 일본의 도착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출생에 관한 항해일지의 등본을 기타의 시읍면의 장(市町村長)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도착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출생에 관한 항해일지의 등본을 그 국가에 주재하는 일본의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 송부하고,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 없이 외무대신을 경유하여 이것을 본적지의 시읍면의 장(市町村長)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6조 병원, 형사시설 기타의 공공장소에서 출생한 경우에 부모가 함께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공공장소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第二節 出生

第四十九條 出生の届出は、十四日以内（國外で出生があつたときは、三箇月以内）に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届書には、次の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子の男女の別及び嫡出子又は嫡出でない子の別

二 出生の年月日時分及び場所

三 父母の氏名及び本籍、父又は母が外國人であるときは、その氏名及び國籍

四 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

○ 3 医師、助産師又はその他の者が出産に立ち會つた場合には、医師、助産師、その他の者の順序に従つてそのうちの一人が法務省令・厚生労働省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つて作成する出生証明書を届書に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やむを得ない事由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五十二條 嫡出子出生の届出は、父又は母がこれをし、子の出生前に父母が離婚をした場合には、母が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嫡出でない子の出生の届出は、母が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前二項の規定によつて届出をすべき者が届出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には、左の者は、その順序に従つて、届出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一 同居者

第二 出産に立ち會つた医師、助産師又はその他の者

○ 4 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つて届出をすべき者が届出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には、その者以外の法定代理人も、届出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五十四條 民法第七百七十三條の規定によつて裁判所が父を定むべきときは、出生の届出は、母が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は、届書に、父が未定である事由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第五十二條第三項及び第四項の規定は、前項の場合にこれを準用する。

第五十五條 航海中に出生があつたときは、船長は、二十四時間以内に、第四十九條第二項に掲げる事項を航海日誌に記載して、署名し、印をおさ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手續をした後に、船舶が日本の港に著いたときは、船長は、遲滞なく出生に関する航海日誌の謄本をその地の市町村長に送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船舶が外國の港に著いたときは、船長は、遲滞なく出生に関する航海日誌の謄本をその國に駐在する日本の大使、公使又は領事に送付し、大使、公使又は領事は、遲滞なく外務大臣を経由してこれを本籍地の市町村長に送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五十六條 病院、刑事施設その他の公設所で出生があつた場合に、父母が共に届出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公設所の長又は管理人が、届出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시사점 및 입법과제

가. 시사점

이상으로 출생등록 의무자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입법례가 주는 시사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관 등에서 출생사실의 통보가 이루어지는 유형

조사국가 중 우리나라와 유사한 중국, 일본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출생 등록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의료기관이 관여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차적으로 출생사실의 통보의무를 의료기관 등에 부과하도록 하여 출생사실이 등록되도록 하고 있는 입법례이다. 이러한 입법례가 취하고 있는 출생자동등록제도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55) 戶籍法(1947. 12. 22. 시행), http://law.e-gov.go.jp/cgi-bin/idxselect.cgi?IDX_OPT=1&H_NAME=%8c%cb%90%d0&H_NAME_YOMI=%82%a0&H_NO_GENGO=H&H_NO_YEAR=&H_NO_TYPE=2&H_NO_NO=&H_FILE_NAME=S22HO224&H_RYAKU=1&H_CTG=1&H_YOMI_GUN=1&H_CTG_GUN=1, 최종검색일: 2014. 11. 27.

56) 민법 제773조 (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 제73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혼한 여자가 출산한 경우에 전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자(子)의 부(父)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소가 이를 정한다.

가) 출생사실의 신속한 등록

의료기관에 의한 출생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그 통보기간을 상대적으로 매우 짧게 규정함으로써 출생사실이 즉시 등록 되도록 신속성을 꾀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7일(ACT 주, NSW 주), 뉴질랜드 5일이며, 영국은 출생시 병원과 당국 간의 전산망을 통하여 바로 출생사실이 보고되고 의료보장번호(NHS 번호)가 부여된다. 미국은 10일(캘리포니아 주, 코네티컷 주), 5일(뉴욕 주, 텍사스 주, 조지아 주), 캐나다는 48시간(브리티쉬 컬럼비아 주), 10일(알버타 주,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 모가 병원을 떠나기 전), 독일은 1주일로 되어 있다.

반면 부모만을 원칙적으로 출생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출생신고기간은 14일, 중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조사된 국가 중 가장 장기간인 1개월로 위의 의료기관에 의한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들에 비해 그 기간이 길다(아래<표II-1>참조).

<표II-1> 국가별 출생통보 및 출생신고 기간

국가	의료기관 등에 의한 출생사실의 통보	부모 등에 의한 출생신고
호주(ACT)	7일	6개월
호주(NSW)	7일	60일
호주(NT)	10일	60일
뉴질랜드	5일	2개월
영국 (잉글랜드·웨일즈)	출생 후 정보등록 및 의료보장(NHS)번호부여	42일
영국 (스코틀랜드)	출생 후 정보등록 및 의료보장(NHS)번호부여	21일
미국(캘리포니아)	10일	
미국(뉴욕)	5일	
미국(텍사스)	5일	
미국(몬타나)	3일	
미국(조지아)	72시간	5일
미국(코네티컷)	72시간	10일
캐나다(브리티쉬 컬럼비아)	48시간	30일
캐나다(앨버타)	10일/산모 퇴원전	

II. 출생등록의무자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 69

국가	의료기관 등에 의한 출생사실의 통보	부모 등에 의한 출생신고
독일	-	1주일(의료기관/부모)
프랑스	병원에서 퇴원 전 출생신고 가능	3일
싱가포르	병원에서 퇴원 전 출생신고 가능	14일
중국	-	1개월
일본	-	14일
한국	-	1개월

출생 후 미등록기간이 길수록 아동의 복리에는 반하게 된다. 출생사실의 통보에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하는 제도는 출생사실의 신속·정확한 등록에 매우 효율적이며, 각국의 입법례에서의 짧은 통보의무기간도 이와 같은 점을 보여준다.

나) 출생신고의 편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생사실의 통보가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출산 후 산모가 퇴원하기 전에 출산통보양식이 작성되어 의료기관을 통하여 제출·통보되기 때문에, 출생아의 부모는 출산 직후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다는 점에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의료기관에 의한 통보 후,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출생신고기간 부여

출생사실의 통보가 의료기관에 의해 이미 이루어지고 추후 부모에 의해 상세한 정보가 포함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국가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출생신고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의한 통보제를 채택한 국가들은 출생사실이 통보된 이후에,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기간을 두어 부모에게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6개월(ACT 주), 60일(NSW 주), 뉴질랜드 2개월, 영국은 42일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개월의 출생신고기간은 의료기관에 의하여 출생사실이 바로 통보되는 국가들의 입법례에 비해 출생사실의 미등록 기간이 상대

적으로 긴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는 여유로운 시간이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출생신고가 늦어져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는 산후 조리 문화를 가지고 있고, 한부모 가정의 경우 산모가 출생신고를 직접 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출생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출생사실을 등록하게 하는 의무를 부모에게만 지우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출생의 통보와 함께 추후 여유로운 신고기간을 두고 있는 국가들의 입법례가 주는 시사점에서 개선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라) 출생등록의 정확성 담보

출생사실을 의료기관이 통보하게 하는 것은 미등록, 신고 누락, 허위의 출생 신고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아동의 복리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또한 미등록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에 아동의 출생이 반드시 등록되어야 함을 명시하는 방식은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뉴질랜드의 경우 “뉴질랜드의 모든 출생은 통보되고 등록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뉴질랜드의 “모든” 출생아동은 등록되어야함을 명시하고 있고, 호주, 영국,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도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1년 10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현행 출생신고 제도를 출생자동등록제도로 전환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⁵⁷⁾ 미등록 아동의 인권이 문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출생등록 관련 법제에서 모든 출생 아동이 등록되고 신고되어야 함을 명시하는 규정의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 부모와 의료기관 등에 모두 출생신고의무가 있는 유형

영미법계 국가가 아닌 우리와 유사한 성문법체계를 가진 독일의 경우 출생 신고의무를 부모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특색이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부모 등 친권자를 출생신고의무자로 하면서,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에 관여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부모의 출생신

57) 송효진 외, 2013, 106~107쪽.

고의무와는 별도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만을 일차적 출생통보의무자로 하기 보다는 부모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의료기관의 부담과 저항을 줄이면서도 출생등록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조할 만하다.

3) 의료기관에서 출생등록이 이루어지는 유형

프랑스와 싱가포르의 경우는 출생등록 신고의무자를 부모 등으로만 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병원에 신분등록 담당관이 상주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전산망을 통해 병원에서의 출생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아시아권 국가로서 행정전산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실상 유엔이 요구하는 수준의 출생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병원에서의 출산과 행정전산시스템과의 연계가 가능한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와 도시국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사법에 있어서의 전산망 구축과 정보화는 이제 전 지구적인 현상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출생등록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적어도 높은 수준의 전산정보망 인프라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같은 아시아권 국가인 싱가포르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4)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출생신고 의무가 있는 유형

조사된 입법례들 가운데 우리나라와 같이 출생신고를 의료기관이 아닌 출생아의 부모 등에게만 맡겨놓은 국가가 같은 동북아시아권의 중국과 일본이라는 점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는 신분법제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중국에 기원한 호적제도에 뿌리를 둔 법제문화에 영향을 받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근대적인 호적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인 가족관계등록제도로 전환하였으나, 앞의 입법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과 일본은 여전히 ‘호적’제도에 기반을 둔 법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신분등록에 있어서 전근대성을 탈피하고 가족관계등록법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었으나,

정작 출생신고제도는 병원에서의 분만이 일반화되기 전인 구(舊)호적시대에 이용되었던 신고제도의 프레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⁵⁸⁾ 신분등록 시스템에 있어서 현대화는 여전히 진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이상으로 출생등록 의무자 관련 외국의 입법례가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주요 선진 국가와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까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출생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출생등록제도는 아동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물론 국민에 대한 행정편의 제고와 신속·정확한 출생등록을 통하여 인구동태통계 집계 및 의료 보건을 위한 정책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⁵⁹⁾ 또한 우리나라의 출생신고제도는 호적제라는 전근적인 신분법제에 기반을 둔 중국과 일본의 법제 유형과 다르지 않다. 이는 호적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적법이 존재하던 시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출생등록 의무자 관련 외국의 입법례가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출생신고제도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출생등록제도의 개선 필요성

이상에 살펴본 출생등록 의무자 관련 외국의 입법례가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출생등록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그 방향을 검토하여 보면 다

58) 송효진 외, 2013, 108쪽. 2013년 현재 총 출생건수중 병원에서의 출생건수 비율은 98.7%에 이르고 있다(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참조).

59) 다만 의료기관에서 출생사실을 통보해주는 제도 하에서는 익명의 출산을 원하는 경우, 오히려 병원에서의 출산을 기피할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프랑스나 독일 등에서 법으로 익명출산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학계를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다. 익명출산에 대한 연구는 김상용, “베이비박스과 익명의 출산: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法學研究』 제54권 제4호, 2013; 권재문, “입양 특례법 재개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베이비박스과 익명출산”,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22권 제1호, 2014; 안문희, “프랑스법의 익명출산제도:2003년2월13일 유럽인권법원 판결(ODIEVRE c. FRANCE)과 관련하여”, 중앙법학회, 『中央法學』 제15권 제4호, 2013. 참조. 익명출산제도는 비혼모를 위한 사회적 제도적 지원책이 부족한 현실에서 비혼모의 보호와 출생아의 알권리라는 법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매우 민감하고 신중한 이슈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향후의 연구과제로서 남겨두고자 한다.

음과 같다.

가) 아동 인권 보호

출생등록제도의 개선은 무엇보다도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출생한 아동이 등록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가로부터 보건, 복지 그리고 교육의 혜택을 받기 위한 전제가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출생 신고를 부모에게만 맡겨두고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신고누락과 신고지연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매우 취약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부모의 고의 또는 태만에 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예방 접종 등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 그리고 더 나아가 영아 유기, 신생아 매매, 불법·탈법적입 입양 등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회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심각한 아동 인권 침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출생등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나) 국제적 요구에 부합하는 출생등록제도의 확립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유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조(Article 7)⁶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와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 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무국적 상태가 되는 아동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출생등록제도는 출생 즉시 등록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고누락과 지연, 미등록의 문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2011년 제3·4차 국가보고서의 심의결과(2011. 10), 우리나라의 출생신고제도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라

60) 송효진 외, 2013, 107쪽 재인용.

74 ●●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제도 하에서 사실상의 입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나아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에 따라 우리나라가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이 신고 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과 출생신고에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가 정확히 명기되도록 보장하고 이를 확인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협약 제7조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약 가입국으로서 출생등록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다)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출생등록제도의 개선

우리나라에서 출산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 현재 병원에서의 출생은 전체 출생의 98.7%에 이르고 있다(아래<표II-2>참조).

<표II-2> 출생 장소 별 출생건수⁶¹⁾

(단위: 건, %)

연도	전체 출생 건수	자택	병원	기타	미상
2013	436,455(100)	3,774(0.9)	430,801(98.7)	1,538(0.4)	342(0.1)
2008	465,892(100)	6,010(1.3)	455,897(97.9)	2,366(0.5)	1,619(0.3)
2003	490,543(100)	6,617(1.3)	477,847(97.4)	1,725(0.4)	4,354(0.9)
1998	634,790(100)	9,349(1.5)	623,275(98.2)	2,166(0.3)	0(0.0)
1993	715,826(100)	27,673(3.9)	677,071(94.6)	11,074(1.5)	8(0.0)

그러나 출생신고제도는 지금과 같이 병원에서의 분만이 일반화되기 전인 구(舊)호적시대에 이용되었던 신고제도의 프레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⁶²⁾ 변화된 사회에 뒤떨어져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IT강국으로서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전산정보망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다. 의료 보건전산망은 물론, 가족관계등록부 역시 전산정보로 구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전산정보 환경의 변화와 장점이 우리나라 출생등록제도에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병원에서의 분만이 일반화되고 전산 정보화된 사회로의 변화를 반영한 출생등록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61) 통계청 자료를 표로 재구성(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참조).

62) 송효진 외, 2013, 108쪽.

라) 국민 편의 증진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출생의 등록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출생 즉시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제도 없이 출생의 신고기간을 1달 이내로 하고 있다. 1달의 출생신고 기간은 아동의 복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결코 짧지 않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 각국의 아동들은 출생 후 즉시 혹은 길어야 일주일 이내에 출생사실을 당국에 통보한다. 그러나 1달의 기간은 출생신고의무자인 부모의 입장에서는 결코 여유로운 기간이 아닌 것도 사실이다. 출생신고를 직접 할 수밖에 없는 비혼모 등 한부모가정의 경우 그 어려움은 더욱 크다.⁶³⁾ 출생사실의 통보가 의료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편의가 매우 증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 인구통계 및 출생등록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

앞에서 살펴본 외국의 입법례가 주는 주요한 시사점들 중의 하나는 출생등록제도가 인구동태통계와 의료보건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출생등록에 있어 의료기관에 일차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는 출생등록의 관할 부처를 통계 및 보건 당국인 경우가 많다. 이는 출생등록제도가 인구동태 통계와 출생아동에 대한 의료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정확하고 신속한 출생사실의 등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출생사실을 의료기관이 전산망을 통해 통보하도록 하여 등록되는 시스템은 정확하고 신속한 출생 등록에 매우 효율적이다. 출생사실이 의료기관과 행정전산망의 연계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출생 즉시 통보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출생신고의 누락,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영아 출생·사망의 정확한 집계 및 영아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⁶⁴⁾

63) 기간 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여 과태료를 내는 건수가 2007년부터 2011년에 이르기 까지 5년간, 89,253건에 이르고, 이와 관련하여 2006년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권고도 있어 출생신고 기간을 늘리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박주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301 제안일자: 2012. 10. 26.)이 발의된 바가 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64) 송효진 외, 2013, 109쪽.

2)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이상에서 살펴본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출생신고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에 의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신속하게 아동의 출생에 관여한 의료기관 등이 출생의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출생사실에 관한 간단한 정보만을 전산망을 통하여 신속하게 통보하게 하고, 추후 기간의 여유를 두고 부모 등으로 하여금 출생아의 이름을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절차는 출생사실의 신속한 통보와 추후 부모의 신고 편의를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의사·조산사나 그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의료기관 등)으로 하여금 출생 후 3일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출생 후 3일이라는 기간은 아동이 출생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추구하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기간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산모가 퇴원하기 전의 기간이기도 하다. 이때 전제는 전산망에 의한 통보이다.⁶⁵⁾

통보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출생신고의 정확성과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과태료의 액수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등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의사 또는 조산사가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출생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여, 허위의 출생신고 등으로 악용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65) 전산망의 이용 등 통보 사무의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추후 상세한 실무적인 검토 및 기관 간의 조율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

II. 출생등록의무자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 7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⁶⁶⁾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122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신설></p>	<p>제44조의2(출생의 통보) ①의사·조산사나 그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은 출생 후 3일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분만에 관여한 자가 의사 또는 조산사 면허가 없는 경우, 출생통보 시 보건소가 발급한 출생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②출생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생일시 및 장소 2. 출생아의 성별 3. 산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산모가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적과 생년월일)·주소 4.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p>③출생의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생등록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제122조(과태료) ①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이 법 제44조의2 제2항 소정의 출생통보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66) 이 개정안은 송효진 외, 2013, 111쪽에서 제안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참조하여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한편, 이와 같은 출생신고제도의 개선필요성에 따라 최근 2014. 9. 25.자로 국회에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은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출생 후 7일 이내에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윤명희의원 대표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1844, 제안일자: 2014. 9. 25.).

Ⅲ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 | | |
|-----------------------------|-----|
| 1. 스톡킹 규제 관련 외국 입법의 유형 및 특징 | 81 |
| 2. 스톡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 101 |
| 3. 시사점 및 입법과제 | 125 |

1.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 입법의 유형 및 특징

가. 스토킹 규제 관련 입법의 유형

1990년대 이후 스토킹 범죄화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입법화되는 분야 중 하나이다. 1990년 미국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1993년에 이르러 미 전역에서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을 정도로 스토킹 범죄화를 신속하게 이루어냈다.⁶⁷⁾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가 그 뒤를 이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일본, 네덜란드, 몰타,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체코공화국, 폴란드 등도 스토킹을 범죄화하였다.

미 연방의회는 미 법무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Justice)를 통해 스토킹 문제와 각 주에서 합헌적이고 시행 가능한 스토킹방지법을 발전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한 연구를 하도록 법무장관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993년 미국 형사사법협회(National Criminal Justice Association)는 각 주들이 중죄(felony) 수준의 스토킹방지법을 제정하도록 하기 위한 ‘모범 스토킹방지법(Model Anti-stalking Code)’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주 간의 스토킹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연방 스토킹법도 제정되었다. 호주 역시 1993년 퀸즈랜드 주에서 최초로 스토킹을 범죄화한 이래 1990년대 중반 모든 주의 스토킹 범죄화가 이뤄졌다. 이보다 다소 시기는 늦었으나 많은 유럽 국가들도 스토킹을 처벌 법규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토킹을 별도로 구별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단, 스토킹 행위가 형법상 폭행(제260조), 협박(제283조), 주거침입(제317조), 주거 및 신체수색(제321조), 명예훼손(제307조), 모욕(제311조), 강요(제324조)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처벌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2012년 3월 21일 경범죄 처벌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제3조 제1항 제41호에서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표제 하에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

*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집필에는 본 연구진 이외에 박보람(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참여했다.

67) Patricia Tjaden, “Stalking in America”, in Robert C. Davis et al. (eds.), 『Victims of Crime』, SAGE Publications, 2012, 57-58쪽.

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⁶⁸⁾ 이에 따라 스토킹이 법률의 규율 내용에 포함되어, 비록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스토킹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마련되었다.⁶⁹⁾ 그러나 경범죄 처벌법 규정은 단지 사후적 대처의 일환으로 형사 처벌만을 상정하고 있어 피해예방,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과되는 형량도 극히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제기되어 왔던 스토킹 규제에 대한 논쟁이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그간 스토킹과 관련한 입법적인 시도는 1999. 5. 24. 발의된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2003. 10. 13. 발의된 스토킹방지법안, 2005. 9. 27. 발의된 스토킹 등 대인공포유발행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2005. 11. 28. 발의된 지속적 괴롭힘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2009. 1. 9. 발의된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있었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나. 스토킹 규제 관련 입법의 특징

스토킹을 범죄화한 국가들은 스토킹의 구성요건요소나 형량, 피해자 보호 등에 있어 상이한 규율양상을 보인다. 각국의 스토킹 방지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통해 스토킹의 처벌 도입 여부뿐만 아니라 국제적 수준과 비추어 제도의 향방을 고민해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각국의 스토킹 방지법을 살펴봄으로써 법적 정의를 비롯하여 스토킹에 대한 입법 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할 것이다. 그런 후 스토킹 피해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어떠한 접근이 선호되어야 하는지 검토할 것이다.⁷⁰⁾

68)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41호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은 8만원이다.

69) 본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3. 3. 22.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아직 이 법조문 적용의 실태는 파악할 수 없다.

70) 유의할 것은 이하의 분석은 주로 명문의 법률에 국한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국의 판례 및 경찰행정 그 밖에 운용의 실재는 면밀하게 고려되지 않은 한계가 존재한다.

1) 공통점

각국의 스토킹에 대한 법적 정의로부터 몇 가지 공통점을 추출할 수 있다. 첫째, 벨기에를 제외한 입법례는 대체로 스토킹의 법적 정의로 ‘일련의 행위’나 ‘반복적 행동’을 요구한다. 따라서 1회의 행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스토킹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둘째, 모든 법적 정의는 괴롭힘(harassment)이나 쫓아다님(pursuit)과 같은 개방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안에의 포섭적용에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요한다. 이렇게 열린 개념 정의는 스토킹의 다양한 양상을 포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광범위한 일련의 스토킹 행위를 충분히 포착하기 위해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즉, 행위주체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개념의 불확정성 때문에 역설적으로 판례의 태도가 매우 엄격해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한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괴롭힘, 혹은 위협할 의도와 같은 행위태양은 사건을 접하는 법집행자 관점에서는 충분히 포괄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경찰에게 지나친 자유재량을 부여하는 결과를 야기하여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법집행이 유도되는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표Ⅲ-1> 스토킹에 대한 각국의 정의

국가	도입	용어	구성요건
미국 캘리포니아 주	1990	stalking	형법 제646.9조 의도적, 71) 악의적,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거나 의도적,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 다른 사람이나 그 사람의 가까운 가족의 안전에 대한 합리적인 두려움을 일으킬 의도로 믿을만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
캐나다	1993	harassment	형법 제264조 타인을 반복적으로 쫓아다니거나 타인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교신하는 행위, 타인이 방문, 생활 또는 일하고

84 ●●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국가	도입	용어	구성요건
			있는 장소를 둘러싸거나 관찰하는 행위
호주 퀸스랜드	1993	unlawful stalking	형법 제359조A 고의적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1회 이상 혹은 1회라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1994	unlawful stalking	형사통합법 제19조AA (a) 적어도 2회 이상 분리되어 행해진, 다른 사람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킬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행위 (b)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해악이나 심각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유발할 의도를 가진 행위
호주 빅토리아	1995	stalking	형법 제21조A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거나 피해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킬 것이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일련의 행위
뉴질랜드	1997	criminal harassment	괴롭힘법 제8조 범죄적 괴롭힘 12개월 내에 2회 이상의 분리된 괴롭힘 행위로 (a) 다른 사람이나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안전에 대하여 공포를 일으킬 의도를 가진 것 (b) 다른 사람의 특정한 상황 하에서 다른 사람이나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안전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공포를 일으킬 만한 것을 아는 것
영국 잉글랜드 및 웨일즈	1997	harassment	괴롭힘방지법 제1조 (a) 타인에게 괴로움을 주고 (b) 타인에게 괴로움이 되리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일련의 행위
아일랜드	1997	harassment	비치명적 범죄에 관한 법률 제10조 법령에 근거하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특정한 수단을 통해 타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관찰하거나, 침입하거나 기다리거나 연락을 취하는 방식으로 괴롭히는 것
벨기에	1998	Belaging	형법 제442의2조 이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음에도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
네덜란드	2000	Belaging	형법 제285b조 타인에게 특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하

III.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 85

국가	도입	용어	구성요건
			거나 수인하게 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법하게 체계적, 고의적으로 타인의 생활영역을 침해하는 행위
몰타 공화국	2005	stalking	형법 제251A조 (a) 다른 사람에 대한 괴롭힘이 되고 (b) 행위자가 그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일련의 행위 제251B조 일련의 행위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그 또는 그의 재산, 친족등과 그 재산에 대해 폭력이 행사될 것이라는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위 제251C조 251A와 251B의 괴롭힘은 불안이나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⁷²⁾
오스트리아	2006	Beharrliche Verfolgung	형법 제107a조 타인에 대하여 위법하게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행위
독일	2007	Nachstellung	형법 제238조 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을 끈질기게 하여 그의 생활형상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 1. 그의 주변을 찾아가거나, 2. 전화통신수단 또는 기타의 통신수단을 사용하거나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그와의 접촉을 하려고 시도하거나, 3. 그의 개인관련정보를 오·남용하여 그에게 재화나 용역을 주문하거나 제3자에게 그와 접촉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4. 그 자신 또는 그와 가까운 관계의 자의 생명, 신체의 완전성, 건강 또는 자유에 대한 침해를 위협하는 경우 5.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헝가리	2008	Zaklatás	형법 제222조 타인의 사생활 및 일상생활에 대한 위협 또는 임의적 간섭을 목적으로, 특히 타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연락을 위한 통신수단에 의하여 조직적 또는 상시적으로 괴롭히는 모든 행위
이탈리아	2009	Atti persecutori	형법 제612의2조 타인에게 반복적인 협박 혹은 추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

국가	도입	용어	구성요건
룩셈부르크	2009	Harcèlement obsessionnel	형법 제442-2조 스토킹 행위로 대상자의 안녕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거나, 이 대상자에게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고통을 주는 행위
체코공화국	2010	Nebezpečné pronásledování	형법 제354조 누구든지 타인의 생명이나 건강, 또는 타인과 친밀한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대한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
폴란드	2011	uporczywe nękanie	형법 제190a조 타인 또는 타인과 친밀한 사람을 스토킹함으로써 타인이 공포심을 느끼게 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

2) 차이에 따른 분류

가) 법률의 제정 방식

(1) 형법에 의한 규율

대부분의 국가는 기존 형법에 스토킹에 관한 조항을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스토킹을 범죄화하였다.

<표III-2> 형법상 규정례

국가	도입	해당법규
미국 캘리포니아주	1990	형법 제646.9조
캐나다	1993	형법 제264조
호주 퀸스랜드	1993	형법 제33A장 제359조A~F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	1994	형사통합법 제19조AA

71) “willfully”: 범의의 종류 중 하나로 ‘willfully’ 개념은 연방대법원을 포함한 법원들이 규정의 맥락에 따라 적절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훈, “위법성 인식으로서의 Mens Rea”,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2호, 2003, 411쪽 참조.

72) Criminal Code, <http://www.justiceservices.gov.au/DownloadDocument.aspx?app=lom&itemid=8574&l=1>, 최종검색일: 2014. 11. 26.

III.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 87

리아		
호주 빅토리아	1995	형법 제21조A
벨기에	1998	형법 제442의2조
네덜란드	2000	형법 제285b조
몰타 공화국	2005	형법 제251A~C조
오스트리아	2006	형법 제107a조
독일	2007	형법 제238조
헝가리	2008	형법 제222조73)
이탈리아	2009	형법 제612의2조
룩셈부르크	2009	형법 제442-2조
체코공화국	2010	형법 제354조
폴란드	2011	형법 제190a조

(2) 특별법에 의한 규율

일반법인 형법에 스토킹 규정을 두지 않고 별도의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스토킹을 규율하는 국가는 영국과 아일랜드, 일본 등이 있다.

특별법 제정의 장점은 스토킹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별법에는 스토킹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같은 중요한 측면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

<표III-3> 특별법상 규정례

국가	도입	해당법규
뉴질랜드	1997	괴롭힘법 제8조(Harassment Act 1997 ⁷⁴⁾ 8. criminal harassment)
영국 잉글랜드 및 웨일즈	1997	괴롭힘방지법(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⁷⁵⁾)
아일랜드	1997	비치명적 범죄에 관한 법률 제10조(Non-fatal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ct: Section 10 ⁷⁶⁾)
일본	2000	스토크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73) 2008년 개정 당시 176/A조로 도입되었으나 형법 개정으로 현재 제222조에 위치한다.

74) Harassment Act 1997(1998. 1. 1. 시행, 2013. 7. 1. 최종개정), <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1997/0092/latest/whole.html#DLM417732>, 최종검색일: 2014. 11. 26.

나) 스토킹 행위의 예시

벨기에,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는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즉, 법률 자체에서 무엇이 스토킹 행위인지 혹은 괴롭힘(harassment)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반면 미국과 호주 대부분의 주, 일본은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⁷⁷⁾ 독일 역시 그 행위유형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4개의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를 규정함과 동시에 이와 비교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행위로서 그 생활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까지 형벌의 구성요건으로 삼았다. 영국에서도 2012년 개정 전까지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 법률에 ‘괴롭힘(harassment)’의 구체적 행위유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⁷⁸⁾ 이 때문에 괴롭힘 행위 인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2012년 5월 「자유보호법(the Protection of Freedoms Act 2012)」에 의해 제2A조와 제4A조를 신설하면서, 스토킹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되었다.

법률에 구체적인 행위유형을 명시하는 것은 어떠한 행위가 법률이 규율하는 스토킹 행위인지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법원뿐만 아니라 경찰 단계에서부터 어떠한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법을 근거로 판단하여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행위유형이 예시적인 방식이 아닌 열거적 방식으로 규정되는 경우, 스토킹 규제법에 메일에 대한 규정이 없어 메일에 의한 스토킹 행위를 처벌할 수 없었던 일본의 예⁷⁹⁾와 같이 다양한 스토킹 행위유형을 고려한 효과적이고 보다 유연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

75)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1997. 6. 16. 시행),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97/40/contents>, 최종검색일: 2014. 11. 26.

76) Non-fatal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ct(1997. 5. 19. 시행), <http://www.irishstatutebook.ie/1997/en/act/pub/0026/sec0010.html#sec10>, 최종검색일: 2014. 11. 26.

77) Lamplugh, D. and Infield, P., “Harmonising Anti-stalking laws”, 『George Washington International Law Review』, 2003, 861~863쪽에서는 미연방 각 주의 입법형식을 일본의 스토킹 방지법과 함께 열거형(list model)으로 분류하였다.

78) Lamplugh, D. and Infield, P., 2003, 863~856쪽. 이 때문에 저자들은 개정 전 영국의 괴롭힘 방지법을 “일반적 금지형(general prohibition model)”으로 분류한 바 있다.

79) 2013. 7. 3. 개정으로 원치 않는 전자메일을 계속해서 보내는 행위 역시 규제대상에 포함되었다.

<표Ⅲ-4> 행위태양 예시

국가	예시 내용
미국 미시건주	동의없는 접촉 (i) 그 개인을 따라다니거나 그의 시야내에 나타나는 것 (ii) 공공의 장소나 사적인 재산 내에서 그 개인에게 접근하거나 대면하는 것 (iii) 그 개인의 직장이나 주거에 나타나는 것, (iv) 그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하거나 점유 중인 재산 내로 들어가거나 그것에 머무는 것, (v) 전화로 그 개인과 접촉하는 것 (vi) 그 개인에게 우편이나 전자통신을 발송하는 것 (vii) 그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하거나 점유 중인 재산에 어떠한 물건을 놓아두거나 배달하는 것
호주 빅리주	(a)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을 따라다니는 행위 (b) 우편,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이메일 기타 전자통신 등 방법에 불구하고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에게 연락하는 행위 (ba) 인터넷, 이메일, 그 밖에 전자통신으로 (i)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에 관한 혹은 (ii)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에 관한 것이거나 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진술 등을 출판하는 행위 (bb)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컴퓨터에 허가받지 않은 컴퓨터 기능을 야기하는 행위 (bc)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의 인터넷이나 이메일, 기타 전자통신을 추적하는 행위 (c)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의 주거, 직장 기타 자주 다니는 장소 외부나 근처에 들어가거나 어슬렁거리는 행위 (d)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의 소유 하의 부동산에 침입하는 행위 (da)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위 (db) 피해자에 대하여 혹은 피해자가 있는 곳에서 모욕적·공격적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dc) 피해자가 있는 곳에서 모욕적·공격적 행위를 하는 것 (dd) 모욕적·공격적 행위가 피해자를 향하도록 하는 행위 (e) 공격적 물건을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에게 주거나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곳에 두는 행위 (f) 감시행위
오스트리아	지속적인 추적 1. 피해자의 근처에 접근하거나 2. 통신 또는 다른 의사소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제3자를 통해 피해자와 접촉하거나 3.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물건 또는 급부를 주문하거나 4.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제3자가 피해자와 접촉하도록 하는 것.

국가	예시 내용
독 일	1. 그의 주변을 찾아가거나, 2. 전화통신수단 또는 기타의 통신수단을 사용하거나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그와의 접촉을 하려고 시도하거나, 3. 그의 개인관련정보를 오·남용하여 그에게 재화나 용역을 주문하거나 제3자에게 그와 접촉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4. 그 자신 또는 그와 가까운 관계의 자의 생명, 신체의 완전성, 건강 또는 자유에 대한 침해를 위협하는 경우 5.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일 본	“따라다니기 등 행위” (제2조 제1항) 1.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진로에 가로막기, 주거, 근무처, 학교 기타 그 통상 소재지 부근에서 지켜보기 또는 주거 등에 억지로 들어가기, 2. 행동이 감시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토록 알리거나 알 수 있게 하는 것, 3. 면회, 교제 기타 의무 없는 일을 요구, 4. 현저히 거칠고 품위 없거나 난폭한 언동, 5. 전화를 걸어 아무 말도 없거나, 거절함에도 계속 전화를 거는 것 또는 팩시밀리, 메일을 통한 송신, 6. 오물, 동물의 사체 등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물건을 송부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7. 명예를 해하는 사항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8.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사항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영 국	제2A조 제3항 (a) 특정 개인을 따라가는 것 (b) 특정 개인에게 연락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연락을 시도하는 것 (c) 특정 개인과 관련된 또는 관련이 있다고 위장하여 글이나 자료를 게시하는 것. 또는 특정 개인으로 위장하여 글이나 자료를 게시하는 것 (d) 특정 개인의 인터넷, e-메일 또는 전자 매체 수단 사용을 감시하는 것 (e) (공공 또는 사적 장소든 간에) 어떤 장소에서 배회하는 것 (f) 특정 개인의 소유물에 개입하는 것 (g) 특정 개인을 바라보거나 몰래 감시하는 것

다) 피해의 결과

범죄는 구성요건성립에 행위 외에 일정한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거동범은 일정한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고 결과발생은 요하지 않는 범죄를 말한다.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만을 스토킹 행위로 금지하는 경우, 실제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한 중대한 시점에서 경찰이

나 기타의 사법기관이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⁸⁰⁾

(1) 피해의 결과를 요구하는 유형

범죄의 성립에 행위 이외에 일정한 결과발생을 요하는 방식으로 규정한 경우이다. 예컨대 미국의 많은 주는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가해자로부터 폭력의 위협이 이루어졌다고 믿을 만한 상황으로부터 야기되는 ‘살인이나 중상해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reasonable fear of death or grave bodily injury)’를 요구한다. 독일의 경우에도 스토킹 행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생활형성이 중대하게 침해된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 규범의 적용영역이 부당하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별적인 사례에서 피해자의 생활형성을 중대하게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침해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다. 아일랜드와 폴란드 역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표III-5> 피해 결과 요구 유형례

국가	조문
독일	제238조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한 접촉) 제1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집요하게 하여 다른 사람의 생활형성을 중대하게 침해함으로써, ...
아일랜드	(a)다른 사람의 평온과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공포, 정신적 고통 및 해악을 야기하며, ...
폴란드	제190a조 1. 타인 또는 타인과 친밀한 사람을 스토킹함으로써 타인이 공포심을 느끼게 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자는 ...

80) Paul E. Mullen et al., 『Stalkers and their victi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250쪽.

92 ●●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2) 피해의 결과를 요하지 않는 유형

캐나다, 호주 대부분의 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체코, 이탈리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의 경우 피해자가 스토킹의 결과로 공포나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등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미국의 모범법전에서도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사람을 자신의 안전에 대하여 두려움에 처하게 하고 스토킹자가 의도를 갖고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그러한 두려움에 처하게 했던 일련의 행위들”로 정의함으로써 실제로 피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3) 2유형 접근

영국과 헝가리, 몰타 공화국의 스토킹 규제법은 스토킹의 구성요건을 2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첫 번째 유형은 결과의 발생을 필수요소로 하지 않는다. 두 번째 행위유형은 ‘사람으로 하여금 폭력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이런 행위는 중죄(felony)를 구성한다. 영국의 경우, 제1조에 해당하는 일반 스토킹의 경우는 6월 이하의 자유형 및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그의 일련의 행위가 최소한 2회 이상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한 경우에(Putting people in fear of violence) 그가 각각의 경우 그 행위가 다른 사람이 공포를 느끼게 할 것이라는 점을 알거나 또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어야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위반사실은 그의 범죄가 유죄라는 점에 대해서 불리한 증거로 이용될 수 있다(Section 4).” 이런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면 행위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자유형을 부과할 수 있다.

<표III-6> 2 유형 접근례

국가	조문
영국	1. 일련의 행위는 금지된다. (1) 다른 사람에 대한 괴롭힘이 되는
	4. 폭력의 공포 유발 (1) 일련의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최소한 2회 이상 폭력이 사용될 것이라는 공포를 유발한 자

국가	조문
	(1) 타인의 사생활 및 일상생활에 대한 위협 또는 임의적 간섭을 목적으로, 특히 타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연락을 위한 통신수단에 의하여 조직적 또는 상시적으로 괴롭히는 모든 행위
헝가리	(2) 위협할 목적으로 a) 타인 또는 그의 친족에 대하여 폭력 또는 공공의 위협을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하겠다고 하거나 b) 피해자 또는 그의 친족의 생명, 신체의 완전성이나 건강을 해하거나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인상을 심으려는 행위

라) 주관적 구성요건

각국의 입법례는 행위자의 고의의 정도, 즉 의지적 요소를 요하는지, 지적 요소만으로 충분한지, 미필적 고의로 충분한지와 과실범에 의한 행위 처벌 여부 역시 상이하다.

스토킹 범죄에서 주관적 구성요건의 문제는 어려운 측면을 가진다. 스토킹 행위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스토킹의 상대방을 두렵게 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진다기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관계를 우호적인 관계로 인식하거나 과거의 우호적인 관계로 복원시키려는 의도에서 행위를 실행하기 때문이다.⁸¹⁾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형사사법기관이나 법원이 스토킹 행위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 29개주와 콜롬비아 특별구는 구성요건요소로서 특별한 의도를 요한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역시 범죄의 성립에 의지적 요소를 요한다. 반면 벨기에, 룩셈부르크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실현을 인식하고 행위하는 것을 처벌함으로써 구성요건적 고의의 지적 요소로 충분하다고 보며, 영국, 몰타, 아일랜드는 ‘알 수 있었던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과실범까지 처벌한다. 단, 위와 같은 규정을 참고하는 경우 주관적 요소를 고의와 과실만으로 이분하고 고의의 정도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달려 있지 않은 우리의 범죄체계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와 유사한 형사법체계를 가진 독일 등은 고의의 정도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81) 이견호 외, 「스토킹 피해실태와 입법쟁점에 관한 연구」, 여성부, 2002, 102쪽.

마) 친고죄 여부

각국의 입법례는 기소를 위해 피해자의 고소가 요하는지 여부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헝가리, 폴란드, 네덜란드는 해당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였다. 독일에서도 스토킹은 기본적으로 고소를 요하는 범죄이지만, 검사가 특별한 공익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할 수 있는 상대적 친고죄(relatives Antragsdelikt)이다. 소추가 필요한 공익이 있는 경우로는 범인이 문제되는 사안의 피해자 외의 타인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한 전력이 있고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⁸²⁾ 제2항 또는 제3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의 경우에는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탈리아 역시 고소에 의한 기소와 직권에 의한 기소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피해자는 우선적으로 경찰에 가해자에 대한 공식적 경고를 발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가해자가 이 경고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경우 고소 없이 기소될 수 있다.

반면, 오스트리아와 영국의 모든 스토킹 범죄는 비친고죄이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기소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는 2006년 107조의 a(Beharrliche Verfolgung)를 신설(2006년 7월 1일)하면서 스토킹을 입법화하였을 당시에는 통신 또는 다른 의사소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제3자를 통해 피해자와 접촉하는 양태의 스토킹에 한하여 피해자의 고소를 요구하였으나 2007년 법 개정으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모두 비친고죄가 되었다.

<표III-7> 친고죄 여부

구분	국가
친고죄	일본, 벨기에, 룩셈부르크, 헝가리, 폴란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비친고죄	미국, 캐나다, 영국, 오스트리아 등

82) 김성룡, “독일의 ‘스토킹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4호, 2007, 149~150쪽.

바) 형량의 범위

스토킹에 대한 최대형량은 3월에서 10년 이상까지 다양하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단일한 형량을 정하는 경우와 기본적 구성요건과 가중적 구성요건을 나누어 형을 달리 정하는 경우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미국은 법정최고형이 1년을 초과하는 자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중죄로, 법정최고형이 1년 이하 6일 이상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경죄로 구분한다. 14개 주는 초범까지도 중죄로 벌하며, 35개주에서는 재범 또는 가중구성요건을 중죄로 정하였다. 가중사유는 법원의 명령, 보호관찰·가석방 조건 위반, 흉기휴대, 18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행해진 경우, 피해자가 이전의 범죄와 동일한 경우 등이다. 메릴랜드 주만이 모든 스토킹 범죄를 경죄로 한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구체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6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에 따라 형을 달리 정하고 있다.

<표Ⅲ-8> 형량의 범위

국가	형량	
미국	형량을 기준으로 경죄와 중죄로 구분하여 전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후자는 대부분 3~5년의 자유형, 일부 주에서는 10~20년의 자유형	
	캘리포니아 ⁸³⁾	경죄: 1년 이하의 지역교도소 자유형 또는 1천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형 중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주립교도소 자유형 일시적 접근금지명령, 금지명령 등에 위반하여 동일한 상대방에 대하여 계속하여 위반한 경우 2년 이상 4년 이하의 주립교도소 자유형
	사우스캐롤라이나	기본적 구성요건 :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1천달러 이하의 벌금 가중적 구성요건 이미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자의 스토킹 :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2천달러 이하의 벌금 7년 이내 괴롭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스토킹: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5천달러 이하 스토킹의 가중적 구성요건: 5년/5천달러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자의 가중스토킹

96 ●●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톡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국가	형량	
		: 7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7천 달러 이하의 벌금 7년 이내 스톡킹·괴롭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가중 스톡킹 : 15년 이하의 자유형 및 1만 달러 이하의 벌금
캐나다	10년 이하의 자유형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3년 이하 단, 범행 당시 가해자가 흥기를 휴대하고 있었거나 법원의 명령을 어긴 상태라면 5년 이하의 자유형
	퀸스랜드	5년 이하 단, 범행 당시 가해자가 흥기를 휴대하고 있었거나 법원의 명령을 어긴 상태라면 7년 이하의 자유형
	빅토리아	10년 이하
뉴질랜드	2년 이하의 자유형	
영국	경죄: 12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1500파운드의 벌금 중죄: 7년 이하의 자유형	
아일랜드	약식절차: 1,500파운드의 벌금 또는 12개월 이하의 자유형 정식재판: 1500파운드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자유형	
벨기에	15일 이상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50유로 이상 300유로 이하의 벌금	
네덜란드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제4범주(11,250유로 이하)의 벌금형	
일본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금지명령 위반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 이하의 벌금	
몰타 공화국	251A: 1월 이상 3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2329.37 이상 4658.75유로 이하의 벌금 251B: 3월 이상 6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4658.75 이상 11,646.87유로 이하의 벌금	
오스트리아	1년 이하의 자유형	
독일	기본적 구성요건: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국가	형량
	사망 또는 중대한 건강침해의 위험이 야기된 경우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
헝가리	기본적 구성요건: 1년 이하의 자유형 가중적 구성요건: 전 배우자, 전 동거인 또는 전 동거인의 배우자에 대한 괴롭힘: 2년 이하 교육, 감독, 간호 또는 치료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한 괴롭힘: 3년 이하의 자유형
이탈리아	기본적 구성요건: 6월 이상 4년 이하의 자유형 법적 별거, 이혼, 피해자와 애정관계에 있는 자가 행한 경우 가중 미성년자, 임신부, 또는 법률 제104호 제3조(1992.2.5)에 해당되는 장애인 을 대상으로 한 경우, 무기를 사용했을 경우 또는 가해자가 성도착자일 경우에는 형량을 최대 1/2 가중
폴란드	3년 이하의 자유형

사) 피해자의 보호

스토킹에 대한 'three P'라고 불리는 인권 관점의 새로운 접근 방식은 기소(prosecution), 즉 범죄화뿐만 아니라 지원(provisions of support)과 보호책(Protection) 포괄하는 것이다.⁸⁴⁾

83) 캘리포니아 주에서 스토킹범죄의 행위유형에 따라 경죄와 중죄가 명확히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경죄(misdemeanor)는 주립교도소에서 집행되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양자를 병과할 수 있는 범죄이며(P.C. §§ 17(b)), 중죄(felony)는 사형 또는 주립교도소에서 집행되는 자유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P.C. § 17(a)).

84) Susan van der Aa and Renée Römkens, "The state of the art in stalking legislation - reflections on European developments", 『European Criminal Law Review』, 2013, 243쪽.

(1) 미국

위험방지를 위한 예방적 경찰작용과 형사사법적 경찰조치가 구분되지 않는 영미법계의 특성상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작용의 경우도 형법에서 규율된 경우가 많다.⁸⁵⁾

캘리포니아 주 형법 제646.91조 (a)항은 판사 등 사법관(judicial officer)은 경찰관(peace officer)이 피해자의 주장에 기해 피해자에 대한 급박하고 현존하는 스톡킹의 위험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명령(emergency protective order)을 발할 수 있다. 피해자는 긴급보호의 연장을 원할 경우 법원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긴급보호명령은 유죄판결에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스톡킹 피해에 대한 혐의 만으로도 발령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법적 대응이라기보다는 피해자 보호 조치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한다.⁸⁶⁾

(2) 호주

호주의 경우 스톡커에 대한 처벌규정 이외에 거의 예외없이 피해자를 스톡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가 가능하다. 특히 본래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예방적 조치로 마련되었던 보호명령제도가 스톡킹 사안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빅토리아주의 보호명령제도를 예로 들자면, 당초 보호명령 기간 12개월의 기간제한이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고 그 기간을 법원의 재량에 위임하였으며, 보호명령위반에 대한 벌칙도 강화되었다. 최초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자유형과 2,400달러 이하의 벌금 가운데 선택하거나 양자를 병과 할 수 있고, 이후 또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도록 강화하였다. 피해자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명령을 내리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고소인이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명령(interim intervention order)을 발할 수도 있다.⁸⁷⁾

85) 이성용, 「스토킹 방지를 위한 선제적 행정경찰 작용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12, 71~72쪽 참조.

86) 이성용, 2012, 72쪽.

87) 이기현, “스토킹의 형법적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제4권 제2호, 2002, 346~347쪽 참조.

Ⅲ.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 99

(3) 영국

영국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서는 스토킹을 단일한 법률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동 법률에 의거하여 관할 형사법원에서 접근금지의 민사적 명령을 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⁸⁸⁾ 이러한 입법적 규율 외에도 영국 내무부와 런던경찰은 스토킹 사례에 대처하는 방식을 기술하는 안내자료⁸⁹⁾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⁹⁰⁾

(4) 아일랜드

아일랜드 법원 또한 형사처벌에 부가하여 또는 형사처벌을 대신하여 특정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접촉을 금지하거나 직장주변 일정범위의 접근에 대한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⁹¹⁾

(5) 일본

일본의 「스토킹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위협방지를 위한 행정적 조치를 함께 규율하고 있다. 우선 제4조에 의하여 피해자가 따라다니기 등의 행위에 대한 경고를 구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경찰행정청은 그 행위의 반복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행위자에 대하여 국가공안위원회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행위의 반복을 금지하는 취지의 경고를 할 수 있고, 그 내용을 공안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제6조에서는 경찰행정청의 경고를 구하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반복의 우려가 있고 신청자의 신체의 안전, 주거의 평온 또는 명예훼손이나 행동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경찰행정청은 가해자에 대하여 청문의 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행위의 반복을 금지하는 가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러한 가명령은 15일까지 유효하며(제3항), 공안위원회에서는 15일 이내에 의견청취를 하고 금지명령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제5항).

88) 이성용, 2012, 74쪽.

89) Stalking and other forms of harassment: An investigator's guide, <http://www.hamishbrownmbe.com/img/stalking.pdf>, 최종검색일: 2014. 11. 26.

90) 이성용, 2012, 75쪽.

91) Non-Fatal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ct, 1997, 10(3).

경찰행정청의 경고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가 반복될 우려를 고려하여 행위의 반복을 금지하는 등 공안위원회가 필요한 금지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위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제5조).

(6)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민사집행법 제382b조는 피해자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법원은 가까운 친지에 대한 신체적 공격이나 이에 대한 위협, 심리적 건강상태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야기하는 행동으로 더 이상의 동거를 수인할 수 없도록 만드는 자에 대하여 주거와 주변지역에서의 퇴거 및 접근금지를 3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이에 더하여 체류와 접촉 역시 금지할 수 있다.⁹²⁾

형법 제107a조의 개정과 함께 스토킹 대응을 위해 새로이 삽입된 민사집행법 제382g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지관계에 있지 않거나 동거하지 않는 경우라도 침해금지청구권을 인정하여, 한시적 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접촉이나 따라다니기, 특정지역에의 체류, 개인정보나 사진의 전달이나 배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재화나 용역의 주문, 제3자를 통한 접촉의 사주 등의 금지가 해당한다. 제2항에서는 법원이 경찰관청에 한시적 금지조치의 집행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최장 3년간 가능하며 체류금지를 제외하고는 본안심리에 관계없이 가능하다.⁹³⁾

(7) 독일

독일에서는 각 주의 경찰작용법에 따라 피해자가 경찰에게 스토킹으로부터의 위험에 대한 방지를 요청하는 경우 경찰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방지라는 보호법익에 근거하여 범죄의 발생이전 단계에서 주경찰법상의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⁹⁴⁾

주 경찰법 제34조 제1항은 경찰이 위험방지의 목적으로 일정기간 특정장소

92) 이성용, 2012, 110쪽.

93) 이성용, 2012, 109~110쪽 참조.

94) 이성용, 2012, 84~86쪽 참조.

에의 체류나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명령하는 권한을 정하고 있다. 스토킹과 관련하여, 경찰은 피해자의 주거에 대기하고 있다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경찰법에 의해 보호되는 피해자의 법익에 대한 침해가 예견되는 경우 퇴거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퇴거명령과 동시에 퇴거가 발해진 지역으로의 출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⁹⁵⁾

2.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가. 미국

1) 캘리포니아 주(州)

캘리포니아 주 형법에서는 제15편 제2장 기타 범죄(other miscellaneous crimes)에서 스토킹 범죄를 다룬다. 제646.9조는 일반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규정하며, (e)항에서 (h)항에 걸쳐 “괴롭힘”, “일련의 행위”, “믿을 만한 위협”, “전자통신기기” 등 개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의 규정은 스토킹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정한 민법에도 그대로 원용되고 있다.

형법 제653조는 전화나 전자통신장비를 통하여 외설적인 언사를 하거나 반복적인 전화, 접촉 등을 하는 자에 대한 특별 규정을 마련하여 경범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단, 선의로 한 전화나 전자통신장비로 접촉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형법 646.9조⁹⁶⁾

- (a) 의도적, 악의적,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거나 의도적,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나 그 사람의 가까운 가족의 안전에 합리적인 두려움에 빠뜨릴 의도로 믿을만한 위협을 가하는 사람은 스토킹 범죄의 죄책을 지며, 1년 이하의 지역교도소 자유형 또는 1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양자를 병과, 혹은 주립교도소 자유형에 처할 수 있다.
- (b) 일시적 접근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금지명령(injunction), 기타 전(a)항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에 위반하여 동일한 상대방에 대하여 전(a)항의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 4년 이하의 주립교도소 자유형에 처한다.
- (c) (1) 273.5조, 273.6조, 422조⁹⁷⁾에 위반하여 중죄의 유죄선고를 받은 후 전(a)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지역교도소 자유형 또는 1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양자를 병과하거나, 2년 이상 5년 이하의 주립교도소 자유형에 처한다.⁹⁸⁾

95) 이성용, 2012, 88~90쪽 참조.

102 ●●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 (2) 전(a)항에 위반하여 중죄의 유죄선고를 받은 후 본조에 위반하여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주립교도소 자유형에 처한다.
- (d) 법원은 본조에 위반하여 중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본조에 정한 형에 더하여 290.006조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e) 본조에서 “괴롭힘”은 특정 사람을 향한 고의적인 일련의 행위로, 그 사람을 심각하게 불안하게 하거나, 성가시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위협하는 것으로 합법적인 목적이 없는 것을 말한다.
- (f) 본조에서 “일련의 행위”는 일정 기간 동안 목적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2개 이상의 행위를 의미한다. 헌법상 보호되는 활동은 “일련의 행위”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g) 본조에서 “믿을만한 위협”은 전자통신기기를 통한 통신을 포함한 구두상 또는 서면상의 위협, 또는 위협의 대상이나 그의 가까운 가족이 합리적인 두려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위협을 실행할 의도와 외견상 드러나는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일련의 행위나 구두상, 서면상, 또는 전자적으로 통신되는 진술 및 행위의 조합에 의해 암묵적으로 표시된 위협을 말한다. 피고인이 그 위협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위협을 가하는 사람이 현재 수용시설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규정에 의한 기소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헌법적으로 보장된 행위는 “믿을만한 위협”의 의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h) 본조에서 “전자통신기기”는 전화, 휴대전화, 컴퓨터, 비디오녹화기, 팩스, 호출기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 “전자통신”은 U.S.C. 제18편 제2510조(12)에서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 (i) 본조는 노동쟁의 중 일어난 행위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j) 본조에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이 있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법원이 명한 상담에 참여해야 한다. 단 법원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 상담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다.
- (k) (1) 선고법원은 피해자와의 어떠한 접촉도 금지하는 명령을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내릴 수 있다. 금지명령기간은 행위의 심각성, 장래 재범의 가능성, 피해자 및 가까운 가족의 안전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다.
- (2) 이러한 보호명령은 피고인의 교도소 수감 여부나 집행 및 선고유예, 보호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발부될 수 있다.
- (l) 본조에서 “가까운 가족(immediate family)”은 배우자, 부모, 자녀, 기타 2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그 가정 내에 거주하는 사람, 6개월 내에 거주하였던 사람을 의미한다.
- (m)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제2684조에 따른 치료가 필요한지를 고려해야 한다. 만약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법원은 교정국으로 하여금 제2684조에 의거하여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증명서에 따라 검사를 받고 적합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는다.
- (a) Any person who willfully, maliciously, and repeatedly follows or willfully and maliciously harasses another person and who makes a credible threat with the intent to place that person in reasonable fear for his or her safety, or the safety of his or her immediate family is guilty of the crime of stalking, punishable by imprisonment in a county jail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of not more than one thousand dollars (\$1,000), or by both that fine and imprisonment, or by imprisonment in the state prison.
- (b) Any person who violates subdivision (a) when there is a temporary restraining order, injunction, or any other court order in effect prohibiting the behavior described in subdivision (a) against the same party,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in the state prison for two, three, or four years.
- (c) (1) Every person who, after having been convicted of a felony under Section 273.5, 273.6, or 422, commits a violation of subdivision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in a county jail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of not more than one thousand dollars (\$1,000), or by both that fine and imprisonment, or by imprisonment in the state prison for two, three, or five years.

(2) Every person who, after having been convicted of a felony under subdivision (a), commits a violation of this secti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in the state prison for two, three, or five years.

(d) In addition to the penalties provided in this section, the sentencing court may order a person convicted of a felony under this section to register as a sex offender pursuant to Section 290.006.

(e)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harasses" means engages in a knowing and willful course of conduct directed at a specific person that seriously alarms, annoys, torments, or terrorizes the person, and that serves no legitimate purpose.

(f)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course of conduct" means two or more acts occurring over a period of time, however short, evidencing a continuity of purpose. Constitutionally protected activity is not included within the meaning of "course of conduct."

(g)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credible threat" means a verbal or written threat, including that performed through the use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 device, or a threat implied by a pattern of conduct or a combination of verbal, written, or electronically communicated statements and conduct, made with the intent to place the person that is the target of the threat in reasonable fear for his or her safety or the safety of his or her family, and made with the apparent ability to carry out the threat so as to cause the person who is the target of the threat to reasonably fear for his or her safety or the safety of his or her family. It is not necessary to prove that the defendant had the intent to actually carry out the threat. The present incarceration of a person making the threat shall not be a bar to prosecution under this section. Constitutionally protected activity is not included within the meaning of "credible threat."

(h)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term "electronic communication device"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telephones, cellular phones, computers, video recorders, fax machines, or pagers. "Electronic communication" has the same meaning as the term defined in Subsection 12 of Section 2510 of Title 18 of the United States Code.

(i) This section shall not apply to conduct that occurs during labor picketing.

(j) If probation is granted, or the execution or imposition of a sentence is suspended, for any person convicted under this section, it shall be a condition of probation that the person participate in counseling, as designated by the court. However, the court, upon a showing of good cause, may find that the counseling requirement shall not be imposed.

(1) The sentencing court also shall consider issuing an order restraining the defendant from any contact with the victim, that may be valid for up to 10 years, as determined by the court. It is the intent of the Legislature that the length of any restraining order be based upon the seriousness of the facts before the court, the probability of future violations, and the safety of the victim and his or her immediate family.

(2) This protective order may be issued by the court whether the defendant is sentenced to state prison, county jail, or if imposition of sentence is suspended and the defendant is placed on probation.

(l)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immediate family" means any spouse, parent, child, any person related by consanguinity or affinity within the second degree, or any other person who regularly resides in the household, or who, within the prior six months, regularly resided in the household.

(m) The court shall consider whether the defendant would benefit from treatment pursuant to Section 2684. If it is determined to be appropriate, the court shall recommend that the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 make a certification as provided in Section 2684. Upon the certification, the defendant shall be evaluated and transferred to the appropriate hospital for treatment pursuant to Section 2684.

한편, 캘리포니아 주 민법 제1708.7조 (a)항은 원고가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의 모든 구성요건을 증명하는 경우 누구든지 스토킹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스토킹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으로 ① 원고를 따라다니거나, 집을 주거나, 괴롭히기 위할 의도로 한 행위로서 ② 위행위의 결과로 원고가 자신이나 가까운 가족의 안전에 합리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을 것, ③ 피고는 위 일련의 행위로 피고가 원고나 그 가까운 가족을 확실한 두려움에 빠뜨릴 의도로 믿을 만한 위협을 가하였고, 원고가 1회 이상 피고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계속하였거나, 피고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을 위반하였을 것이라는 세 항목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스토킹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통상 손해(general damages), 특별 손해(special damages)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punitive damages) 또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법원은 금지명령(injunction)뿐만 아니라 적당한 보호조치(relief)를 허용할 수 있다. 또한, 민법상의 구제조치는 중첩적이며 다른 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와 구제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⁹⁹⁾

<p>민법 제1708.7조¹⁰⁰⁾</p> <p>(a) 원고가 불법행위의 다음 요소를 증명하면 피고는 스토킹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p> <p>(1) 원고를 따라다니거나, 집을 주거나, 괴롭히기 위할 의도로 한 행위</p> <p>(2) 위 행위의 결과로 원고가 자신이나 가까운 가족의 안전에 합리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경우로,</p> <p>(3) 다음 중 하나의 경우일 것</p> <p>(A) 피고가 위 (1)에서 적시된 행위로 원고에게 원고나 원고의 가까운 가족의 안전에 대한 합리적인 두려움을 야기할 목적으로 믿을만한 위협을 가하였고, 원고가 1회 이상 피고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백히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계속한 경우</p> <p>(B) 피고가 금지명령 기타 민사소송법 527.6조에 따른 명령 기타 금지명령에 위반하여 위 (a)의 행위를 한 경우</p>

96) <http://www.leginfo.ca.gov/cgi-bin/displaycode?section=pen&group=00001-01000&file=639-653.2>, 최종검색일: 2014. 11. 26.

97) 형법 제273.5조(가정폭력), 273.6조(접근금지명령등 위반), 제422조 협박죄(Criminal Threats)를 말한다.

98) 형기의 2/3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될 수 있는 주립교도소와 달리 지역교도소는 형기의 1/2만 채우면 가석방될 수 있다.

99) 이승우,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안”,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제2권 제1호, 2011, 253~254쪽.

(a) A person is liable for the tort of stalking when the plaintiff proves all of the following elements of the tort:

(1) The defendant engaged in a pattern of conduct the intent of which was to follow, alarm, or harass the plaintiff. In order to establish this element, the plaintiff shall be required to support his or her allegations with independent corroborating evidence.

(2) As a result of that pattern of conduct, the plaintiff reasonably feared for his or her safety, or the safety of an immediate family member. For purposes of this paragraph, "immediate family" means a spouse, parent, child, any person related by consanguinity or affinity within the second degree, or any person who regularly resides, or, within the six months preceding any portion of the pattern of conduct, regularly resided, in the plaintiff's household.

(3) One of the following:

(A) The defendant, as a part of the pattern of conduct specified in paragraph (1), made a credible threat with the intent to place the plaintiff in reasonable fear for his or her safety, or the safety of an immediate family member and, on at least one occasion, the plaintiff clearly and definitively demanded that the defendant cease and abate his or her pattern of conduct and the defendant persisted in his or her pattern of conduct.

(B) The defendant violated a restraining order,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ny order issued pursuant to Section 527.6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prohibiting any act described in subdivision (a).

2) 미시간 주(州)

미시간 주의 스토킹 방지법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내용을 지닌 스토킹 방지법으로 평가된다. 미시간 주 형법전은 제750. 411h조와 제750. 411i조에서 스토킹과 가중된 스토킹 등 오프라인 스토킹을, 제750. 411s조를 통하여 사이버스토킹을 규제하고 있다.

형법 제750.411h·i조
<p>제750.411h조 스토킹; 정의; 경죄; 형벌;¹⁰¹⁾</p> <p>(1) 정의</p> <p>(a) "일련의 행위"란 목적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2개 이상의 분리된 행위의 연속을 의미한다.</p> <p>(b) "감정적 고통"이란 의도상이 또는 기타 전문적인 치료나 상담을 요할 수 있는 중대한 정신적 괴로움이나 고통을 의미한다.</p> <p>(c) "괴롭힘"이란 피해자를 향한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동의 없는 접촉(unconsented contact)으로서 합리적인 개인으로 하여금 감정적 고통(emotional distress)을 겪게 할 수 있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감정적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의 괴롭힘에는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활동이나 합법적인 목적에 기여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p> <p>(d) "스토킹"이란 합리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감을 갖거나 놀라거나 겁을 먹거나 위협을 받거나 괴롭힘을 받거나 추행을 받는다고 느끼게 할 수 있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느끼게 하는, 다른 개인에 대한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괴롭힘을 포함하는 고의적인 일련의 행위</p>

100) <http://www.victimsofcrime.org/our-programs/stalking-resource-center/stalking-laws/civil-stalking-laws-by-state/california>, 최종검색일: 2014. 11. 26.

를 말한다.

(e) “동의 없는 접촉(unconsented contact)”이란 다른 개인의 동의 없이 또는 접촉을 회피하거나 단절하려는 그의 표현된 희망을 무시한 채 개시되거나 지속된 그 개인에 대한 모든 접촉을 말한다. 동의 없는 접촉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i) 그 개인을 따라다니거나 그의 시야내에 나타나는 것
- (ii) 공공의 장소나 사적인 재산 내에서 그 개인에게 접근하거나 대면하는 것
- (iii) 그 개인의 직장이나 주거에 나타나는 것,
- (iv) 그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하거나 점유 중인 재산 내로 들어가거나 그것에 머무는 것,
- (v) 전화로 그 개인과 접촉하는 것
- (vi) 그 개인에게 우편이나 전자통신을 발송하는 것
- (vii) 그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하거나 점유 중인 재산에 어떠한 물건을 놓아두거나 배달하는 것

(f) “피해자”란 반복적·지속적 괴롭힘을 수반하는 의도적인 일련의 행위의 목표가 된 사람을 의미한다.

(2) 스토킹을 범한 사람은 다음의 죄책을 진다.

(a) (b)목을 제외한 경죄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1천 달러 이하의 벌금, 양자의 병과형에 처할 수 있다.

(b) 일련의 행위 중 어느 때이든 피해자가 18세 미만이고 가해자의 연령이 5세 이상 연상일 경우는 중죄로,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그 병과형에 처한다.

(3) 법원은 본조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

제750.411i조 가중된 스토킹¹⁰²⁾

(1) 정의¹⁰³⁾

...

(b) “믿을만한 위협”이란 다른 사람을 죽이겠다는 위협 또는 다른 개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하겠다는 위협으로서 그것을 듣거나 수신하는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이나 다른 개인의 안전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어떠한 방법 또는 문맥 하에서 행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

(2) 다음 어느 하나의 상황 하에서 스토킹을 행한 자는 가중된 스토킹의 죄책을 진다.

(a) 일시적 접근금지명령을 실제로 통지받고도 그것에 위반하거나, 금지명령, 예비적 금지명령에 위반하여 스토킹을 구성하는 행위 중 하나 이상의 행위를 한 경우

(b) 보호관찰 조건이나 가석방, 재판전 보석, 항소 중 보석 등의 조건에 위반하여 스토킹을 구성하는 행위 중 하나 이상의 행위를 한 경우

(c) 일련의 행위가 피해자나 피해자나 그의 가족, 같은 가구에서 생활하는 다른 개인에 대한 1개 이상의 믿을 만한 위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d) 본조와 411h조의 전과가 있는 경우

(3) 가중된 스토킹은 다음과 같은 형에 처할 수 있는 중죄이다.

(a) (b)목을 제외하고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그 병과형에 처한다.

(b) 일련의 행위 중 어느 때이든 피해자가 18세 미만이고 가해자의 연령이 5세 이상 연상일 경우 10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1만5천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그 병과형에 처한다.

Section 750.411h

(1) As used in this section:

(a) “Course of conduct” means a pattern of conduct composed of a series of 2 or more separate noncontinuous acts evidencing a continuity of purpose.

(b) “Emotional distress” means significant mental suffering or distress that may, but does not necessarily, require medical or other professional treatment or counseling.

(c) "Harassment" means conduct directed toward a victim that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repeated or continuing unconsented contact that would cause a reasonable individual to suffer emotional distress and that actually causes the victim to suffer emotional distress. Harassment does not include constitutionally protected activity or conduct that serves a legitimate purpose.

(d) "Stalking" means a willful course of conduct involving repeated or continuing harassment of another individual that would cause a reasonable person to feel terrorized, frightened, intimidated, threatened, harassed, or molested and that actually causes the victim to feel terrorized, frightened, intimidated, threatened, harassed, or molested.

(e) "Unconsented contact" means any contact with another individual that is initiated or continued without that individual's consent or in disregard of that individual's expressed desire that the contact be avoided or discontinued. Unconsented contact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ny of the following:

- (i) Following or appearing within the sight of that individual.
- (ii) Approaching or confronting that individual in a public place or on private property.
- (iii) Appearing at that individual's workplace or residence.
- (iv) Entering onto or remaining on property owned, leased, or occupied by that individual.
- (v) Contacting that individual by telephone.
- (vi) Sending mail or electronic communications to that individual.
- (vii) Placing an object on, or delivering an object to, property owned, leased, or occupied by that individual.

(f) "Victim" means an individual who is the target of a willful course of conduct involving repeated or continuing harassment.

(2) An individual who engages in stalking is guilty of a crime as follows:

(a) Except as provided in subdivision (b), a misdemeanor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1 year or a fine of not more than \$1,000.00, or both.

(b) If the victim was less than 18 years of age at any time during the individual's course of conduct and the individual is 5 or more years older than the victim, a felony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5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10,000.00, or both.

(3) The court may place an individual convicted of violating this section on probation for a term of not more than 5 years. ...

Section 750.411i

(1) As used in this section:

...

(b) "Credible threat" means a threat to kill another individual or a threat to inflict physical injury upon another individual that is made in any manner or in any context that causes the individual hearing or receiving the threat to reasonably fear for his or her safety or the safety of another individual.

...

(2) An individual who engages in stalking is guilty of aggravated stalking if the violation involves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 At least 1 of the actions constituting the offense is in violation of a restraining order and the individual has received actual notice of that restraining order or at least 1 of the actions is in violation of an injunction or preliminary injunction.

(b) At least 1 of the actions constituting the offense is in violation of a condition of probation, a condition of parole, a condition of pretrial release, or a condition of release on bond pending

appeal.

(c) The course of conduct includes the making of 1 or more credible threats against the victim, a member of the victim's family, or another individual living in the same household as the victim.

(d) The individual has been previously convicted of a violation of this section or section 411h.

(3) Aggravated stalking is a felony punishable as follows:

(a) Except as provided in subdivision (b),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5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10,000.00, or both.

(b) If the victim was less than 18 years of age at any time during the individual's course of conduct and the individual is 5 or more years older than the victim,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10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15,000.00, or both.

형법 제750.411s조

Section 750.411s 전자매체를 통한 메시지 게시 금지; 형벌; 예외; 정의

(1) 이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또는 컴퓨터,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네트워크 그 밖에 전자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게시(post)하여서는 안 된다

(a) 메시지의 게시가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독립적 비연속적인 접촉행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

(b) 피해자를 공포에 떨게 하거나, 놀라게 하거나, 위협하거나, 겁먹게 하거나(threatened), 괴롭히거나(harassed), 치근덕거리는(molested) 행동을 야기할 목적으로 메시지를 게시하는 경우

(c) 메시지의 게시로부터 야기되는 행위가 합리적인 사람에게 감정적 고통을 겪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하거나, 놀라게 하거나, 위협받게 하거나, 겁먹게 하거나, 괴롭히거나, 치근덕거린다고 느끼게 할 것

(d) 메시지의 게시로부터 야기되는 행위가 당해 피해자를 공포에 떨게 하거나, 놀라게 하거나, 위협하거나, 겁먹게 하거나, 괴롭히거나, 치근덕거린다고 느끼게 할 것

(2) (1)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죄책이 있다.

(a) (b)항을 제외하면, 2년 이하의 자유형 혹은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양자의 병과형에 처하는 중죄의 죄책을 진다.

(b) 다음 중 어느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자유형 혹은 10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양자의 병과형에 처하는 중죄의 죄책을 진다.

(i) 일시적 금지명령을 통지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경우

(ii) 메시지의 게시가 보호관찰 조건이나 가석방, 재판전 보석, 항소 중 보석 등의 조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경우

(iii) 메시지의 게시가 피해자나 그의 가족 혹은 피해자와 동일한 가구 내의 다른 사람에 대하여 믿을만한 위협을 초래한 경우

(iv) 본조의 규정이나 145d, 411h, 411i 등을 위반한 하여 유죄를 선고받았거나, 미국내 다른 주의 유사한 법률을 실질적으로 위반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자인 경우

(v) 피해자가 18세 미만이고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5세 연상인 경우

101) The Michigan Penal Code §750.411h (1993. 1. 1. 시행, 1998. 3. 31. 최종개정), [http://www.legislature.mi.gov/\(S\(diwp4e55zydhj45dobmaw45\)\)/mileg.aspx?page=getObject&objectName=mcl-750-411h](http://www.legislature.mi.gov/(S(diwp4e55zydhj45dobmaw45))/mileg.aspx?page=getObject&objectName=mcl-750-411h), 최종검색일: 2014. 11. 26.

102) The Michigan Penal Code §750.411i(1993. 1. 1. 시행, 1998. 3. 31. 최종개정), [http://www.legislature.mi.gov/\(S\(1mezrg55wizekqbojs0c4245\)\)/mileg.aspx?page=GetObject&objectName=mcl-750-411i](http://www.legislature.mi.gov/(S(1mezrg55wizekqbojs0c4245))/mileg.aspx?page=GetObject&objectName=mcl-750-411i), 최종검색일: 2014. 11. 26.

103) (b)목을 제외하고는 750.411h와 동일한 정의규정이다.

Section 750.411s Posting message through electronic medium; prohibitions; penalty; exceptions; definitions.

(1) A person shall not post a message through the use of any medium of communication, including the internet or a computer, computer program, computer system, or computer network, or other electronic medium of communication, without the victim's consent, if all of the following apply:

(a) The person knows or has reason to know that posting the message could cause 2 or more separate noncontinuous acts of unconsented contact with the victim.

(b) Posting the message is intended to cause conduct that would make the victim feel terrorized, frightened, intimidated, threatened, harassed, or molested.

(c) Conduct arising from posting the message would cause a reasonable person to suffer emotional distress and to feel terrorized, frightened, intimidated, threatened, harassed, or molested.

(d) Conduct arising from posting the message causes the victim to suffer emotional distress and to feel terrorized, frightened, intimidated, threatened, harassed, or molested.

(2) A person who violates subsection (1) is guilty of a crime as follows:

(a) Except as provided in subdivision (b), the person is guilty of a felony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2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5,000.00, or both.

(b) If any of the following apply, the person is guilty of a felony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5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10,000.00, or both:

(i) Posting the message is in violation of a restraining order and the person has received actual notice of that restraining order or posting the message is in violation of an injunction or preliminary injunction.

(ii) Posting the message is in violation of a condition of probation, a condition of parole, a condition of pretrial release, or a condition of release on bond pending appeal.

(iii) Posting the message results in a credible threat being communicated to the victim, a member of the victim's family, or another individual living in the same household as the victim.

(iv) The person has been previously convicted of violating this section or section 145d, 411h, or 411i, or section 6 of 1979 PA 53, MCL 752.796, or a substantially similar law of another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of another state, or of the United States.

(v) The victim is less than 18 years of age when the violation is committed and the person committing the violation is 5 or more years older than the victim.

나. 호주

1) 퀸스랜드 주(州)

퀸스랜드 주는 고의적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2회 이상 혹은 1회라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스톡킹으로 보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의식, 두려움 혹은 폭력에 대한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공익을 목적으로 행해진 노사관계, 정치논쟁 혹은 공적인 논쟁이나 합법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합리적인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110 ●●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형법 제33A장 제359조A~359조F ¹⁰⁴⁾
<p>제359A 정의규정 359B 불법적인 스토킹은 (a)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것으로 (b) 지속된 행위로 1회이거나 2회 이상의 행위이며, (c) 다음과 같은 행위로 구성된다. (i) 따라다니거나, 어슬렁거리거나, 바라보거나 접근하는 행위 (ii) 전화, 편지, 팩스, 이메일 그밖에 모든 기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 (iii) 주거, 직장, 방문지 근처를 어슬렁거리거나 바라보거나 접근하거나 들어가는 행위 (iv) 불쾌한 물건을 다른 사람이 발견하거나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두는 행위 (v) 불쾌한 물건을 직·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p>
<p>359A Definitions for ch 33A 359B What is unlawful stalking Unlawful stalking is conduct— (a) intentionally directed at a person (the stalked person); and (b) engaged in on any 1 occasion if the conduct is protracted or on more than 1 occasion; and (c) consisting of 1 or more acts of the following, or a similar, type— (i) following, loitering near, watching or approaching a person; (ii) contacting a person in any way, including, for example, by telephone, mail, fax, email or through the use of any technology; (iii) loitering near, watching, approaching or entering a place where a person lives, works or visits; (iv) leaving offensive material where it will be found by, given to or brought to the attention of, a person; (v) giving offensive material to a person, directly or indirectly; ...</p>

2)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州)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에서 스토킹은 적어도 2회 이상 행해지는,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행위이며, 가해자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형사통합법 제19조AA 불법적 스토킹 ¹⁰⁵⁾
(1) 스토킹은 다음과 같은 행위이다.

104) Criminal Code Act 1899 chapter 33A Unlawful stalking(1993. 11. 23. 시행, 2009. 12. 3. 최종개정), <https://www.legislation.qld.gov.au/LEGISLTN/CURRENT/C/CriminCode.pdf>, 최종검색일: 2014. 11. 26.

<p>(a) 2회 이상 반복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거나 (ii) 다른 사람의 주거 외부를 어슬렁거리거나 (iii)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한 재산에 들어가거나 침입하는 행위 (iv) 다른 사람에게 불쾌한 물건을 주거나/보내는 행위 혹은 (iva) 인터넷 그 밖에 전자통신을 이용하여 불쾌한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p>...</p> <p>(b)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해악이나 심각한 불안이나 공포를 야기할 의도를 가진 행위</p> <p>(2) 다른 사람을 스토킹한 사람은 아래와 같은 죄책을 진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기본구성요건 - 3년 이하의 자유형 (b) 가중구성요건 - 5년 이하의 자유형
<p>(1) A person stalks another if—</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on at least two separate occasions, the pers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follows the other person; or (ii) loiters outside the place of residence of the other person or some other place frequented by the other person; or (iii) enters or interferes with property in the possession of the other person; or (iv) gives or sends offensive material to the other person, or leaves offensive material where it will be found by, given to or brought to the attention of the other person; or (iva) publishes or transmits offensive material by means of the internet or some other form of electronic communication in such a way that the offensive material will be found by, or brought to the attention of, the other person; or (ivb) communicates with the other person, or to others about the other person, by way of mail, telephone (including associated technology), facsimile transmission or the internet or some other form of electronic communication in a manner that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arouse apprehension or fear in the other person; or (v) keeps the other person under surveillance; or (vi) acts in any other way that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arouse the other person's apprehension or fear; and (b) the pers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intends to cause serious physical or mental harm to the other person or a third person; or (ii) intends to cause serious apprehension or fear. <p>(2) A person who stalks another is guilty of an offence.</p> <p>Maximum penal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for a basic offence—imprisonment for 3 years; (b) for an aggravated offence—imprisonment for 5 years.

105)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19AA Unlawful stalking(1994. 6. 1. 시행, 2006. 5. 15. 최중개정), <http://www.legislation.sa.gov.au/LZ/C/A/CRIMINAL%20LAW%20CONSOLIDATION%20ACT%201935/CURRENT/1935.2252.UN.PDF>, 최종검색일: 2014. 11. 26.

3) 빅토리아 주(州)

빅토리아 주는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을 요하지 않고,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을 따라다니는 행위,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의 인터넷이나 이메일, 기타 전자통신을 추적하는 행위,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의 소유 하의 부동산에 침입하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에 해당된다.

형법 제21A조 스토킹 ¹⁰⁶⁾
<p>(1) 사람은 다른 사람을 스토킹해서는 안 된다. 형량: 5단계 자유형 (최고 10년)</p> <p>(2) 일련의 행위가 다음을 포함하는 것은 스토킹이다.</p> <p>(a)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을 따라다니는 행위</p> <p>(b) 우편,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이메일 기타 전자통신 등 방법에 불구하고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에게 연락하는 행위</p> <p>(ba) 인터넷, 이메일, 그 밖에 전자통신으로 (i)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에 관한 혹은 (ii)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에 관한 것이거나 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진술 등을 출판하는 행위</p> <p>(bb)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컴퓨터에 허가받지 않은 컴퓨터 기능을 야기하는 행위</p> <p>(bc)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의 인터넷이나 이메일, 기타 전자통신을 추적하는 행위</p> <p>(c)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의 주거, 직장 기타 자주 다니는 장소 외부나 근처에 들어가거나 어울려거리는 행위</p> <p>(d)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의 소유 하의 부동산에 침입하는 행위</p> <p>(da)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위</p> <p>(db) 피해자에 대하여 혹은 피해자가 있는 곳에서 모욕적·공격적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p> <p>(dc) 피해자가 있는 곳에서 모욕적·공격적 행위를 하는 것</p> <p>(dd) 모욕적·공격적 행위가 피해자를 향하도록 하는 행위</p> <p>(e) 공격적 물건을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에게 주거나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곳에 두는 행위</p> <p>(f) 감시행위</p> <p>(g) 그 밖에 (i)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거나 (ii) 피해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킬 것이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일련의 행위</p>
<p>(1) A person must not stalk another person. Penalty: Level 5 imprisonment (10 years maximum).</p> <p>(2) A person (the offender) stalks another person (the victim) if the offender engages in a course of conduct which includes any of the following—</p> <p>(a) following the victim or any other person;</p> <p>(b) contacting the victim or any other person by post, telephone, fax, text message, e-mail or other electronic communication or by any other means whatsoever;</p> <p>(ba) publishing on the Internet or by an e-mail or other electronic communication to any person a statement or other material—</p> <p>(i) relating to the victim or any other person; or</p> <p>(ii) purporting to relate to, or to originate from, the victim or any other person;</p> <p>(bb) causing an unauthorised computer function (within the meaning of Subdivision</p>

(6) of Division 3) in a computer owned or used by the victim or any other person;
 (bc) tracing the victim's or any other person's use of the Internet or of e-mail or other electronic communications;
 (c) entering or loitering outside or near the victim's or any other person's place of residence or of business or any other place frequented by the victim or the other person;
 (d) interfering with property in the victim's or any other person's possession (whether or not the offender has an interest in the property);
 (da) making threats to the victim;
 (db) using abusive or offensive words to or in the presence of the victim;
 (dc) performing abusive or offensive acts in the presence of the victim;
 (dd) directing abusive or offensive acts towards the victim;
 (e) giving offensive material to the victim or any other person or leaving it where it will be found by, given to or brought to the attention of, the victim or the other person;
 (f) keeping the victim or any other person under surveillance;
 (g) acting in any other way that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i) to cause physical or mental harm to the victim, including self-harm; or
 (ii) to arouse apprehension or fear in the victim for his or her own safety or that of any other person—
 with the intention of causing physical or mental harm to the victim, including self-harm, or of arousing apprehension or fear in the victim for his or her own safety or that of any other person.

다. 영국

영국은 「괴롭힘 방지법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에서 스토킹을 규율하고 있다. 이 법률은 1997년 제정되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에서 적용되고 있다. 동 법률에서는 사람에게 대한 괴롭힘과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여기에서 괴롭힘이란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적어도 두 번 이상 반복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말로 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런 행위는 경죄(misdemeanor)에 해당되어 6월 이하의 자유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으로 하여금 폭력의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위는 중죄(felony)로 처벌된다. 따라서 최소한 2회 이상의 일련의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이 느낄 것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비교적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¹⁰⁷⁾

106) CRIMES ACT 1958 - SECT 21A STALKING, http://www.legislation.vic.gov.au/Domino/Web_Notes/LDMS/PubLawToday.nsf/95c43dd4eac71a68ca256dde00056e7b/ef535bc564cbfcb1ca257d5700218585!OpenDocument, 최종검색일: 2014. 11. 27.

기존의 「괴롭힘 방지법」은 스톡킹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았다. 즉, 스톡킹(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2012년 11월 스톡킹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이는 「자유보호법(the Protection of Freedoms Act 2012)」에 의해 위 법률에 제2A항과 제4A항을 신설함으로써 이루어졌다.¹⁰⁸⁾

괴롭힘방지법 ¹⁰⁹⁾
<p>제1조 괴롭힘의 금지</p> <p>(1) 사람은 (a) 타인에게 괴로움이 되고 (b) 타인에게 괴로움이 되리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일련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p> <p>(2)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정보를 접할 경우 다른 사람에 대한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는 일련의 행위는 일련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 대한 괴로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행위이다.</p> <p>제2조 괴롭힘 범죄</p> <p>(1) 1조를 위반하여 일련의 행위를 한 사람은 범죄의 죄책을 진다.</p> <p>(2) 본조를 위반하여 범죄의 죄책을 지는 자는 즉결심판에서 6월 이하의 자유형이나 5단계 이하의 벌금, 양자의 병과형을 부과받는다.</p> <p>제2A조 (3) 다음은 스톡킹과 관련된 행위 예시이다.</p> <p>(a) 특정 개인을 따라가는 것</p> <p>(b) 특정 개인에게 연락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연락을 시도하는 것</p> <p>(c) 특정 개인과 관련된 또는 관련이 있다고 위장하여 글이나 자료를 게시하는 것. 또는 특정 개인으로 위장하여 글이나 자료를 게시하는 것</p> <p>(d) 특정 개인의 인터넷, e-메일 또는 전자 매체 수단 사용을 감시하는 것</p> <p>(e) (공공 또는 사적 장소든 간에) 어떤 장소에서 배회하는 것</p> <p>(f) 특정 개인의 소유물에 개입하는 것</p> <p>(g) 특정 개인을 바라보거나 몰래 감시하는 것</p> <p>제4조 그의 일련의 행위가 최소한 2회 이상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한 경우에 (Putting people in fear of violence) 그가 각각의 경우 그 행위가 다른 사람이 공포를 느끼게 할 것이라는 점을 알거나 또는 그러한 사실을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위반사실은 그의 범죄가 유죄라는 점에 대해서 불리한 증거로 이용될 수 있다</p>
<p>1 Prohibition of harassment.</p> <p>(1) A person must not pursue a course of conduct—</p> <p>(a) which amounts to harassment of another, and</p> <p>(b) which he knows or ought to know amounts to harassment of the other.</p> <p>2 Offence of harassment.</p> <p>(1) A person who pursues a course of conduct in breach of section 1 is guilty of an offence.</p> <p>(2) A person guilty of an offence under this section is liable on summary conviction to</p>

107) 이원상, “스톡킹 처벌규정 도입에 대한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2013, 160쪽.

108) 박선영 외,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Ⅰ) - 낙태 규제와 여성의 대표성 관련 심층 분석 및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319~320쪽 참조.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six months, or a fine not exceeding level 5 on the standard scale, or both.

2A (3)The following are examples of acts or omissions which, in particular circumstances, are ones associated with stalking—

- (a)following a person,
- (b)contacting, or attempting to contact, a person by any means,
- (c)publishing any statement or other material—
 - (i)relating or purporting to relate to a person, or
 - (ii)purporting to originate from a person,
- (d)monitoring the use by a person of the internet, email or any other form of electronic communication,
- (e)loitering in any place (whether public or private),
- (f)interfering with any property in the possession of a person,
- (g)watching or spying on a person.

4 Putting people in fear of violence.

(1) A person whose course of conduct causes another to fear, on at least two occasions, that violence will be used against him is guilty of an offence if he knows or ought to know that his course of conduct will cause the other so to fear on each of those occasions.

라. 일본

일본에서는 2000년 5월 24일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이 제정되어 같은 해 11월 24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스토킹 행위의 처벌요건과 피해자의 원조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법률은 스토킹 행위를 “따라다니기 등 행위”와 “스토커 행위”로 구분하고 이에 대해서 각각 다른 대응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다니기 등 행위”는 보다 피해자에 대한 침해유형이 가벼운 형태로서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진로 막아서기, 전화를 반복하여 하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같은 법 제2조 1항).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 경찰본부 등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때에는 경찰본부장이 행위자에 대해서 “따라다니기 등 행위”를 다시 하지 말 것을 경고할 수 있다. 위 경고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여 행했을 때에는 그 행위자에 대해서 국가공안위원회가 동법 제5조에 규정한바 재차의 위반행위를 하지 말라는 금지명령을 발할 수 있다.

109)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97/40>, 최종검색일: 2014. 11. 26.

이보다 침해유형이 중한 스톡킹 행위는 동법 제2조 제1항 1호에서 제4호까지의 행위를 반복하여 행함으로써 상대방 신체의 안전, 주거 등의 평온 혹은 명예가 침해되거나 또는 행동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당해 불안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스톡킹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3조). 위 금지명령 등에 위반하여 스톡킹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14조 제1항). 또한 금지명령 등에 위반하여 따라다니기 등을 한 자도 동일한 형으로 벌한다(동조 제2항).

그러나 스톡킹 규제법이 시행되고 10여 년이 경과하여도 스톡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급기야 2012년에 가나가와현 즈시시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사건에서 여성이 전 교제 상대방으로부터 1,000통 이상의 메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톡킹 규제법에 메일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었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3년 스톡킹 규제법 금지 행위를 확대하는 등의 개정을 하여 7월 3일 공포,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원하지 않는 전자메일을 계속해서 보내는 행위가 법에 의한 규제대상이 되었다(제2조 제1항 제5호). 또한 경시총감 또는 도도부현 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은 경고를 할 때는 신속하게 그 내용 및 일시를 피해자에게 당해 경고를 원하는 취지의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경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제4조).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는 경고를 원하는 취지의 신청을 한 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었다(제5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에게 스톡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부인상담소 그 밖에 적절한 시설에 의한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제8조).¹¹⁰⁾

110) 박선영 외, 2013, 321쪽 참조.

마. 독일

독일에서는 제40차 형법 개정을 통하여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독일형법 제238조에 스토킹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것과 이와 관련된 소송법적 규정들(사인소추, 부대소송 등)에 관한 것이었다. 개정된 독일형법 제238조에 따르면 1)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근처로 접근하는 행위, 2) 전기통신수단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거나 제삼자를 통하여 그 사람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개인관련 정보를 남용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물건을 주문, 서비스 신청, 제삼자에게 이러한 접촉을 하도록 하는 행위, 4) 다른 사람 또는 그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건강 또는 자유의 침해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 5) 이에 비교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행위 등을 집요하게 하여 다른 사람의 생활형성을 중대하게 침해함으로써,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접촉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스토킹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피해자의 친족, 또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건강침해의 위험이 야기된 경우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해진다.

이처럼 독일 형법은 제1항에서 스토킹에 대한 기본구성요건을 규정해 놓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생명, 신체의 안전, 건강, 자유 등의 법익이 침해될 위험범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놓았고, 제3항에서는 사망에 이른 경우를 상정하여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놓았다. 다만, 스토킹의 경우 형사소추기관이 특별한 공익에 의해서 직권에 의한 형사소추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한, 일반적인 스토킹은 친고죄로 규정하여 피해자의 고소에 의해서만 소추가 가능하도록 구성해 놓고 있다. 본 규정 가운데 특히 제1항 제2호(전기통신수단 등을 통한 접촉)는 사이버스토킹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제2호에서 상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수단이나 통신수단에는 편지, 전화, 팩스와 같은 기존의 통신수단들 뿐 아니라 이메일, 휴대폰의 SMS나 MMS,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과 같은 최신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접근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친구나 동료, 가족, 친

118 ●●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죽 등 피해자와 연락이 가능한 사람들을 통해서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된다.

형법 제238조 ¹¹¹⁾
<p>제238조(따라다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끊임없이 하는 등 권한 없이 사람을 쫓아다니고 그로 인해 그의 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소적으로 가깝게 찾아가는 행위 2. 대화의 수단으로 통신수단을 사용해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접촉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3. 개인에 속하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그를 위하여 물건이나 급부를 주문하거나 또는 접촉을 계속하도록 제3자를 부추기는 행위 4. 피해자에게 그 자신 또는 그와 가까운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또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협하는 행위 5. 기타 위와 비교될 수 있는 행동을 시도하는 행위 <p>② 행위자가 피해자, 피해자의 친족 또는 피해자와 가까이 있는 타인을 (당해) 행위를 통해 사망의 위험 또는 중한 상해의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해야 한다.</p> <p>③ 행위자가 (당해) 행위를 통해 피해자, 피해자의 친족 또는 피해자와 가까이 있는 타인의 사망을 야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p> <p>④ 제1항의 경우에 형사소추기관이 형사소추에 대한 특별한 공익을 이유로 직무상 개입이 허용된다고 확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된다.</p>
<p>§ 238 StGB Nachstellung</p> <p>(1) Wer einem Menschen unbefugt nachstellt, indem er beharrlich</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seine räumliche Nähe aufsucht, 2. unter Verwendung von Telekommunikationsmitteln oder sonstigen Mitteln der Kommunikation oder über Dritte Kontakt zu ihm herzustellen versucht, 3. unter missbräuchlicher Verwendung von dessen personenbezogenen Daten Bestellungen von Waren oder Dienstleistungen für ihn aufgibt oder Dritte veranlasst, mit diesem Kontakt aufzunehmen, 4. ihn mit der Verletzung von Leben, körperlicher Unversehrtheit, Gesundheit oder Freiheit seiner selbst oder einer ihm nahe stehenden Person bedroht oder 5. eine andere vergleichbare Handlung vornimmt und dadurch seine Lebensgestaltung schwerwiegend beeinträchtig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p>(2) Auf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ist zu erkennen, wenn der Täter das Opfer, einen Angehörigen des Opfers oder eine andere dem Opfer nahe stehende Person durch die Tat in die Gefahr des Todes oder einer schweren Gesundheitsschädigung bringt.</p> <p>(3) Verursacht der Täter durch die Tat den Tod des Opfers, eines Angehörigen des Opfers oder einer anderen dem Opfer nahe stehenden Person, so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p> <p>(4)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wird die Tat nur auf Antrag verfolgt, es sei denn, dass die Strafverfolgungsbehörde wegen des besonderen öffentlichen Interesses an der Strafverfolgung ein Einschreiten von Amts wegen für geboten hält.</p>

111) <http://www.jusline.de/index.php?cpid=f92f99b766343e040d46fcd6b03d3ee8&lawid=3&paid=238>,

바. 기타 국가

1) 캐나다

형법 제264조 ¹¹²⁾
타인을 반복적으로 쫓아다니거나 타인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교신하는 행위, 타인이 방문, 생활 또는 일하고 있는 장소를 둘러싸거나 관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할 수 있다.
Criminal harassment 264. (1) No person shall, without lawful authority and knowing that another person is harassed or recklessly as to whether the other person is harassed, engage in conduct referred to in subsection (2) that causes that other person reasonably, in all the circumstances, to fear for their safety or the safety of anyone known to them.

2) 벨기에

형법 제442의2조 ¹¹³⁾
이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음에도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자는 누구든지 15일에서 2년까지의 자유형 및 50유로 이상 300유로 이하의 벌금형 또는 이중 한 가지 형에 처한다. 본 조항에 규정된 경범죄는 집요하게 고통을 당한다고 주장하는 자가 고소를 한 경우에만 기소할 수 있다.
Art. 442bis. (inséré par <L 1998-10-30/34, art. 2, En vigueur : 27-12-1998>) Quiconque aura harcelé une personne alors qu'il savait ou aurait dû savoir qu'il affecterait gravement par ce comportement la tranquillité de la personne visée, sera puni d'une peine d'emprisonnement de quinze jours à deux ans et d'une amende de cinquante [euros] à trois cents [euros], ou de l'une de ces peines seulement. Le délit prévu par le présent article ne pourra être poursuivi que sur la plainte de la personne qui se prétend harcelée.

최종검색일: 2014. 11. 27.

112) <http://laws-lois.justice.gc.ca/eng/acts/C-46/section-264.html>, 최종검색일: 2014. 11. 27.

113) http://www.ejustice.just.fgov.be/cgi_loi/change_lg.pl?language=fr&la=F&table_name=loi&cn=1867060801, 최종검색일: 2014. 11. 27.

3) 네덜란드

<p>형법 제285b조¹¹⁴⁾</p> <p>타인에게 특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강요하거나 수인하게 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법하게 체계적, 고의적으로 타인의 생활영역을 침해하는 자는 유죄선고를 받는 경우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제4범주의 벌금형에 처한다.</p> <p>범죄의 피해자가 고소한 경우에 한하여 기소할 수 있다.</p>
<p>Artikel 285b</p> <p>1. Hij, die wederrechtelijk stelselmatig opzettelijk inbreuk maakt op eens anders persoonlijke levenssfeer met het oogmerk die ander te dwingen iets te doen, niet te doen of te dulden dan wel vrees aan te jagen wordt, als schuldig aan belaging, gestraft met een gevangenisstraf van ten hoogste drie jaren of een geldboete van de vierde categorie.</p> <p>2. Vervolging vindt niet plaats dan op klacht van hem tegen wie het misdrijf is begaan.</p>

4) 오스트리아

<p>형법 제107a조(지속적인 추적)¹¹⁵⁾</p> <p>①타인에 대하여 위법하게 지속적으로 추적(제2항)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p> <p>②지속적인 추적이란 타인의 생활영역을 기대할 수 없게 침해할 만한 방식으로 장기간 다음의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말한다.</p> <p>1. 피해자의 근처에 접근하거나</p> <p>2. 통신 또는 다른 의사소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제3자를 통해 피해자와 접촉하거나</p> <p>3.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물건 또는 급부를 주문하거나</p> <p>4.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제3자가 피해자와 접촉하도록 하는 것.</p>
<p>Beharrliche Verfolgung</p> <p>§ 107a. (1) Wer eine Person widerrechtlich beharrlich verfolgt (Abs. 2), ist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zu bestrafen.</p> <p>(2) Beharrlich verfolgt eine Person, wer in einer Weise, die geeignet ist, sie in ihrer Lebensführung unzumutbar zu beeinträchtigen, eine längere Zeit hindurch fortgesetzt</p> <p>1. ihre räumliche Nähe aufsucht,</p> <p>2. im Wege einer Telekommunikation oder unter Verwendung eines sonstigen Kommunikationsmittels oder über Dritte Kontakt zu ihr herstellt,</p> <p>3. unter Verwendung ihrer personenbezogenen Daten Waren oder Dienstleistungen für sie bestellt oder</p> <p>4. unter Verwendung ihrer personenbezogenen Daten Dritte veranlasst, mit ihr Kontakt aufzunehmen.</p>

114) <http://www.wetboek-online.nl/wet/Sr/285b.html>, 최종검색일: 2014. 11. 27.

115) <https://www.ris.bka.gv.at/GeltendeFassung.wxe?Abfrage=Bundesnormen&Gesetzesnummer=10002296>, 최종검색일: 2014. 11. 27.

5) 헝가리

형법 제222조 ¹¹⁶⁾
<p>(1) 타인의 사생활 및 일상생활에 대한 위협 또는 임의적 간섭을 목적으로, 특히 타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연락을 위한 통신수단에 의하여 조직적 또는 상시적으로 괴롭히는 모든 행위는 보다 중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괴롭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괴롭히는 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p> <p>(2) 위협의 목적</p> <p>a) 폭력 또는 공공위험행위에 의한 위협을 통한 타인 또는 타인의 친인척에 대한 위협</p> <p>b) 신체의 완전성이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친인척의 건강상태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행위의 인상을 심어 줌으로써, 해당 행위는 범죄성을 띠는 것으로 보아 2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p> <p>(3)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한 괴롭힘은 2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다만, (2)에 규정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p> <p>a) 배우자, 전 배우자, 전 동거인 또는 전 동거인의 배우자,</p> <p>b) (1)에 규정하는 교육, 감독, 간호 또는 치료를 받고 있는 자.</p>
<p>Zaklatás</p> <p>222. § (1) Aki abból a célból, hogy mást megfélemlítsen, vagy más magánéletébe, illetve mindennapi életvitelébe önkényesen beavatkozzon, őt rendszeresen vagy tartósan háborgatja, ha súlyosabb bűncselekmény nem valósul meg, vétség miatt egy évig terjedő szabadságvesztéssel büntetendő.</p> <p>(2) Aki félelemkeltés céljából</p> <p>a) mást vagy rá tekintettel hozzátartozóját személy elleni erőszakos vagy közveszélyt okozó büntetendő cselekmény elkövetésével megfenyeget, vagy</p> <p>b) azt a látszatot kelti, hogy más életét, testi épségét vagy egészségét sértő vagy közvetlenül veszélyeztető esemény következik be,</p> <p>vétség miatt két évig terjedő szabadságvesztéssel büntetendő.</p> <p>(3) Aki a zaklatást</p> <p>a) házastársa, volt házastársa, élettársa vagy volt élettársa sérelmére,</p> <p>b) nevelése, felügyelete, gondozása vagy gyógykezelése alatt álló személy sérelmére, illetve</p> <p>c) hatalmi vagy befolyási helyzetével visszaélve</p> <p>követi el, az (1) bekezdésben meghatározott esetben két évig, a (2) bekezdésben meghatározott esetben büntett miatt három évig terjedő szabadságvesztéssel büntetendő.</p>

116) http://net.jogtar.hu/jr/gen/hjegy_doc.cgi?docid=A1200100.TV, 최종검색일: 2014. 11. 27.

6) 이탈리아

<p>형법 제612-1조¹¹⁷⁾</p>
<p>타인에게 반복적인 협박 혹은 추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한 자는, 다시 말하자면 피해자 자신이나 관계자 또는 피해자와 애정관계에 있는 사람의 안전에 대해 심각한 두려움을 초래하여 일상적인 습관을 바꿀 수밖에 없게 했을 경우, 그 죄질이 더욱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월 이상 4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별거 중이거나 이혼했거나 또는 피해자와 애정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행하여졌을 경우, 그 형량을 가중한다. 미성년자, 임신부, 또는 법률 제104호 제3조(1992.2.5)에 해당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기를 사용했을 경우 또는 가해자가 성도착자일 경우에는 형량을 최대 1/2배 가중한다. 본건 범죄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고소 시효는 6개월이다. 그러나 범죄의 대상이 미성년자이거나 법률 제104호 제3조(1992.2.5)에 해당되는 장애인일 경우, 또는 해당 행위가 고소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또 다른 범행과 연관이 있을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p>
<p>Atti persecutori.</p> <p>Salvo che il fatto costituisca più grave reato, è punito con la reclusione da sei mesi a cinque anni chiunque, con condotte reiterate, minaccia o molesta taluno in modo da cagionare un perdurante e grave stato di ansia o di paura ovvero da ingenerare un fondato timore per l'incolumità propria o di un prossimo congiunto o di persona al medesimo legata da relazione affettiva ovvero da costringere lo stesso ad alterare le proprie abitudini di vita.</p> <p>La pena è aumentata se il fatto è commesso dal coniuge, anche separato o divorziato, o da persona che è o è stata legata da relazione affettiva alla persona offesa ovvero se il fatto è commesso attraverso strumenti informatici o telematici.</p> <p>La pena è aumentata fino alla metà se il fatto è commesso a danno di un minore, di una donna in stato di gravidanza o di una persona con disabilità di cui all'articolo 3 della legge 5 febbraio 1992, n. 104, ovvero con armi o da persona travisata.</p> <p>Il delitto è punito a querela della persona offesa. Il termine per la proposizione della querela è di sei mesi. La remissione della querela può essere soltanto processuale. La querela è comunque irrevocabile se il fatto è stato commesso mediante minacce reiterate nei modi di cui all'articolo 612, secondo comma. Si procede tuttavia d'ufficio se il fatto è commesso nei confronti di un minore o di una persona con disabilità di cui all'articolo 3 della legge 5 febbraio 1992, n. 104, nonché quando il fatto è connesso con altro delitto per il quale si deve procedere d'ufficio.</p>

117) <http://www.altalex.com/index.php?idnot=36774>, 최종검색일: 2014. 11. 27.

7) 룩셈부르크

형법 제442-2조(강박적 괴롭힘) ¹¹⁸⁾
<p>스토킹 행위로 대상자의 안녕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거나, 이 대상자를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고통을 주는 자는 누구든지 15일에서 2년까지의 자유형 및 251유로 이상 3,000유로 이하의 벌금형 또는 이중 한 가지 형에 처한다.</p> <p>본조에 정한 경죄는 피해자, 법적 대리인 혹은 그 권한을 가진 자가 고소한 경우에만 기소할 수 있다.</p>
<p>Chapitre IV-2. Du harcèlement obsessionnel Art. 442.2</p> <p>Quiconque aura harcelé de façon répétée une personne alors qu'il savait ou aurait dû savoir qu'il affecterait gravement par ce comportement la tranquillité de la personne visée, sera puni d'une peine d'emprisonnement de quinze jours à deux ans et d'une amende de 251 à 3.000 euros, ou de l'une de ces peines seulement.</p> <p>Le délit prévu par le présent article ne pourra être poursuivi que sur plainte de la victime, de son représentant légal ou de ses ayants droit.»</p>

8) 체코공화국

형법 제354조 ¹¹⁹⁾
<p>(1) 누구든지 타인의 생명이나 건강, 또는 타인과 친밀한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대한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와 함께 다음에 정하는 행위에 의하여 장기적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거나 그 전문적 활동의 수행을 금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타인 또는 타인의 친인척에 대하여 신체적 위해 또는 기타 위해를 가할 것으로 위협하는 행위 b) 타인의 개인적 위치를 찾거나 타인의 뒤를 쫓는 행위 c) 전자 통신, 서면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타인에게 연락하는 행위 d) 타인의 일상생활을 제한하는 행위 e) 사적 연락처 또는 기타 연락처를 취득할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오용하는 행위. <p>(2) 다음 중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조의 죄를 범하는 경우, 해당 범죄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아동 또는 가임 여성을 상대로 행위하는 경우 b) 총기를 가지고 행위하는 경우 c)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위하는 경우

118) <http://www.legilux.public.lu/rgl/2009/A/1889/A.html>, 최종검색일: 2014. 11. 27.

119) <http://eagri.cz/public/web/mze/legislativa/ostatni/100304362.html>, 최종검색일: 2014. 11. 27.

124 ●●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p>§ 354 Nebezpečné pronásledování</p> <p>(1) Kdo jiného dlouhodobě pronásleduje tím, ž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vyhrožuje ublížením na zdraví nebo jinou újmou jemu nebo jeho osobám blízkým, b) vyhledává jeho osobní blízkost nebo jej sleduje, c) vytrvale jej prostřednictvím prostředků elektronických komunikací, písemně nebo jinak kontaktuje, d) omezuje jej v jeho obvyklém způsobu života, nebo e) zneužije jeho osobních údajů za účelem získání osobního nebo jiného kontaktu, a toto jednání je způsobilé vzbudit v něm důvodnou obavu o jeho život nebo zdraví nebo o život a zdraví osob jemu blízkých, bude potrestán odnětím svobody až na jeden rok nebo zákazem činnosti. <p>(2) Odnětím svobody na šest měsíců až tři roky bude pachatel potrestán, spáchá-li čin uvedený v odstavci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vůči dítěti nebo těhotné ženě, b) se zbraní, nebo c) nejméně se dvěma osobami.

9) 폴란드

<p>형법 제 190a조(지속적 괴롭힘)¹²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타인 또는 타인과 친밀한 사람을 스토킹함으로써 타인이 공포심을 느끼게 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2. 타인의 재산 또는 신상에 대한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진 또는 기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패러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정하는 행위의 결과로서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정하는 범칙은 피해자가 고소한 경우에만 기소할 수 있다.
<p>Art. 190a</p> <p>§ 1. Kto przez uporczywe nękanie innej osoby lub osoby jej najbliższej wzbudza u niej uzasadnione okolicznościami poczucie zagrożenia lub istotnie narusza jej prywatność, podlega karze pozbawienia wolności do lat 3.</p> <p>§ 2. Tej samej karze podlega, kto, podszywając się pod inną osobę, wykorzystuje jej wizerunek lub inne jej dane osobowe w celu wyrządzenia jej szkody majątkowej lub osobistej.</p> <p>§ 3. Jeżeli następstwem czynu określonego w § 1 lub 2 jest targnięcie się pokrzywdzonego na własne życie, sprawca podlega karze pozbawienia wolności od roku do lat 10.</p> <p>§ 4. Ściganie przestępstwa określonego w § 1 lub 2 następuje na wniosek pokrzywdzonego.</p>

120) <http://statystyka.policja.pl/st/kodeks-karny/przestepstwa-przeciwko-4/63485,Grozba-karalna-art-190.html>, 최종검색일: 2014. 11. 27.

3. 시사점 및 입법과제

가. 시사점

이상으로 스토킹과 관련한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입법례의 경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대부분의 입법례는 스토킹의 법적 개념요소로 ‘일련의 행위’나 ‘반복적 행동’을 요구한다. 따라서 1회의 행위 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스토킹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괴롭힘(harassment)이나 쫓아다님(pursuit)과 같은 비교적 개방적 개념을 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안에의 포섭적용에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요한다. 이렇게 열린 개념 정의는 스토킹의 다양한 양상을 포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광범위한 일련의 스토킹 행위를 충분히 포착하기 위해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입법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며, 사건의 초동 단계에서 경찰의 작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이로 인해 스토킹의 행위유형을 열거·예시하여 불명확한 스토킹 개념을 보완하는 입법례가 주목받고 있다.

둘째, 스토킹의 범죄화는 대부분 형법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특별법을 통해 규정한 예도 적지 않다(영국, 일본 등). 유의할 점은 스토킹 범죄화 역시 각국이 기존에 지녀 온 법체계의 경향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영미법 국가들의 경우 특징적인 법체계를 가진 탓에 비교적 국가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반면 상대적으로 입법화에 뒤진 유럽의 대륙법 체계 국가들은 상호 영향으로 일반 형법에 유사한 법조문을 도입하는 방식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각 입법례는 스토킹 처벌에 공포나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등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에서 상이하다. 피해자에 대하여 해악을 끼치는 행위만을 스토킹 행위로서 금지하는 경우, 실제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한 중대한 시점에서 경찰이나 기타의 사법기관이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각 입법례는 기소를 위해 피해자의 고소를 요하는지 여부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본래 친고죄 개념이 미약한 영미법계 국가들과 달리, 근래 스토킹

을 범죄화한 국가들이 이를 친고죄로 규정하는 경우도 많은 등 친고죄를 폐지하는 경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몇몇 국가에서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거나, 적어도 행위 유형을 이분하여 비친고죄 부분을 규정하는 양상이 보인다. 이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섯째, 각 입법례의 상이함과 별개로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여러 입법례에서 형사사법 판단 이전에 행정작용으로 임시조치나 긴급보호명령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조치의 활용과 피해 예방 정도를 고려하여 스토킹 법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의 분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19대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¹²¹⁾을 분석하고 입법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토킹 행위는 비교적 늦게 ‘발견’되었지만, 근래 국가를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당벌성과 형벌필요성을 갖춘 범죄행위로 인정되어 오고 있다는 점이다.

스토킹과 관련된 몇몇 위법한 행위들은 기존 형법체계 하에서도 다루어져 왔다. 즉, 스토킹 행위의 다양성으로 인해 이것이 충족할 수 있는 형벌구성요건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규정들은 행위자의 중대한 개별적 행위에만 적용된다는 데에 공통점이 있다. 스토킹 행위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일련의 행위가 치명적인 결과로 발전하였다는 점이었다. 즉 이들 개별 행위들은 최초 혹은 각각의 접촉을 넘어 중국에는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 폭행, 상해, 살인 등으로 나아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결과적으로 살인이나 상해와 같은 스토킹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다는 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른 범죄행위와 달리 그런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중대한 결과가 기인해 왔다는 것이다.¹²²⁾

기존 형법체계 하에서 다루이지 않는 스토킹 행위들은 제3자가 보기에는 사

121)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190121, 제안일자: 2012. 8. 27, 대표발의: 이낙연; 스토킹 방지법안, 의안번호: 195532, 제안일자: 2013. 6. 19, 대표발의: 김제남.

122) 이진호, “스토킹 행위의 형사법적 규제와 스토킹 행위의 유형화에 대한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 연구』 제15권 제1호, 2004, 194-195쪽 참조.

소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연속적 행동으로 인해 위협적인 특성을 띤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심리적인 평온을 해하며, 사회생활상의 자유를 제약한다. 기존의 형법은 이러한 형태의 법익 침해행위를 그 자체로 범죄로 보지 않았다. 스토킹에서 특징적인 스토킹 행위의 빈도와 계속성은 그 자체로 사회상당성의 영역을 넘어서는데, 이들은 행위자의 가벌성 근거의 독자적인 준거점이 되지 못한다.¹²³⁾

스토킹을 범죄화한 국가들은 기존의 형법 체계가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처리하는 데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러한 ‘연속적 행위들’을 범죄로 취급하고 처리할 새로운 법적 틀이 요구된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있다. 스토킹 형벌 규정에 기술된 행위는 피해자의 보호가치 있는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가벌적인 행위로 평가된다는 점이다. 또한 그 형량의 범위도 3월 이하에서 10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다양하나, 대부분 1년 이상의 최대형량을 정하고 있어 그 위법성의 정도 역시 중하게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스토킹 개념이 새로운 구성요건으로 편입됨에 따라 일반 예방적 효과 역시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스토킹은 반드시 범죄화의 영역에 포섭되어야 할 행위라는 점이다. 스토킹을 범죄화한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존 형법 체계뿐만 아니라 새로 도입된 경범죄처벌법상의 조문으로도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처리하는 데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러한 ‘연속적 행위들’을 범죄로 취급하고 처리할 새로운 법적 틀이 요구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의 규율 방식을 피해의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구제수단과의 균형 속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발의된 스토킹 규제 법안은 모두 특별법의 형식을 띠고 있었다. 그런데 그간 우리 형사법 체계에 특징적인 형사특별법의 난립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왔다. 구체적으로 형법전의 규범력 약화 및 형법전의 형해화, 집행기관 및 사법부에서 보이는 법적용의 혼란과 같은 형법체계의 혼란 등이 그것이다. 이 때문에 형사특별법의 형법에의 흡수·편입문제와 편입 후의 정비문제 등이 논의되어 왔다. 그러므로 한편으로 범죄는 형법전에 통일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123) 박희영, “독일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법제』, 2007, 97-98쪽.

그러나 특정한 행위태양을 형사적으로 규율할 뿐만 아니라, 스토킹 피해에 대한 응급조치, 신변안전조치, 임시조치 등의 근거를 규정하여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는 등의 실효적 수단을 확보하는 데는 특별법이 그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미 경찰작용법에서 개괄적 수권조항을 비롯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다양한 표준적 수권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는 기존의 경찰작용법제를 통해서도 스토킹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 대응이 가능하지만,¹²⁴⁾ 우리의 경우 이러한 대응은 특별한 규정을 요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스토킹 대응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법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와 유사한 법제를 가진 일본이 특별법을 통해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처벌 규정을 일반형법의 한 규정으로 도입할 것인지, 특별법에 마련할 것인지 여부와 별도로,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규정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은 실체규정도 갖고 있지만 주로 조사와 심리의 특례, 보호조치, 신고자보호 등의 절차규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범죄의 정의와 형량은 형법전으로 도입하되 절차적인 부분을 특별법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스토킹을 범죄화하는 경우, 이 범죄의 보호법익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특히 특별법으로 정할 경우 이 특별법의 목적조항을 어떻게 규정할지 문제된다. 19대 국회의 두 발의안은 목적규정에서 모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만을 보호법익으로 한정할 경우, 스토킹에 의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의 기본권을 행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대두된다.¹²⁵⁾ 때문에 보호법익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법적 평은 혹은 자유 일반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124) 이성용, 2012, 116~117쪽.

125) 원민경,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방향", 한국여성연대, 「스토킹범죄처벌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토론회 자료집, 2013, 27쪽.

또한 스토킹규제법을 입법화했다더라도 스토킹의 구성요건의 개방성으로 인해 행위유형을 열거하지 않은 경우 행정상의 지침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양 법안은 모두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담고 있다. 이는 과거 행위태양의 구체적 적시가 없었던 법안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단순 스토킹과 가중 스토킹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입법례 역시 우리 법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발의되었던 법안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없었으나, 현재 계류된 법안은 보호처분 위반의 경우(공통) 청소년 대상 스토킹, 흉기휴대 스토킹(이낙연 의원안)을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진일보한 형태로 평가할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의 입법례에서 행위의 객체를 피해자와 그 법률상의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 행위자는 자신이 목표로 정한 상대방에 대해서만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 스토킹 행위 상대방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나 직장동료 등도 스토킹 행위자에 의해서 괴롭힘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친구와 함께 사는 동거인을 주변인에 포함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 형법의 경우에는 '가까운 가족'이라고 하여 배우자, 부모, 자녀, 그리고 2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정기적으로 한집에 같이 사는 사람, 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정기적으로 함께 살았던 사람을 포함한다. 일본 역시 당해 특정인 또는 그 배우자, 직계 혹은 동거친족 기타 당해 특정인과 사회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19대 국회에 발의된 두 법안은 모두 행위의 객체를 피해자와 그 (법률상의)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2005년 염동연 의원 발의안¹²⁶⁾에 비해서도 후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상 가족의 범위가 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입법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개입방안을 강구하되, 이를 이유로 보호사건으로의 처리 방식을 만연히 채택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계류중인 양 법률안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마찬가지로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의 이원적 구조를 채택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126) 지속적 괴롭힘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173427, 대표발의: 염동연, 제안일자: 2005. 11. 28, 2008. 5. 29. 임기만료 폐기.

스토킹행위를 형사사건으로 공소하지 않고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인데, 검사가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거나 법원이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스토킹행위를 보호사건으로 처리해야 하는 의의와 기준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원적 구조는 가정폭력특례법 제정논의 당시 가정폭력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범죄와 동일한 처벌방식을 취하는 경우 법이 오히려 가정폭력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 마련된 것이다. 스토킹이 소년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에서와 같이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이 우선되어야 하는 사안인지는 의문이다. 이원적 구조를 채택하는 것은 오히려 스토킹행위의 범죄성 자체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나. 「스토킹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1) 제정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그간 스토킹과 관련한 입법적인 시도는 1999. 5. 24. 발의된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2003. 10. 13. 발의된 「스토킹방지법안」, 2005. 9. 27. 발의된 스토킹 등 「대인공포유발행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2005. 11. 28. 발의된 「지속적 괴롭힘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2009. 1. 9. 발의된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있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그러나 스토킹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2012년 3월 21일 경범죄 처벌법이 전면 개정되어 제3조 제1항 제41호에서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표제 하에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스토킹이 법률의 규율 내용에 포함되어, 비록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스토킹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현재의 경범죄 처벌법 규정은 단지 사후적 대처의 일환으로 형사처벌만을 상

정하고 있어 피해예방,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과되는 형량도 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스토킹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가 가능하고 스토킹 행위자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같은 중요한 측면이 함께 규정되어 있는 법률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서 시사점에서 살펴봤듯이, 다른 형사특별법 범죄들과 마찬가지로 스토킹 역시 형법전에 통일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형법 개정이 용이하지 않고 스토킹 범죄 피해에 대한 대책은 시급하다는 현실적 이유 외에도,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고 우리 법제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스토킹 규제에 대한 총체적인 상을 제안한다는 취지에서 단일한 특별법 시안을 마련하였다. 보호사건으로의 처리를 배제하고 형사처벌의 일원적 구조를 채택하였다.

2) 법안의 개요

가) 법안의 구성체계

「스토킹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법의 목적과 ‘스토킹’의 정의 및 행위태양을 정하는 ‘제1장 총칙’과 형사처벌의 일원적 구조를 채택한 ‘제2장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제3장 스토킹범죄의 절차에 관한 특례’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조치 및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제4장 피해자보호명령’과 ‘제5장 벌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은 총칙사항으로 입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것이다. 제2장은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으로 스토킹의 금지, 스토킹살해에 관한 것이다. 제3장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등에 관한 사항이다. 제4장은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임시보호

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 조사 등에 관한 것이다. 제5장은 이 법 위반의 벌칙에 관한 것이다.

나) 법안의 주요내용

(1) 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제1장 목적조항은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절차,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의 목적을 명시하고, 스토킹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의하였다.

기존 발의안들은 법의 목적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으로 한정해 왔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의사와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고 공·사 영역을 불분한 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스토킹의 양상을 설명하기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법안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평온한 생활의 보호’를 목적으로 삼았다.

또한 법안은 ‘스토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행하여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조항이나 그간의 여러 스토킹 관련 법안은 스토킹을 ‘지속적 괴롭힘’으로 명명하거나, 지속성·반복성을 필수적 요건으로 규정하였다. 우리의 현행 법률이나 판례상 지속성과 반복성은 반드시 구별되는 개념은 아니며,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면 지속성·반복성을 인정해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반복적인 행동이라도 지속성은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존재한다.¹²⁷⁾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여, ‘지속성’이나 ‘반복성’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라는 문언을 사용하였다.¹²⁸⁾

각 목에서는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제시하였다. 입법례와 법률안 등을 참조

127) 원민경, 2013, 31쪽.

128) 이러한 입법의 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2조(정의)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하여 행위태양을 적시하되,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특정 행위가 규율 대상에서 배제되어 유연한 대응이 어려워질 위험에도 불구하고 열거 규정 방식을 채택하였다.

(2) 스톡킹 행위에 대한 처벌 (안 제3조 및 4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스톡킹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 또한 스톡킹범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 혹은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를 살해한 경우의 결합범 규정을 두었다.

비교법적으로 스톡킹 기본범의 형량 범위는 3월 이하에서 10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다양하나, 기본범의 최대형량은 대부분 1년~3년으로 정하고 있다. 19대 국회의 김제남 의원안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낙연의 원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본 시안에서는 사람에 대해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는 형법상 폭행죄(2년 이하),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2년 이하), 채권추심법 제15조 등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기본범의 형량을 1년 이하로 정하였다.

(3) 스톡킹 행위에 대한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안 제5조 및 6조)

안 제5조는 진행 중인 스톡킹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 의무를 규정하였다. 사법경찰관리는 스톡킹 행위를 제지, 스톡킹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스톡킹 피해지원 상담소에 연계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며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134 ●●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4)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피해자, 신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보호, 변호사 선임 특례,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등을 규정하였다.

(5) 상담시설 지정 (안 제13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는 스토킹 행위로 인한 범죄 신고 접수 및 상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여기에는 피해자를 병원이나 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업무, 피해자의 사회복지를 돕는 업무 등이 포함된다.

(6)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2011. 7. 2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 피해자가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이를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관할법원은 가정폭력특례법에서 가정법원으로 하는 것과 달리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의 관할 법원으로 하였다.

3) 「스토킹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시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행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가. 면회 또는 교제 그 밖에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하는 행위

나. 진로 가로막기 등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다. 따라다니거나 미행하는 행위, 또는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상대방이 활동하는 장소¹²⁹⁾ 및 그 주변에서 잠복하여 기다리기, 지켜보거나 통행로에 서 있는 행위

라.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 말, 글, 부호,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¹³⁰⁾

마.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말, 글, 부호, 음성,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¹³¹⁾

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2. “행위자”란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5.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제14조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제2장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제3조(스토킹의 금지) ① 제2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스토킹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전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스토킹살인) 제3조의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장 스토킹범죄의 절차에 관한 특례

제5조(스토킹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 행위의 제지
2. 스토킹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피해자를 스토킹피해를 지원하는 상담소에 연계
5. 제15조에 따라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을 통보

제6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긴급입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피해자가 제15조의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스토킹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제8조에 다른 변호사를 말한다)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자를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긴급입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응급조치의 시간은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입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입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입시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그 긴급입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제8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및 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를 준용한다.

제9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¹³²⁾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 스토킹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0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¹³³⁾ ①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스토킹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심리의 비공개) 스톡킹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상담시설) 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3조 및 제4조의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스톡킹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병원이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3.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지를 돕는 업무
4.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소송과 피해배상청구 등의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5. 스톡킹범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6. 스톡킹범죄 및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는 전항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증인으로 소환받은 스톡킹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및 공개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제2항·제3항 및 「군사법원법」 제67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제4장 피해자보호명령

제14조(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스톡킹 범죄를 관할하는 형사법원으로 한다.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제15조(피해자보호명령)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톡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15조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제18조(이행실태의 조사) ① 법원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스토킹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으로, “가정폭력행위자”는 “스토킹행위자”로, “가정폭력범죄”는 “스토킹범죄”로, “보호처분”은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본다.

제20조(항고와 재항고) ① 제15조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제16조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17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법정대리인, 변호사는 항고할 수 있다.

②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는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으로, “가정폭력행위자”는 “스토킹행위자”로, “가정폭력범죄”는 “스토킹범죄”로, “보호처분”은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21조(보호명령불이행죄) 제15조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17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에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9) 2005년 법률안의 “통상 소재하는 장소”, 2009년 김재균 의원안, 2012년 이낙연 의원안, 2013년 김제남 의원안의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에 비해, 피해자의 소재를 중심으로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130) 이는 마목과 같이 “통신매체를 통하여” 도달하게 하는 행위만 규정하는 경우의 처벌의 공백을 피하기 위한 규정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마목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한 자만을 처벌한다. 대법원은 전화를 걸고 말없이 끊는 행위를 반복한 사안에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제3호 위반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131) (舊)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처벌 규정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또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다가 이후 법률개정으로 말, 글이라는 표현이 삭제되고, 문언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되었으나 양자는 동일한 것으로 해석된다.

13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참조.

13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참조.

참고문헌

- 권재문, “입양특례법 재개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베이비박스 및 익명출산”,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22권 제1호, 2014.
- 김상용, “베이비박스 및 익명의 출산: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法學研究』 제54권 제4호, 2013.
- 김성룡, “독일의 ‘스토킹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4호, 2007.
- 박선영 외,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I) - 낙태 규제와 여성의 대표성 관련 심층 분석 및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 박찬걸, “간통죄 폐지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45권 제2호, 2010.
- 박철현 외,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00.
- 박희영, “독일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법제』, 2007.
- 송효진·박복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5년: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 신상희, “처벌되지 않는 범죄 스토킹”, 한국여성의전화, 「스토킹범죄처벌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토론회 자료집, 2013.
- 안문희, “프랑스법의 익명출산제도: 2003년 2월 13일 유럽인권법원판결(ODIEVRE c. FRANCE)과 관련하여”, 중앙법학회, 『中央法學』 제15권 제4호, 2013.
- 원민경,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방향”, 한국여성의전화, 「스토킹범죄처벌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토론회 자료집, 2013.
- 이건호, “스토킹 행위의 형사법적 규제와 스토킹 행위의 유형화에 대한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5권 제1호, 2004.
- 이건호 외, 「스토킹 피해실태와 입법쟁점에 관한 연구」, 여성부, 2002.
- 이기현, “스토킹의 형법적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제4권 제2호, 2002.
- 이성용, 「스토킹 방지를 위한 선제적 행정경찰 작용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12.
- 이승우,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안”,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

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제2권 제1호, 2011.

이원상, “스토킹 처벌규정 도입에 대한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 연구』 제24권 제2호, 2013.

조훈, “위법성 인식으로서의 Mens Rea”,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2호, 2003.

Lamplugh, D. and Infield, P., “Harmonising Anti-stalking laws”, 『George Washington International Law Review』, 2003.

Michele Black et al., 「The National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Survey: 2010 Summary Report」, Atlanta, GA: National Center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1.

Nirupa Dattani and Preeti Datta-Nemdharry and Alison Mcfarlane, 「Linking maternity data for England 2007: methods and data quality, Health Statistics Quarterly 53 Spring 2012」, 2012.

Paul E. Mullen et al., 「Stalkers and their victi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atricia Tjaden and Nancy Thoennes, Stalking in America: Findings from the 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1998.

Robert C. Davis et al. (eds.), 『Victims of Crime』, SAGE Publications, 2012.

Susan van der Aa and Renée Römkens, “The state of the art in stalking legislation - reflections on European developments”, 『European Criminal Law Review』, 2013.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아주경제, <http://www.ajunews.com/view/20130531000332>

충북일보,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359838>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3eb2d083f6de488d8fa10aadd2c5fb2b>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1420.html

Australia, ACT Government, <http://www.ors.act.gov.au>

Australia, ACT legislation register, <http://www.legislation.act.gov.au>

Australia, Australas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 <http://www.austlii.edu.au>

Australia, NSW Government Justice, <http://www.bdm.nsw.gov.au>

Australia, NSW legislation, <http://www.legislation.nsw.gov.au>

Australia, NT Government Department of the Attorney-General and Justice,
<http://www.nt.gov.au/justice/bdm/>

Australia, Queensland Legislation, <https://www.legislation.qld.gov.au>

Australia, South Australian Legislation, <http://www.legislation.sa.gov.au>

Australia, Victorian Legislation and Parliamentary Documents,
<http://www.legislation.vic.gov.au>

Austria, Bundeskanzleramt Rechtsinformationssystem, <https://www.ris.bka.gv.at>

Belgium, Federal Overheidsdienst Justitie, <http://www.ejustice.just.fgov.be>

Canada, BC Laws, <http://www.bclaws.ca>

Canada, Justice Laws, <http://laws-lois.justice.gc.ca>

Canada, Service Alberta, <http://www.servicealberta.gov.ab.ca>

China, 法律圖書館, <http://www.law-lib.com>

Czech, eAGRI, <http://eagri.cz>

France, Legifrance.gouv.fr, <http://www.legifrance.gouv.fr>

France, Service-Public.fr, <http://www.service-public.fr>

Germany,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http://www.bmjv.de>

Germany, jusline, <http://www.jusline.de>

Hungary, jogtar, <http://net.jogtar.hu>

Ireland, Irish Statute Book, <http://www.irishstatutebook.ie>

Italy, ALTALEX, <http://www.altalex.com>

146 ●●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Japan, 電子政府の総合窓口, <http://law.e-gov.go.jp>

Luxembourg, Service Central De Legislation, <http://www.legilux.public.lu>

Malta, Ministry for Justice, Culture and Local Government,
<http://www.justiceservices.gov.mt>

Netherlands, Wetboek Online, <http://www.wetboek-online.nl>

New Zealand, The 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 <http://www.dia.govt.nz>

New Zealand, Legislation, <http://www.legislation.govt.nz>

Poland, STATYSTYKA, <http://statystyka.policja.pl>

Singapore, ATTORNEY-GENERAL'S CHAMBER, <http://statutes.agc.gov.sg>

Singapore, Immigration & Checkpoints Authority, <http://www.ica.gov.sg>

UK, General Register Office for SCOTLAND, <http://www.gro-scotland.gov.uk>

UK, Hamish Brown MBE, <http://www.hamishbrownmbe.com>

UK, NHS choices, <http://www.nhs.uk>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http://www.ons.gov.uk>

UK, The National Archives, <http://www.legislation.gov.uk>

USA, CONNECTICUT GENERAL ASSEMBLY, <http://www.cga.ct.gov>

USA, FindLaw, <http://lp.findlaw.com>

USA, LexisNexis, <http://www.lexisnexis.com>

USA, Michigan Legislative Council, <http://www.legislature.mi.gov>

USA, OFFICIAL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http://www.leginfo.ca.gov>

USA, Stalking resource center, <http://www.victimsofcrime.org>

Abstract

Study on How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Women and Family-related Legislations (II)

- Legislative examples of other countries regarding who
is responsible for registering a childbirth and regulations on
stalking and their implications

Seon-young Park

Hyo-jin Song

Mi-young Gu

Jeong-hye Kim

Hye-kyung Yoo

Compared to other sectors, legislations on women and family-related issues have shown a quite faster development with various legislative measures achieved to enhance gender equality policies in Korea. Nevertheless, 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reality that women face every day. Moreover, the job insecurity and economic disparity of women are worsening and women live in a society where sexual violence and harassment are prevailing. Such disparity between the law and the reality, inversely, demonstrates why legislations and institutions are critical in improving the reality. Here comes the imperative to create appropriate structures enabling constant and systemic efforts to close the gap between the law and the reality. To this end,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has promoted researches with the aim of strengthening the effectiveness of women and family-related legislations by providing gender-sensitive support to the legislative activities in the National Assembly including developing relevant new

bills and amendments for the ten years since 2013.

With the aim of identifying legislative tasks in Korea by comparing and analyzing legislative examples of other countries, the study collected and examined diverse legislations and regulations on birth registration in other countrie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in Korea. Also acknowledging that the punishment level on stalking perpetrators and the protection for stalking victims are too weak in Korea, other countries' legislative examples and relevant issues and discussions were reviewed to improve Korea's responses and legal measures to stalking.

Every country has a system of registering birth which is a basic document to figure out the population movements and establish and implement relevant medical polices. In principle, a baby's father or mother undertakes the obligation to register the birth in Korea. As a result, various child rights violations including the omission of registration, false registration, illegal or unlawful adoption, baby abandonment and trafficking become serious social problems, requiring the immediate improvement in birth registration system. The study categorized other countries' legislative examples on who is responsible for birth registration into four types: first, a birth is notified to relevant authorities by medical institutions; second, both parents and medical institutions have the obligation to report a birth; third, a birth can be registered at medical institutions; and fourth, parents have a primary obligation to register birth. After comparing and analyzing each type's legal texts and characteristics, the study developed improvement plans of Korean system.

Most countries reviewed, except China and Japan which have a similar system with Korea, have medical institutions primarily register birth. In other words, by imposing the first notification obligation to a medical institution where a baby is

born, a birth is informed to relevant state authorities by medical institutions prior to the baby's parents' registration. Many countries including Australia, New Zealand, England, America and Canada adopted the system. These countries make hospitals or medical professions engaged in childbirth first inform the fact of birth to the government even when the ultimate responsibility to register birth lies upon the baby's parents. Such legislative examples are meaningful to Korea in guaranteeing the prompt registration of birth, relieving parents' burdens of visiting public office to register right after childbirth, providing parents with relatively plenty of time to register after first report by medical institutions, and reducing the possibility of non-registration, omission or false report. Another type is that the law on birth registration prescribes parents are responsible for registering birth in principle, but in practice, birth can be immediately registered at the hospital where a baby is born. France has public servants permanently residing in public hospitals for birth registration while Singapore has a birth registration center in every hospital so that birth registration can be completed by computer network system immediately after childbirth. While the legal system regarding birth registration in these countries seem very similar with that of Korea, it should be noted that in practice, the quick and accurate registration along with easier registration procedure is promoted by allowing birth registration at the hospital where a baby is born through administrative services. It has great implications that among many countries reviewed, only China and Japan place responsibility of registering birth merely on the baby's parents not medical institutions like Korea. China and Japan maintain the legal system based on 'patriarchal family registration' system. Unlike the two countries, Korea overcame pre-modern relics in identity registry and introduced a new system under the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 However, unfortunately, it seems that a birth registration system fails to break from the outdated registration frame of the former patriarchal family registration system. In this regard, a new system that medical institutions that engaged in childbirth promptly report the birth to relevant

governmental agencies prior to final registration by parents should be introduced to improve remaining problems in birth registration system under the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

Meanwhile, stalking, a crime committed under the name of love becomes a serious social problem. It is a serious criminal act threatening even the life of victims. Legislations responding stalking crime are one of the fastest developing legal sectors in the world. Korea laid the ground for prosecuting stalking by completely revising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se Act to include related provisions in Article 3 (1) 41 of the Act under the title of “consistent harassment.” It established a legal basis upon which to punish stalking, even if it is a minimum level. However, the provisions have limitations of extremely weak punishment and lack of response measures except punishment for offenders. Therefore, by reviewing each country’s stalking prevention legislations, we could develop some ideas on which directions the relevant institutions should aim in light of international standards beyond whether penalties on stalking need to be introduced or not.

A few common points were found in legal definitions on stalking in reviewed countries. First, in most countries, except Belgium, laws and regulations require ‘a series of acts’ or ‘repetitive acts’ to establish the legal definition of stalking. Second, all of the legal definitions adopt open concepts such as harassment or pursuit. In addition, legislations of each country are varied by the status of the provision. Most of countries criminalized stalking by newly introducing the provision on stalking in the existing criminal codes. On the other hand, England, Ireland, and Japan enacted a separate law to regulate stalking instead of integrating relevant provisions in the criminal codes. Moreover, each country’s legislations are different in the degree of intention of offender for establishment of the crime, that is whether it requires the specific intent or the mere acknowledgement of the act willful negligence is enough and whether negligence

criminal should be punished or not. Whether the victim's complaint is required to prosecute the offender is also different in countries. Belgium, Luxembourg, Hungary, Poland, and Netherlands prescribe the crime as an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In Germany where stalking is in principle subject to complaint, it has the nature of relatives Antragsdelikt that a prosecutor can indict the offender of the crime, regardless of the victim's complaint when there is believed a special public interest. On the other hand, in Austria and England, all stalking crimes are offense indictable without complaint and even despite the victim's intention for non-punishment. Maximum penalties range from three months to more than ten years. In large, it can be divided into applying the same penalty to every kind of stalking offenses and applying different standards by basic requirements and aggravating circumstances.

In conclusion, legislative examples in other countries reviewed show the following observations: First, regarding the definition of stalking act, most of legislations require 'a series of act' or 'repetitive acts' as a legal concept determinant.; Second, while criminalization of stalking was implemented in general by integrating relevant provisions in the criminal codes, a few examples of enacting a separate law can be found.; Third, whether certain injuries suffered by victims such as a fear or emotional pain are required to punish stalking is varied by country.; Fourth, countries take different approaches in requesting the victim's complaint or not.; and Fifth, irrespective of differences in legislations, preventive measures and safeguards for victims become the most important task.

Based on these trends in each country's legislation, the study suggests a bill on the special act on stalking with the aim of presenting a comprehensive regulatory frame, taking account of its compatibility with the existing legal system of Korea. The bill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etc. of Stalking Crimes"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structures: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on the purpose of the

Act, definitions and types of ‘stalking’ Special Cases; ‘Chapter 2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adopting the integrated structure of criminal sanction; ‘Chapter 3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cedures Therefor’ prescribing measures taken against stalking offenses by judicial police officer and protective measures for victims; and ‘Chapter 4 Protective Order for Victims’ specially designed to enhance the protection of victims and ‘Chapter 5 Penal Provisions’.

2014 연구보고서-16-2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Ⅱ)**
: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톡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4년 12월 30일 인쇄

2014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이 명 선**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25(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 (대)

인쇄처 : (주) **서보미디어**

전화 / 02-2253-7800 (대)

ISBN 978-89-8491-645-6 94330

978-89-8491-642-5 94330 (세트)

<정가 13,000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122-70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25(불광동 1-363)

TEL 02. 3156. 7000 FAX 02. 3156. 7007 <http://www.kwdi.re.kr>

KWDI



9 788984 916456 94330
ISBN 978-89-8491-645-6